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아이리스 영(I. M. Young)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과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김은원

아이리스 영(I. M. Young)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과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지도교수 정창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김은원

김은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원장 _____ 업성우 (인)

부위원장 _____ 정창우 (인)

위원 _____ 박성춘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이리스 매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과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의 규범을 구성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종래의 의사소통 과정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부정의한 실태는 이러한 포용의 규범을 특히 시급히 요청한다. 한편, 공적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한 종래 도덕과 교육의 연구 및 실천에서 배제와 포용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는 포용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의 논의를 모아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후, 해당 이론이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 대해 갖는 함의를 탐구한다.

가장 먼저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론의 토대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에 대한 옹호와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영은 그녀의 비판적 정의관 아래 포용적 심의가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측면임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 정의란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 조건과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기본적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건 마련이다. 이러한 정의관 아래 포용적인 심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임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중요한 요소이자 구현 수단이다. 한편, 영은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배제적 측면을 비판한다. 영은 기존의 접근이 공동 이익에 근거한 보편적 합의를 공론의 목표 삼고, 그에 다다르기 위한 논의의 방법으로 합리적 논증 교환만을 우대함에 주목한다. 영에 따르면,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접근은 현실의 이질적 공론장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를 바탕으로 한 공론의 실천에 있어 소수 개인 또는 집단의 목소리가 공론의 과정에서 부당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어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내용을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징은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공론의 모습, 이론이 의사소통의 목표 삼고 있는 것, 이론이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론에서

의사소통 참여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첫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에서 공론의 모습은 이질적 공중이 합당한 의사소통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둘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에서 공론의 목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책에의 잠정 합의로 설정된다. 셋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에서 의사표명의 방식은 합리적 논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영이 주목을 요청하는 소통의 측면은 논의 참여자들을 동등한 공중으로 인정하는 호감 인사(greeting),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합당한 설득에 적절히 기능하는 수사(rhetoric), 입장의 서로 다른 전제를 이해하기 위한 내러티브(narrative)가 있다. 넷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은 공론의 참여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합당한 의사소통에 임하려는 태도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탐구한다. 먼저,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주된 하위요소는 기본적으로 이질적 공중의 구체적 해결책 모색이라는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적절한 지식,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미 표현과 내적 배제에 귀 기울이는 섬세한 의미 수용의 기능, 정치적 책임 지향을 바탕으로 한 합당성의 태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질성 인식, 의사소통의 규범 수용, 다양한 표현의 허용과 책임 있는 경청, 잠정적 합의와 지속적 성찰 지향을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의 규칙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쟁 수업 모형 활용 시, 논쟁의 주제 사안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및 그를 둘러싼 당사자별 입장 검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한 입장 교환, 상대 입장 경청을 위한 별도 절차의 마련, 이질적 입장의 잠정적 종합으로서의 합의, 의사소통 절차 자체 대한 지속적인 성찰 등을 통해 그것의 포용적인 실행을 도모할 수 있음을 논한다. 이와 함께,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 전반에 있어 교사의 책임 있는 듣기와 합당성으로의 적절한 안내가 중요함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포용적 의사소통 구현에 대한 도덕과 교육의 관심을 촉구하고, 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가지 교육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아이리스 영, 포용적 의사소통,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 도덕
과 시민교육, 윤리적 시민교육, 도덕과 의사소통 교육
학 번 : 2019-2421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1
제 2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	14
제 1 절 영의 비판적 정의관	14
1. 분배 패러다임 비판	15
2. 정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18
제 2 절 영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 비판	27
1.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특징	28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심의 모델	33
3. 기존 심의 모델 비판	47
제 3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	54
제 1 절 공론의 상과 의사소통의 목표	55
1. 공론의 상	55
2. 의사소통의 목표	59
제 2 절 의사소통의 방법과 태도	62
1.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	62
2. 참여자의 태도	71
제 4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81	
제 1 절 교육 목표에의 함의	82
1.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	82

2.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	88
제 2 절 교육 방법에서의 함의	107
1.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 규칙	107
2. 수업 모형 적용과 교사의 역할	111
제 5 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
Abstract	128

영의 주요 저서 약어 목록

인용 시 내주로 괄호 안에 페이지 수와 함께 표기함

JPD

: Young, I. M.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역). 서울: 모티브북. (원서출판 1990).

RJ

: Young, I. M. (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원서출판 2011).

ID

: Young, I. M. (2020). 포용과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원서출판 2000).

표 목차

[표 4-1]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	90
[표 4-2]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영역	92
[표 4-3] 기존 심의 모델과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	96
[표 4-4]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의 내용에 따른 적용지점	97
[표 4-5]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지식 영역	97
[표 4-6]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기능 영역	102

[표 4-7]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태도 영역 106
[표 4-8] 기존 발화 적극성 차이에 근거한 교육적 개입 116

그림 목차

[그림 4-1] Listening Quality Index (LQI) 10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도덕과 교육의 오랜 관심이다. 2015 교육과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교육부, 2015a, p. 39)” 의사소통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도덕적 요구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교육부, 2015b, p. 3)” 도덕적 대인 관계 역량을 주요 교과 역량으로 설정했다. 해당 부분에서는 대인 관계 유지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가치 관계 영역 전반에서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이자 발달 수단이다.

본 연구는 특히 공적 맥락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적 의사소통이란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된 관심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행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며, 참여자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상호 이해 및 납득되길 지향하며 소통에 임하고, 결국 광범위한 동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공론은 가장 대표적인 공적 의사소통의 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가운데에서는 강의, 토론 등의 수업이나 학급 및 학교 자치 회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포용(inclusion)¹⁾은 공적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가치

1) ‘포용’이라는 번역어의 사용이 논쟁적일 수 있다. 『포용과 민주주의』의 역자 김희강과 나상원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의 뜻을 가진 ‘포용’이라는 번역어가 엄밀히는 영이 강조하는 inclusion의 의미가 아님을 밝힌다. 한국어의 ‘포용’이 모종의 위계성과 시혜성을 전제하는 반면, inclusion은 정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necessarily involved)의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는

로 논의되어왔다. 이때 포용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받게 되는 사람들을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평등하게 포함한다(ID, 17)는 의미다. 본 연구는 특히 실질적 의미에서의 내적 포용으로 이를 이해한다. 즉, 포용은 사람들이 결정의 장에 단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의 포용은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유의사를 도덕적으로 존중²⁾하며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기본 원리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은 포용에의 주목을 시급히 요구한다. 꾸준히 집단 간 이질성이 증대³⁾하며 집단 간 갈등 역시 심화⁴⁾하고 있다(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p. 8). 다

역자들이 함께 번역어로 택해 혼용한 ‘포함’, ‘포섭’, ‘포괄’ 등의 번역어가 inclusion의 본의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철학, 교육학 맥락의 inclusion에 대한 대다수의 학술 논의가 해당 개념에 대해 ‘포용’이라는 번역어를 주로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포용’의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더해, 연구자는 영의 inclusion 논의가, 종래의 공론 참여에 부당한 위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에게 inclusion에 대한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이라는 번역어가 내포하고 있는 위계성 및 시혜성에도 -다른 번역어들과 비교해-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본다.

- 2) “만약 자신의 목소리와 이익이 배제된 의결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자신의 행위를 적응시키리라 기대된다면, 이들은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ID, 36)”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실현되기 위해 그들이 구속받는 규범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게 요구된다.
- 3)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이념, 연령, 장애 여부 등 사회 집단 구분의 기준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인종, 민족, 종교적 다양성과 관련해 이주 배경 구성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271,372명으로 전체 인구의 5,162만 명 중 약 4%다. 지속적인 팬데믹 상황에 2019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2019년까지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p. 40). 학습자들 역시 꾸준히 다양화한다. 국제 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2년 0.7%에서 2021년 3%로 점증하고 있다(김나영, 2021, p. 1).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의 비율 역시 점차 증가했다(김태준 외, 2020, p. 103).
- 4)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018)는 OECD 34개국 중 한국은 3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은-사회 갈등이 심한- 국가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2016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p. 8)”이라고 진단한다. 더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양한 연구들⁵⁾이 포착한바, 이와 같은 갈등 관리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억압 집단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경우는 무척 빈번하다.

따라서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포용적인 의사소통을 구성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공론장으로서의 교실 역시 유사한 의사소통 상의 배제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교실은 또한 사회 전반에서의 정치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연습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먼저, 교내 공론은 그 자체 시민들의 유의미한 공론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교실과 학교는 공론을 통해 구성원 학생들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는 공론장이다. 사회경제적 배제와 정치적 배제는 교내의 공론장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⁶⁾는 점에서, 교육은 이러한 배제 문제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사회 통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 갈등의 심각성은 보통 이상으로 높다. 여러 사회 갈등의 유형 중 이념 갈등 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빈부, 노사, 환경, 세대, 종교와 남녀 갈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뒤를 따랐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함으로써 이질적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 상호 문화적 갈등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최윤정·추병완, 2020, p. 130; 현남숙, 2020, p. 124). 비쿠 파레크(Bhikhu Parekh)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공적 관심 아래 제기되는 문화 갈등의 사례로 복혼제 또는 사촌 간 결혼 등 결혼 문화, 성년식(문신) 및 장례식(화장) 문화, 무슬림 히잡(수영 수업 불참) 또는 시크 교 터번(헬멧 대신) 등의 복식 문화, 공교육 거부 등 교육 관행, 여성의 종속적 지위 등을 제시했다(파레크, 2000, pp. 264-5, 현남숙, 2020, p. 124에서 재인용).

- 5)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의사소통 과정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외적 배제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박찬욱(2005)는 “시민 개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블루칼라보다는 전문관리직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곧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 참여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명제는 다양한 국가의 맥락에서 타당한 것으로 수차례 검증(Verba and Nie, 1972, pp. 125-137; Milbrath and Goel, 1977, p. 92, 박찬욱, 2005, p. 154에서 재인용)되었다고 정리한다. 민영(2019)은 젠더 차이 역시 정치 참여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정치 관심, 지식, 효능감에서 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Fraile, 2014, 민영, 2019, p. 4에서 재인용)고 말한다.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의사소통 과정에 접근 가능하지만 결정에 실효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적 배제 현상 역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아이리스 영(2000/2020), 낸시 프레이저(1990), 제인 맨스브릿지(1993)는 공통적으로 공적 토론이 백인 중산층 남성의 문화유형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방식을 다른 문화유형을 바탕으로 한 소통 방식보다 우대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말하기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
- 6) Cooper와 Simonds(2007/2010)은 다양한 경험 연구 자료를 근거로 교실 의사소통

더해, 교실 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경험은 학생들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시민적 활동에 임하기 위한 중요한 연습 기회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018)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 집단 간 갈등 및 협오가 증가하며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밝힌다. 특히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태도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은 성숙한 민주 시민의 주요 역량(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p. 8)”이다.

시민적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도덕과는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료 시민들과 포용적 의사소통에 참여해 타당한 집단 의사결정에 이르는 모습은 윤리적 시민의 상에서 빠질 수 없다.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공적 의사소통에 바람직하기 임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은 도덕과의 중요 교육 목표인 시민적 인성의 핵심 요소(이혜진, 2019; 정창우, 2019)로 제시된다.⁷⁾ 의사소통 내적 포용에 대한 관심은 도덕과 교육의 협조를 특히 분명히 요구한다. 의사소통 내적 포용에의 요구는 도덕과 시민 교육의 주된 내용 요소인 의사소통의 절차 및 규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해 도덕과의 교육 목표와 방법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아이리스 매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포용적 의사소통

을 둘러싸고도 성차별주의, 민족차별주의, 장애차별주의 등이 작동함(같은 책, 10장 참고)을 밝힌다. 성별, 민족성, 장애에 근거한 편견이 교실 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낮은 기대감, 역할 고정관념,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같은 책, p. 460).

- 7) 정창우(2019)는 인성 교육 영역에서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해 강조할 수 있는 시민적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과 핵심 인성 역량을 제시한다(정창우, 2019, p. 94). 그는 관용, 협력 등 시민적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들이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인성 역량의 대표적인 예시로 의사소통 역량을 제시한다. 이혜진(2019)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시민적 인성으로서 중요한 갈등 해결과 공동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혜진, 2019, p. 123)이자, 공론장에서 시민적 인성이 잘 발휘되도록 돕는 방아쇠의 역할(같은 논문, p. 129)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론을 탐색하고, 그를 자원 삼아 위 물음에 응답하려는 시도다. 구조적 불평등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포용적인 민주적 의사소통의 규범과 조건은 무엇인가?’ 는 영의 저서 『포용과 민주주의』의 중심 연구 물음이다(ID, 9). 책에서 영은 심의의 과정이 집단적 결정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는 구조적 부정의가 존재하는 맥락에서, 이성 중심의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은 설명력이 부족하고 나아가 실천적 측면에서 배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은 보다 포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의 규범과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영의 다른 저서들은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를 보충한다.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는 이론의 바탕이 되는 영의 비판적 정의관과 그녀가 그리는 공적 의사소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에서는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논의가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의 논의를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공론의 개념과 의사소통의 목표, 의사소통의 방법과 참여자 태도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포용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의 논의를 탐구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의 이론은 실제 공론의 주제이자 맥락으로서 ‘구조적 부정의’를 적절히 설명한다. 현실 속에서 몇몇 집단은 일상적 제도와 규범 속에서 지배 및 억압받는다. 먼저, 영의 이론은 다수의 공론이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구체적 사례를 주제삼으며, 공론 참여자들은 주제 사안과 관련해 그들이 속한 또는 관계 맺는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갖는다는 현실을 충실히 포착한다. 또한, 이론은 공론의 상황 역시 구조적 부정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며 몇몇 집단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영의 이론은 우리가 공론으로부터의 배제를 적절히 문제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공론의 이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영의 이론은 우리가 포용적인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유효하다. 구조적 부정의의 맥락에서 공론, 공동선, 합의와 같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여자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의 말

하기·듣기 방법을 택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의 비판적 탐구는 포용적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함의를 제공한다. 교육적 맥락에서 영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 의사소통 상황을 보다 지지적으로 조성해 모든 학생의 자유로운 말하기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공적 의사소통의 모습을 안내하기 위해 유용하다.

바람직한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도덕과 교육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연구 관심에 따라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와 중요성, 공론장 또는 예비 공론장으로서 교실에서의 보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도덕교육적 적용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포용의 측면에서 차례로 살핀다.

도덕교육 연구자들은 시민적 인성으로서의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도덕과의 중요 교육 목표로 강조해왔다(이혜진, 2019, 2020; 정창우, 2019; 최윤정·추병완, 2020). 의사소통 역량은 시민적 인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다양한 구성원들 간 갈등이 증가하는 다문화 민주 사회에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도덕교육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역량 개념을 명료화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배제와 포용의 측면에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도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의사소통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⁸⁾ 특히, 최근 구성원 모두에게 포용적인 교실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학습의 중요 원칙으로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정창우(2020)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의사소통 환경의 구축이 시민적 인성 교육의 중요 원칙임을 밝혔다(정창우, 2020, pp. 123-6). 도덕교육 연구는 사회의 다원화 맥락에서 보다 원활한 공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KMDD(Lind, 2017), 건설적 논쟁(김하연, 2019; 최윤정, 2019; 최윤정·추

8) 협동적 의사소통은 자기 정체성 확립, 타인과의 관계 유지, 시민적 참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인지 편향의 방지, 강한 서사적 자아 구축, 협력 역량의 개발이 요구되는 최신의 맥락에서 의사소통 활용 수업의 필요성은 특히 강조된다(정창우, 2019, 8장).

병완, 2020), 프로젝트 수업과 월드 카페(이혜진, 2019, 2020) 모형의 활용 등을 구안했다. 이상의 논의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에 합리적·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는 절차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논의 역시 학생들이 이미 의사소통 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단지 가정하는 등 포용과 배제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⁹⁾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도덕교육적 적용 연구들을 살핀다. 먼저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조주현(2007), 최윤정·추병완(2020) 등이 이성적 토론을 중심으로 정당한 규범을 도출하는 심의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도덕교육의 목표나 방법에 적용하고자 했다.¹⁰⁾ 2015 도덕과 교육과정 심의 민주주의 관련 내용 역시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교육적 시도는 이성적 토론 중심의 기존 심의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배제적 함의를 그대로 담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¹¹⁾ 다문화 사회에서 기존 심의 민

9)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이 합리적 논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의사소통의 중립적 절차에 주목할 뿐 배제적인 의사소통의 맥락이나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적절한 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부각된다.

10) 조기제(2002)는 다문화 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문화 배경이 다양해지는 시점에서는 이성적 대화를 통한 합의에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는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에서 토론 자체, 토론의 적절한 조건과 자세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주현(2018) 또한 정책적 합의는 물론 심의 과정을 통한 시민적 역량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심의 민주주의의 아이디어가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에 적절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윤정과 추병완(2020) 역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밝힌다. 민주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많은 경우 정치 담론을 수반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은 효과적 심의에 필요한 역량을 배울 필요가 있다(최윤정·추병완, 2020, p. 146)는 것이다. 서요련(2021)은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중요 기반인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정리하며 해당 이론의 도덕과 시민교육적 함의를 밝힌다. 연구에 따르면, 도덕과는 규범적 논증 역량을 중심으로 법의 자율적 저자로서의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11)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허윤희, 2017; 이은주, 2009), 의사소통이론(유병열, 1991; 한기철, 2014; 최용성, 2013) 심의 정치 이론(서요련, 2021)을 도덕교육 목표 및 방법 논의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도덕 교육이 참여자들이 더 나은 논증 원리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 도덕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담론 속 논증과 탐구의 기준-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이나, 담론의 규칙- 참여의 허용, 의문,

주주의 모델이 갖는 배제적 함의를 인식, 심의 민주주의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도덕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먼저, 강수정(2016)은 논의 참여자들의 시점 간 차이를 강조하며 다시점 내러티브 소통 구조를 이론화한다. 심승환(2020)은 이성적 논증 위주의 심의 방식이 배제적일 수 있음과 함의를 목표하는 심의가 상호성과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해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해,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의사소통 기술과 함께 상호 존중의 도덕적 자질이 함양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한다. 조주현(2013, 2018) 역시 좋은 공동체, 좋은 시민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이성적 토론과 합의와 관련된 논의로 환원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유지 및 심의의 성립을 위해 시민들이 애국심, 시민적 우정과 같은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론의 상, 의사소통의 목표, 의사소통의 방법, 참여자 태도 측면에서 각각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배제적 함의를 성찰하였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전반적으로 부분적 측면에서의 방향성 제시에 임하고 있다. 공론의 상과 포용적 의사소통의 목표, 방법, 참여자 태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도덕교육적 함의 도출이 요구된다.

앞서 논했듯 공론의 상과 의사소통의 목표, 의사소통의 적절한 규범과 방법,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영의 체계적 논의는 이러한 탐구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영 역시 포용적 의사소통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시민 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한다(Young, 2006). 그러나 영 이론의 안팎 모두에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구체적 교과 교육 맥락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먼저,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김희강(2010), 현남숙(2020), 나상원(2021), 국외의 경우 Fung(2004), Kadlec · Friedman(2007), Medina(2014), Melton(2009)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들은 포용적

주장, 욕구 표현의 허용, 내외적 강제의 배제-을 수업 맥락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영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것이 집단 간 이질성과 불평등이 증대하는 현대 사회에 갖는 유용성을 밝힌다.¹²⁾ Fung(2004)과 Kadlec · Friedman(2007)은 영의 논의를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대응을 모색한다. Medina(2014), Melton(2009)은 영의 논의를 각각 사회적 연대 형성과 참여자 개인의 태도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¹³⁾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바탕이 되는 영의 정의론을 교육적 맥락에 적용하고자 한 국내의 시도로는 박성춘(2012)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 정의에 대한 다문화 교육자들의 관점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일상적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밝히며 사회 정의에 대한 영의 현실기반(grounded) 접근이 다문화 교육의 이해·실천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최은순(2019) 또한 영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시민성의 의미를 탐색하며 포용적 의사소통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¹⁴⁾을 시사한다. 국외의 경우,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의 38 특집호를 통해 Elizabeth Frazer(2006) 등이 교육 철학으로서의 영의 이론을 집중적, 다면적으로 탐구¹⁵⁾했다.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교육적 적용은 Miner(2013)와

12) 김희강(2010)과 현남숙(2020)의 연구는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정리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적 의사소통 과정이 주변화된 사회 집단을 포함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 자원이 된다고 논한다. 나상원(2021)은 유사한 맥락에서 포용적인 민주적 소통을 통해 개별 시민의 역량 역시 자아 발전, 성찰적 시야, 사회적 지혜 등의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3) Medina(2014)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공중이 함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논의와 투쟁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공유된 정치적 책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Melton(2009)는 심의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도덕적 존중이 영이 이야기하는 절차적 변화(procedural change)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참여자 개인의 태도 변화(dispositional change)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14) 해당 연구는 영의 정의론, 도시의 삶, 이질적 공중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개별 특수성을 가지고 낯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최은순, 2019, p. 185)’로 시민의 정체성을 이해한다. 이에, 연구자는 개인들의 고유성 및 타자성과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 보편적 능력을 동시에 인정하며 시민들이 서로 배척 없이 원활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논한다.

15) Avigail Eisenberg는 정치·시민 교육과의 관련 아래 영의 정치 이론 일반이 갖는 세 기여-지배와 억압에 대한 주목, 차이에 주목하는 정치 강조, 노동 분업과 의사결정에의 포함 촉구-와 도전에 대해 탐구한다. Elizabeth Frazer는 영 정치

Weasel(2017)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Miner(2013)는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세 초등 교사의 포용적 민주주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Weasel(2017)은 영의 입장을 활용해 교실 토론에서 더 형평성 있는 심의를 구축하기 위한 수업 방법¹⁶⁾을 제시한다.

일련의 연구들은 영의 포용적 민주주의 이론이 중요한 현대적 함의를 가지며, 교육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한국의 도덕과 교육 장면에서 우리가 길러내어야 할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무엇이며,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채택해야 할 포용적 의사소통 방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그 특징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그로부터 도덕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심 물음을 종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 (2)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론의 요소들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통해 정치 이론이 정치 교육 및 시민성 교육과 관련해 제안하는 바-이질성과 불평등의 강조, 정치 철학 교육의 중요성 강조-에 대해 정리한다. Ronald Beiner는 영의 집단 간 차이에 기반한 시민성 (group-differentiated citizenship) 개념이 다양화하는 현대 사회에 시민성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대안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논한다. Penny Enslin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영의 관점이, 특히 전지구적 불평등이 확대하는 맥락 아래, 지니는 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했다. Sharon Gewirtz는 영의 정의 이론을 살피며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의 정치, 사회, 교육적 논의의 맥락적 특성을 강조한다. Simone Galea는 영의 비대칭적 상호성(asymmetric reciprocity)과 선물하기(gift-giving)의 개념에 주목하며 교실 교육적 풍토, 교사-학생 간의 윤리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 16) 연구자가 그의 동료 Samuelsson(2016)의 심의 교육에 대한 논의와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a. 학생들을 적절한 수의 그룹으로 나누기 b. 학생들에게 역할 부여하기 -리더, 촉진자, 요약자, 서기, 대변인, 악마의 변호인[의도적 반대 의견 제시]- c. 논의 주제와 무관한 호감인사 체크인 단계를 통해 논의 시작하기 d. 일상적 스토리 텔링을 촉진하는 질문하기 e. 더 빠르고 쉽게 합의한 그룹보다 더 넓고 다양한 입장을 검토한 그룹에게 보상하기.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문헌 연구법으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학위논문, 학술논문, 저널, 서적, 관련 정보, 비평집 등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이나 그 결과 나타난 연구 결과물이다(허균, 2010, p. 71).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포용적 의사소통에 관한 영의 논의를 살피고 그 특징과 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구 물음 (1)과 관련해서 『포용과 민주주의』의 순서를 참고하되 논점에 따라 재구성하여 영의 포용적 소통 이론을 정리할 것이다. 이에 『포용과 민주주의』(김희강, 나상원 역)을 주 텍스트, 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판 원문을 보조 텍스트 삼을 것이다. 영의 정의관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는 『차이의 정치와 정의』(김도균, 조국 역), 논의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책임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허라금, 김양희, 천수정 역)을 참고하고자 한다. 더해, 앞선 절에서 정리한 김희강(2010), 나상원(2021), 현남숙(2020) 등 영 이론에 대한 국내외 연구 논문들을 이론 전반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참고 텍스트로 활용한다. 연구 물음 (2), 즉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탐색을 위해서는 2015 교육과정의 총·각론과 그를 바탕으로 저술된 도덕과 교과서, 앞선 절에서 언급한 종래의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관련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를 정리한다. 먼저, 2장의 1절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영의 비판적 논의와 해당 관점에서 심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살핀다. 즉,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영의 비판과 사회 정의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해당 정의관 아래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어떻게 부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영의 옹호와 비판을 살핀다. 영은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심의 민주주의 이론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네 규범에 대해 정리한다. 첫 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항들에서는 기존 심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영의 비판을 다룬다. 이를 위해 영이 ‘기존 심의 모델’ 이라고 칭하는 이론적 경향을 그 대표적 예시인 롤스와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먼저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후, 기존 심의 모델이 공중의 일체성과 합리성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영의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제목 아래, ‘그렇다면 포용적 의사소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의 질문에 대한 영의 응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영이 공론과 공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의 논의에서 의사소통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논한다. 영은 공론의 개념을 공공성의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 다시 확장하고, 공중의 입장 간 이질성에 대해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더해, 그녀는 의사소통의 목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 문제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부분에 대해 각각의 항에서 살핀다. 두 번째 절은 영이 포용적 의사소통의 장에서 참여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다. 첫째 항을 통해 의사 표명 방식의 확장에 대한 영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후, 둘째 항을 통해 합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영의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도덕교육에 갖는 함의에 대해 탐구한다. 먼저 1절에서는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항에서는 먼저 도덕과 교육에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핀 후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두 번째 항에서는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제시할 수 있는 함의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2절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도덕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핀다.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적용해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의 규칙들을 고안한 후, 해당 이론이 기존 논쟁 수업 모형의 실행에 있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

본 장에서는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를 개괄한다. 1절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영의 비판적 이해를 파악한 뒤 민주적 의사결정이 정의의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의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2절에서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적 특징에 대해 살핀 후 기존 심의 모델에 대한 영의 비판을 살펴본다.

제 1 절 영의 비판적 정의관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영은 정의에 대한 분배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정의관을 제시한다. 영은 대다수의 근대 정치철학 이론이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제를 사회적 재화의 분배로 제한한다¹⁷⁾고 분석하며 그러한 이론적 경향을 ‘분배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한다. 영에 따르면 분배 패러다임은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 제도적 맥락을 간과한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영은 정의론의 관심사가 구성원의 자기 발전과 자기 결정의 제도적 조건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JPD, 98)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영이 정리하는 분배 패러다임의 시민관과 정의관, 분배 패러다

17) 대표적인 예로, 롤스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Rawls, 1999/2019, p. 40)” 에 있다고 본다. 영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런시맨, 애커먼, 겔스톤 등 자유주의자들의 정의 이해는 물론, 이러한 주류 자유주의 이론의 틀을 비판하며 보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옹호하는 밀러, 사회주의 진영의 넬과 오닐, 공동체주의자 왈쩌 등 대다수 학자들이 분배를 정의 이론의 중심 주제 삼는다(JPD, 54). 영은 이러한 경향을 현대의 논의에서도 발견한다. 테일러(1985)는 정의 이론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최근의 논쟁을 다음의 두 실천적 쟁점으로 정리한다. (1)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분배는 정의로운가, 만일 아니라면 정의는 복지 서비스 급부 및 여타 재분배 조치를 허용하고 심지어 요구까지 하는가? (2) 고소득과 특권을 누리는 각종 지위의 분배 정형은 정의로운가, 만일 아니라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정책은 그와 같은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수단인가? (JPD, 59) 영은 분배 중심적인 이러한 경향 전반을 ‘분배 패러다임’으로 명명해 논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영의 논의를 따르되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주로 참고했다.

임에 대한 영의 비판, 영의 시민관과 정의관, 그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1. 분배 패러다임 비판

분배 패러다임에서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구성원들이 한정된 재화에 대해 각자의 정당한 몫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설명된다. 이 정의론은 시민들은 제도나 관계에 논리적으로 앞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몫에 대한 불가침의 소유 권리를 갖는 개인들로 묘사한다. 이러한 설명은 시민들이 제도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소유와 행위에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즉, 분배 패러다임은 시민들을 원자적 소유자로 상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재화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JPD, 53)으로 이해된다. 분배 대상인 사회적 재화에는 주로 부나 소득과 같은 물질적 재화가, 종종 권리나 기회, 권력이나 자존감과 같은 비물질적 재화가 포함된다. 분배 패러다임은 특히 이러한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되는 최종적·고정적 정형(pattern)¹⁸⁾을 구축하는 데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분배 패러다임에서 정의를 평가하는 작업은 분배의 최종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정형 가운데 가장 정의로운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은 재화의 정당한 분배가 분명 정의론의 중요한 주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분배 패러다임은 시민과 정의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적인 관점을 취한다. 앞서 논했듯 분배 패러다임은 시민들을 기본적으로 원자적 소유자로 본다. 이러한 정의론은 시민들이 소유를 넘어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및 행사하는 존재이며, 시민

18) 노직은 특정한 기준-에컨대 능력, 도덕적 공과, 필요, 지능, 효용, 평등 원리 등-에 의거해 재화가 분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렇게 분배된 최종 상태의 정형 end-state pattern을 정의롭다고 보는 정의론을 정형 지향적 정의론이라고 부른다(JPD, 58). 노직은 이러한 정의론이 재화가 분배되는 역동적 과정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영은 이러한 노직의 논의를 유사한 논지에서 활용하며 분배 패러다임이 정의를 정형화함으로써 분배 질서가 결정되고 재화가 분배되는 역동적 과정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들이 소유를 비롯한 행위 전반에서 제도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

영에 따르면 제도적 맥락은 우선 다음과 같은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그것은 국가, 가족, 시민사회 직장과 같은 제도들에 존재하는 구조들이나 관습화된 행동들을 포함하며, 이 구조나 행동들을 낳는 규칙과 규범들도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언어와 상징들까지도 포함한다(JPD, 65). 영은 제도적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히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 노동 분업, 문화의 세 범주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로,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절차, 따라서 누가 그 지위로 인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나 권위를 가지게 되는지의 물음을 중심으로 한다(JPD, 67). 둘째로, 노동 분업은 분배적 측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직업이 어떻게 개인 또는 집단에게 할당되는지와, 비(非)분배적 측면에서는 직업 자체와 그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다(JPD, 68).¹⁹⁾ 셋째로,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상징, 이미지, 의미, 습관적인 행동거지, 이야기 등을 포함한다(JPD, 69). 어떤 사회 집단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가 문화와 관련된 주요 물음이다. 결국, 영이 주목하는 제도적 맥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 노동 분업, 문화적 이미지 형성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 아래 사람들이 어떤 -예컨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은 이러한 제도적 맥락이 구성원들의 소유 및 행위의 조건을 형성한다고 본다. 실상 재화의 정당한 분배는 단순히 분배 정형 자체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재화의 분배를 결정하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

19) 예컨대 분배적 관점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직업군에 여성들이 낮은 비율을 형성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 비(非)분배적 관점에서 직업을 평가할 때 그것이 이성이나 도구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감정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에 따라 남성적 성격 또는 여성적 성격의 직업으로 파악하는 것, 나아가 어떤 류의 직업이 보다 높은 명망이나 보수와 연결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JPD, 68).

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 어떤 노동 또는 문화적 이미지에 더 많은 재화가 부당하게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정당한 분배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물질적 재화의 정당한 소유는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에 있어 분명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사회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아래서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 전반을 조건화한다. 따라서 영은 정당 분배뿐만 아니라 제도적 맥락의 구성 요소들이 그 자체로 반드시 정의와 부정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JPD, 66)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제도적 맥락은 구성원들의 분배를, 나아가 구성원들의 행위를 중요하게 조건화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공적으로 부정의를 문제 삼고 정의를 호소하는 상당수 사회 운동의 주된 관심사 역시 물질적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 정형 구축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영에 따르면, 오히려 이들의 대다수는 의사결정 권력과 절차, 노동 분업 구조, 문화적 이미지와 상징의 부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JPD, 61)²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 패러다임은 제도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으로써 정의에 대한 제한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분배 패러다임은 기존의 특정한 제도적 맥락을 당연시함으로써 부정의한 기존 구조에의 성찰을 방해한다는 한계 역시 갖는다. 분배 패러다임 하의 이론들은 종종 중앙 정부와 관료들에 의한 관료제 의사결정 구조를 상정한다. 많은 경우 몇몇 일자리에만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력, 사회적 권위, 소득,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되는 기존의 노동

20) 영은 (1)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에 그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메사추세츠 주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사례, 도시의 반에 가까운 일자리를 보장하던 대기업의 지역 사업장 폐지에 어떤 사전 경고도, 여타 구성원이 사업체를 인수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반발한 오하이오 주 어느 도시 시민들의 사례 -의사결정 권력과 절차의 부정의에 대한 문제제기- (2) 흑인들을 범죄자, 매춘부, 하녀, 사기꾼, 불법의 공모자로 재현하는 미디어에 대한 흑인 운동가들의 분노 -문화적 이미지와 상징과 관련된 문제제기- (3) 자신들의 단순 노동이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무직 노동자 조직의 주장 -노동분업 구조, 그리고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 을 예로 든다. (JPD, 61)

분업 체제 역시 물음 없이 가정된다. 시민들의 모습 역시 보편적 인간성으로 간주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이미지로 상정되곤 한다. 분배 패러다임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맥락을 불편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상정한 채 재화의 분배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분배 패러다임이 상정하는 제도적 맥락은 그 자체가 정의에 대한 성찰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특수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제도적 맥락은 특정한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부정의하다. 예를 들어, 뒤에서 더 논하겠지만 불편부당한 전문가가 합리적 절차에 의해 행한다고 간주되는 관료체제 하의 의사결정 구조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행위 및 행위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 패러다임에서 제도적 맥락 자체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2. 정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1) 영의 정의관

영은 정의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 시민들을 단지 소유자가 아니라 행위자로 보고, 그들의 소유와 행위가 제도적 맥락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 정의는 시민들의 좋은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조건의 마련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파악된다. 영은 분배의 개념은 물질적 재화의 개념에 한정되고, 이와 더불어 의사결정, 노동 분업, 문화가 정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JPD, 37)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영은 사회 정의의 중요한 관심사가 좋은 삶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 담아내며 지원하는가(JPD, 98)여야 한다고 본다. 영에 따르면, 근대 정치사상은 각자가 자기 자신만의 목적을 정할 수 있게끔 개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정의의 영역을 협소하게 한정시(JPD, 89)켰다. 그러나 앞서 논한대로, 정의에 대한 제한적 이해는 몇 가지 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해방은 물론 기본적인 삶을 오히려 방해했다. 영 역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좋은 삶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전히 개인들에게 스스로 좋은 삶을 기획할 여지는 남아있다. 다만, 정의롭다는 것은 개인이 기획한 좋은 삶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사회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임의로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의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유용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영은 개인들에게 일반적인 좋은 삶의 가치들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한다.²¹⁾ 첫째,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Gould, 1988, 2장; Galstion, 1980, p. 61-9, JPD, 98에서 재인용)”, 즉 자기 발전(self development)²²⁾이다. 둘째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며, 또 자신이 행동하게 될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JPD, 98)”, 즉 자기 결정(self determination)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의의 의미는 구성원의 자기 발전과 자기 결정에 대한 제도적 지지로 종합된다.

영은 정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접근을 위해 정의를 이상적인 정의 원칙의 실현이 아닌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의 해소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영은 어떤 사회 집단들이 제도적 규칙과 관계에 의해 자기 결정 및 자기 발전에 제약 받고 있는 부정의의 현실에 주목한다. 여러 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의는 단지 소수의 강압적 영향력이거나 부정의한 특정 정책의 인과적 결과라기보다 고착화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 속에서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언어와 상징, 제도와 규칙 속에서, 일상 속 제도적 관계와 그 속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

21) 영은 이러한 두 가치가 모든 인간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상징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받아들인다. 두 가치의 정당화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는 본고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우선 생략한다.

22) 자기 발전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필요의 형식적으로 공정한 충족 뿐만 아니라, 상이한 필요에 대한 고려 및 지원, 나아가 그들의 상이한 필요를 비롯해 삶 전반을 조건화하는 제도적 측면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즉, 자기 발전 가치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에 따르면 특히 타인이 경청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은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따라서 적절한 의사소통의 제도적 지지는 -자기 결정 뿐 아니라 자기 발전 가치 측면에서 또한- 정의로운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스럽게 이루어지는- 있는 구조적 부정의(ID, 역자해제 13)다.

구조적 부정의 상태를 규정하는 두 가지 사회 조건은 앞서 논한 두 일반적인 가치에 상응하여 첫째로는 개인들의 자기 발전을 막는 제도적 제약으로서의 억압(oppression), 둘째로는 개인들의 자기 결정을 막는 제도적 제약으로서의 지배(domination)다. 억압이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약이다.²³⁾ 지배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 또는 행위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제도적 조건들을 말한다(JPD, 99). 결국 정의란 구성원의 자기 발전과 자기 결정을 막는 제도적 제약으로서 억압과 지배의 제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에 따르면 지배와 억압은 사회집단을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집단이란 문화적 형식과 관행, 삶의 방식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타 집단과는 구별되는 사람 무리다(JPD, 111). 영은 특히 사회구조를 매개로 사회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며 구조 속에서 유리한 처지(position)를 점유하는 집단과 불리한 처지를 점유하는 집단이 구분된다고(ID, 역자해제 14) 말한다. 사회집단은 같은 집단 내의 친연성(affinity)과 다른 집단과의 구별이라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한 집단 사이의 구성원 사이에는 특유한 친연성이 생겨난다. 비슷한 경험이나 삶의 방식으로 인해 집단 내의 사람들은 해당 집단 밖의 사람들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더 친밀하게 어울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은 적어도 하나의 타 집단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구분짓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

23) 억압 개념에 대해 영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억압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환경에서 좋은 기술들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과정 체계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소통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타인이 경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 생활에 관한 자신의 체험, 감정, 관점을 표현하는 것을 금제하는 사회 과정이다(JPD, 99).

영에 의하면 억압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한 사회 집단의 에너지-대표적으로 노동 산물, 사회적 지위나 권력-가 그들 스스로가 아닌 타 집단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전되는 것으로서 착취, 유용한 사회 생활-노동, 정치 참여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주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력화, 속한 사회 집단의 문화적 이미지나 관점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려지는 것으로서 문화제국주의,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폭력.

다(JPD, 111).

사회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필연적, 고정적 속성으로 개념화되지 않는다. 영은 특정 대상에 대한 실천적, 관성적 행위로 구성된 사회적 무리라는 사르트르의 시리즈(series) 개념을 빌려 사회 집단의 개념을 설명한다. 시리즈로서의 사회집단은 어떤 공유된 고정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집력 있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행, 제도 등에 의한 경험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렇듯 인간관계망에 의해 느슨하게 묶인 사회적 무리로 이해된다(ID, 역자해제, 18-9). 이러한 측면에서 소속된 사회 집단을 정의하는 핵심은 그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들이라기보다 각 구성원이 갖는 정체성의 감각이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소속된다는 확인 의식, 사회적 지위가 만들어 내는 공통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 의식 등이 이러한 감각을 구성한다(JPD, 113). 영에 따르면,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분명 유의미하게 조건화한다.

2) 이질적 공중의 상(像)과 민주적 의사결정

정의를 이와 같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주목한다.²⁴⁾ 영의 정의관 하에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의의 중요 요소이자 구현 조건(JPD, 68)임이 보다 분명히 강조되는 것이다. 본 항에서는 분배 패러다임과의 대조를 통해 영의 정의관이 전제 및 옹호하는 공중(public)의 상(像)과 의사결정 체제에 대

24)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은 의사의 표현, 수용, 조정 전반을, 의사결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영의 주된 초점은 의사결정에의 포함에 있다. 그러나 영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장면을 배제한 의사결정이 사람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이질적 입장들이 직접적으로 소통되지 않고 포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영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두 장면 모두에서의 포용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이후의 논의에서 별다른 부연 없이 사용되는 ‘의사결정’은 그를 위한 참여 집단 모두의 의사가 표현되는 의사소통의 장면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고, ‘의사소통’ 역시 의사결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해 정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정의의 중요한 요소이자 조건이라는 명제와 관련된 영의 보다 구체적 논의를 살핀다.

분배 패러다임은 동질적 공중의 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관료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방관한다.²⁵⁾ 먼저,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들은 동질적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며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 영에 의하면 근대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불편부당한(impartial) 이성으로 제시된다. 즉, 그가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합리적 행위 주체가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취할 법한 관점을 채택해 도덕적 판단에 임할 때 그는 이기주의를 피하고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JPD, 225). 이를 위해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 스스로의 특수한 입장이나 그에서 비롯되는 관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개별 특수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제거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불편부당한 도덕적 이성의 이상은 근대 정치 이론에서도 계승된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판단 양상 또한 불편부당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묘사된다. 적절한 공적 판단이란 모든 시민이 취할 법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일반화 가능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는 개별 특수한 이익 또는 관점, 감정 및 육체적 요소가 개입된 판단과 질적으로 구분된다. 동질적 공중의 상 아래 시민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동질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통해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독백적·선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관점이 있다는 이 논의는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을 용이하게 하며 관료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정당화한다. 동질적 공중의 상 아래,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면서 불편부당하게 행동하는 전문가라면 시민 누구라도 이르렀을 동일한 결론에 잘 도달할 것(JPD, 183)이라

25) 영이 정의에 대한 분배 패러다임과 동질적 공중의 상 및 관료 중심 의사결정 체제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본 문장은 최소한 정의에 대한 분배 패러다임이 관심의 초점을 정의로운 의사결정 체제에 향하지 못하도록 해 현행의 관료 중심 의사결정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어렵게 한다는 의미로, 보다 나아가서는 분배 패러다임이 전제하고 있는 합리적 소유자, 정책 소비자로서 동질적 인간관이 관료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는 믿음이 쉽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관료 체제(bureaucracy)는 여러 사회적 기획들을 기술적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직하는 시스템(JPD, 178)이다. 관료 체제는 인간 행동의 목표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어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절차를 결정한다. 예컨대 기업은 기업 관리 시스템, 국가는 행정 관리 정부 체제, 가족 및 사회는 가족법 및 사회보장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관료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관료 체제의 객관적 절차를 준수한다고 여겨진다. 관료 체제 자체와 전문가 관료들의 활동은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은 시민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판단에 임할 것으로 간주되는 불편부당한 전문가 관료들의 몫으로 위임된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동질적 공중의 상과 그를 기반으로 한 관료 중심 의사결정 체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불편부당하고 동질적인 공중의 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불편부당한 관료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믿음은 실현 불가능하다. 먼저, 영은 동질적 공중의 이상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영은 불편부당한 도덕 판단의 이상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한다. 영은 이를 판단에 있어 개별특수적 상황과 입장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판단의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자의 감정과 욕구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도덕적 문제 상황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해 추론을 진행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모종의 특정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전제한다. 더해, 만약 행위자가 도덕적 판단의 결과에 특정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나아가 행동함으로써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동기 역시 생기지 않는다(JPD, 235).

위와 같은 관점에서, 영은 인간들에게 보편적 관점으로 동일한 형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동질적 이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영은 정치 행위라는 보다 구체적인 맥락을 다루는 정치 이론에서 공중이 행한다고 여겨지는 불편부당한 판단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공중의 상을 바탕으로 한 불편부당한 관료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믿음 역시 허상이다. 관료 체제하의 전문가 관료일지라도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사회적 삶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집단 소속감과 가치지향 및 다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초월적 이성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JPD, 254). 관련된 외부의 모든 관점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 또한 실현 불가능하다.

둘째로, 이렇듯 실현 불가능한 동질적 공중의 상과 관료 중심 의사결정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은 부정의를 재생산한다. 먼저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공적 판단에 임하는 동질적 공중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은, 현실적인 공적 숙고가 어쩔 수 없이 개별특수적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며 억압과 지배를 강화한다. 이러한 이상의 지향 아래 기존에 결정 권력을 쥐고 있었던 특권 집단의 공적 숙고가 많은 경우 중립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특권 집단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관심이 불편부당한 공적 관심으로, 그들의 특수한 이익이 불편부당한 공적 이익으로, 그들의 특수한 논증의 방식이 불편부당한 공적 표현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시에, 피억압 집단의 주장은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집단 이기적인 특수 이익으로 간주된다. 즉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피억압 집단의 관심, 그들이 -그간 부당히 박탈당하였으므로- 보장 및 실현을 요구하는 피억압 집단의 이익, 논의 전반에서 그들이 취하는 다양한 표현의 방법은 모두 비(非)공적인 것이라 규정되며 공론장에서 배제된다.

결국, 이른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의 당파성을 폭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JPD, 257). 이렇듯 사회 집단 간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곳에서, 어떤 집단은 억압받는 한편 특정 집단만이 특권을 누리는 곳에서 특권 집단의 개별 특수성이 중립화, 정상화하는 경향은 억압을 강화한다. 더해, 시민들이 독립적으로도 불편부당한 공적 판단에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포함해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논의를 어렵게 한다. 동질적인 공적 이성에 대한 신뢰는 첫째로는 위임적 의사결정 체제 자체에 대한 성찰을, 둘째로는 공적 사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만남과 논의를 불필요하게 한다. 즉, 동질적 공중의 이상은 의사결정 구조를 공적 논의의 주제에서 배제하며, 시민들을 공적 의사결정 참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영은 이러한 이상이 지지하는 관료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낳는다고 분석한다. 앞서 논했듯, 지배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또는 행동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금제하는 제도적 조건에 있다. 관료 체제하의 지배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관료들-정부 당국 및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일상적인 행동 및 행동 조건을 통제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과 삶의 영역 전반이-고객과 소비자는 병원, 학교, 사회보장 기관들, 관청, 레스토랑 등 수많은 기구의 권위에 복종한다- 관료 체제하에 작동함에 따라 관료 집단은 각각의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는 표준 절차를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사람들은 의사결정 절차 자체를 공동 논의하기보다 관료 체제 내의 표준화된 질서에 의해 그 행위 조건을 결정받는다.

영은 이질적 공중의 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지지한다. 영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르다 여겨지는 이들과 상이한 집단을, 모종의 친연성을 갖는 이들과 동일한 집단을 형성하며 분화한다.²⁶⁾ 사회 집단은 적어도 하나의 타집단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를 구분짓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JPD, 111). 한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는 비슷한 경험이나 삶의 방식으로 인한 친연성이 형성된다. 영에 따르면, 사회 집단이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해 집단 내외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하는지는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방식을 유의미하게 조건화한다. 더해, 각 집단은 모종의 관계 아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배와 억압의 관계하에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집단은 자기 결정과 발전에 있어 특권을 갖는 한편 다른 집단은 제약을 받는다. 결국, 구성원들은 정체감과 삶의 방식, 권력의 측면에서 모

26) 영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건 그 존재와 속성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과 구분됨으로써 식별된다. 다시 말해, 존재와 속성이 식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을 전제한다(JPD, 221). 대상들은 서로 구분되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결코 절대적으로 타자적이지도 않다. 즉, 대상들은 그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완벽하게 부존재한 상태도, 또는 공유하는 속성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되는 속성들이 완벽하게 부존재한 상태도 아니다(JPD, 222). 대상들은 모종의 상호 관계 아래 결코 완전히 같음은 아닌 어느 정도의 유사성과, 결코 완전히 다름은 아닌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영의 이러한 존재론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두 상이한 사회적 위치에 자리한다.

동질적 공중의 상을 전제하는 주장들과는 달리 공적 판단에서 개인은 이러한 위치성을 완전히 소거할 수 없다. 개인은 그가 속한다고 여기는 사회 집단들에 의해 구성된 구체적인 위치에서, 결코 다른 개인 및 집단들과 공유된다고 말할 수 없는 특수한 관심과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관심과 이익은 오히려 자주 충돌하며, 때로는 양립 불가²⁷⁾하기도 하다. 또한, 개인은 모두가 공유하는 단일의 관점 또는 모두의 관점을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판단에서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과 순수하게 감정 및 육체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 역시 영의 논의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감정과 육체적 요소를 완전히 소거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인 추론에 임하는 것 역시 어렵다. 결국,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동질적 공중의 상에서 지향하는 보편적 관점에서의 이성적 추론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은 전문가 관료에 의해 적절히 대신될 수도 없다. 상이한 위치에 있는 공중은 그들 각각의 구체적인 관점-관심사와 옹호 이익-에서, 감정·육체적 요소를 동원해 공적 숙고에 임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동질성, 불편부당성에 대한 지향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정의를 낳는다. 동질성, 불편부당성의 이상이 포기될 때, 우리는 결국 상이한 입장들을 지닌 채 공론장에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다. 각 집단의 구체적 입장들이 공론장에서 직접 오가는 것만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이상으로서도 바람직한 공적 논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사는 단순히 대신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사를 공론에 적절히 담아내는 것만이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부당히 박탈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정의를 위해서는 사는 곳, 민족, 젠더, 직업 등이 다른 실제의 사람들이 각자의 독자적 목소리를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들 안에서 쟁점들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현실적 참여 구조가 요구될 뿐(JPD, 258)이다.

정리했듯 영의 정의관은 정의에 대한 논의의 관심사를 의사결정 구조

27) 억압과 지배의 상황에서 피지배 또는 피억압 집단의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처방적 대안은 지배 또는 억압 집단의 특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공적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들의 관심과 이익은 공유된다기보다 자주 경합한다.

로 확장한다. 이어서는 정의의 원칙이나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공적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상이 이질적 공중의 대화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상이라는 영의 논의를 살폈다. 영의 정의관은 이렇듯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자 구현 수단으로 떠올린다. 영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회 모든 기구에서 사회 정의의 요소이자 사회 정의의 조건(JPD, 187)이라고 정리한다.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의의 요소다. 자기 결정 가치의 측면에서²⁸⁾ 정의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행위 또는 행위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제도적 조건을 요청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공적인 사안에 대한 각 사회 집단의 입장이 적절히 표현되고 나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제도적 조건이라고 이해할 때,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사회는 자기 결정의 측면에서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제도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형성되고, 작동하며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JPD, 206)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 등으로부터 자기 발전과 자기 결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다른 공공정책을 통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교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창구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 2 절 영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 비판

앞서 살핀바, 바람직한 공적 의사결정은 집단들의 이질적 입장이 직접 포함되어 서로 만남으로써만 가능하다. 포용적 대화를 통한 공적 의사결정만이 구성원 모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과

28) 영에 의하면 타인들이 경청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체험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발전의 중요한 측면이자 기반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 받아 공동 규범을 형성하는 의사소통에 적절히 포함되는 것은 자체로 좋은 삶의 중요한 측면이자 역량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구성할 수 있는 중요 기반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영은 심의 민주주의 모델²⁹⁾을 통해 이러한 포용적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리한다. 영에 따르면, “포용적인 정치적 평등과 공적 합당함이라는 이상적 조건에서, 민주적 심의의 과정은 가장 정의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유효화하는 수단이다(ID, 29)”. 한편, 영은 기존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포용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적 특징을 살핀 후, 기존 모델에 대한 영의 비판을 요약한다.

1.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특징

영에 따르면, 심의의 의사결정 과정이야말로 사회 정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심의의 의사결정 과정 아래 구성원의 유의한 자기 표현 및 자기 결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구체적 해결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본 절에서는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과 장점, 심의 절차의 일반적인 규범적 이상을 개괄하고자 한다.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함께 결정을 내리려는 동기로 공론장에 모인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의 규칙으로서 법과 제도를 세우고자 한다. 이때 공동의 목표는 그들이 함께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의 해결, 나아가 협동을 통한 집단의 적극적 필요 충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심의의 장에서 포착되는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평등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정치적 선호를 형성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며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심의의 조건은 참여자들의 입장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의 모델 아래 참여자들의 사적이고 자기 위주의 욕구는 정의에 대한 공적 호소로 탈바꿈될 수 있다.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을 설득해 모종의 합의에 이를 것을 목적한다. 이때 이들은 다른 시민들이 알아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입장을 표현

29) 영은 모델(model)이라는 말을 각 민주주의 이론이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하고자 한다. 즉, 심의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 또는 이익과 양립 가능한 정치적 선호를, 단지 사적이지 않은 표현 방식을 채택해 제시한다. 이들은 어떤 입장이 최선의 이유로 지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집단의 의사를 형성해낸다. 결국, 이들의 결정은 단순한 주관적 선호 간 경쟁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모습을 띠게 된다.³⁰⁾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선호 집합 민주주의 모델에서와 달리³¹⁾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규범적으로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먼저, 규범 당사자들의 의사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포

30) 이와 유사하게 광준혁(2005)은 심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개를 검토하면서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심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선호와 정보가 교환되는 차원을 넘어 (가)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의 선호를 가지게 된 경위와 이유가 설명되고 (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가 변경되고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며 (다) 형성된 집단적 의사가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광준혁, 2005, p. 146)고 정리한다.

31) 영을 비롯한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선호집합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심의 모델을 정당화한다. 영에 따르면 현대 정치 이론에서는 주목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선호집합 민주주의 모델과 심의 민주주의 모델이 두 중심축을 이룬다. 먼저 선호집합 모델에 대해 간단히 살핀다. 선호집합 모델에서 시민들은 모두 정치적 과정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과정 밖에서 이미 형성된 각 구성원의 선호를 결집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후보, 제도, 정책이 가장 폭넓고 강하게 선호되는지 정하는 과정이다.

영에 따르면, 선호집합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의를 구성하거나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집합된 어떤 선호가 왜 규범적으로 정당한지, 따라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구성원들 모두가 왜 그러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적절히 답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먼저 구성원 모두의 입장이 유의미하게 검토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에 의해 선호되지 않은 소수의 입장은 단지 기각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호집합 모델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선택된 선호가 다른 선호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예컨대 해당 모델은 자기 이익에 근거해 순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근거 없는 선호 A와, 타인의 권익을 고려하며 이성적 추론에 따라 이루어진 타당한 근거를 갖춘 선호 B를 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심의 이론가들은 선호집합 모델의 이러한 측면이 주로 해당 모델에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들이 만나 각각의 주관적 주장을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나아가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해, 선호 집합이라는 의사결정의 과정은 합리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참여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시민들의 선호가 집합된다고 해서 그렇게 도출된 집단적 결론이 반드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함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해, 심의의 과정 아래 사람들은 비(非)사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해 및 납득을 추구하며 의사 표명 및 결정에 임하기 때문이다. 심의 모델에서는 이렇듯 적절하게 구성된 심의 절차가, 결정의 규범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어떤 제안이 최선의 이유로 지지되는지에 따라 각각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납득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일반적 합의를 우리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영은 심의의 과정이 구조적 부정의의 고발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의 모델이 정의의 가치와 밀접하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회 부분은 기존의 선호를 합치는 경쟁보다 심의의 과정에서 더 수월하게 정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³²⁾ 다수의 사회 부분 역시 소명 책임에 더 노출될수록, 자의적인 권력은 제한될(ID, 53) 수 있다. 더해, 이상적인 심의 민주주의의 절차는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를 비롯해 공동체가 처한 문제 전반에 대한 -정의로울 뿐 아니라- 보다 현명한 집합적 판단을 돕는다. 공적 토론의 과정은 새로운 정보, 상이한 입장에서의 체험, 자신의 편견이나 무지 등에 대한 확인과 성찰을 돕는다. 이에,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이 교류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혜가 증대한다.

앞서 논했듯, 심의 모델은 의사결정 결과의 타당성을 적절히 구성된 의사결정의 절차에서 구한다. 심의 모델은 공론장에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포함되어, 상호 이해 및 납득 가능한 대안에 합의하는 상을 그린다. 영은 이러한 심의 모델의 의사결정 절차가 포용, 정치적 평등, 합당함, 공공성이라는 규범적 이상을 갖는다고 정리하며 네 가지 핵심 규범을 통해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공식화한다. 영에 따르면, 심의 민주주의

32) 킴리카는 자유주의자 롤스와 드워킨, 공동체주의자 샌델, 비판이론가 하버마스, 페미니스트 프레이저와 필립스, 다문화주의자 윌리엄스와 영을 예로 들며 현대 정치 철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입장이 지지된다고 정리한다. 소수자들 혹은 주변화된 집단들에게 다수결 투표보다 공적 의견 형성 과정에의 참여가 보다 큰 영향력을 부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광범위한 영역의 이론가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한 선결과제로 심의의 확장을 주장한다는 것이다(Kymlica, 2002/2018, p. 464).

이론들은 다음의 네 가지 규범적 이상을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① 포용(Inclusion)과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두의 의사가 토론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만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ID, 36). 심의 민주주의 이론들은 결정에 영향 받는 이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의 권한을 얻어 공론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식에 더해, 의사결정의 규범이나 방식 측면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 영향 받음의 의미는 결정과 정책이 어떤 개인의 행위선택을 유의미하게 조건화함을 뜻한다(같은 곳). 의사결정에서의 포용은 참여자들을 그들이 따를 규범의 저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존중이라는 규범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이들을 그들 자신의 행위를 조건 짓는 결정에 포함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자율적 의지의 담지자로 존중한다는 것이다. 영은 네 규범 가운데 이러한 포용이 적절한 심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따라서 결정적인 요건임을 특히 강조한다(ID, 85). 구성원들의 평등한 지위, 그리고 잘 듣고 말하려는 태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의 포용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또한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 정치적 평등의 규범은, 심의 모델에서는 특히 영향받는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함(ID, 36)을 의미한다. 즉, 참여자 모두는 첫째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상호 질문, 응답, 비판에 참여하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ID, 37). 둘째로, 모두는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제안과 논리 주장에 대해 응답 및 비판할 수 있는 평등하고 유효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셋째로, 누구도 모종의 제안이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평등해야 한다(ID, 37).³³⁾

33) 영은 자신이 포용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별 용어의 규범적 중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분했으나, 책에서 포용이라는 규범을 언급할 때 그것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규범과 응당 서로 이어진다고 말한다(inclusion entails the norm of political

② 합당성(reasonableness)과 공공성(publicity)

한편, 논의는 참여자들이 합당한 마음 자세(reasonable disposition)를 가질 때라야 비로소 시작되고 또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다(ID, 37). 영은 합당함을 가장 기본적으로 토론의 참여자들이 지닌 마음 자세로 이해한다. 영에 따르면, 그것은 왜 그들의 생각이 맞지 않은지를 혹은 부적절한지를 설명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들의 용의(willingness)(ID, 38), 더해, 그를 통해 자신의 의견 또는 선호를 변화시킬 용의(ID, 39)다.³⁴⁾ 합당한 사람들은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결과적 의견 일치(agreement)를 지향한다(ID, 38). 공적 논의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마음 자세로서 합당성이란 기본적으로 심의의 과정에서 자기 입장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자기 입장을 지적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여 그들과 모종의 의견 일치에 이르려고 하자 하는 용의다.

앞서 논했듯 심의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 입장에 대한 설명을 서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심의의 장에서 시민들은 자신들과 다른 타인들에게 잘 이해되고 나아가 납득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의견 표명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그것이 타인들에게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목적하는 태도(ID, 40)다.

equality)(ID, 37).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참여자들 간에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상황, 즉 포용적이지만 불평등한 의사결정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은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몇몇 당사자들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 즉 평등하지만 배제적인 의사결정 상황 역시 상상할 수 있다. 영은 두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지만, 그녀가 기타 지면에서 사용하는 포용의 개념은 많은 경우 정치적 평등의 의미를 포괄한다.

34) 합당한 마음 자세의 참여자는 상대를 경청할 수 있고, 상대를 존중하며, 질문하여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대를 즉각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합당하고자 하는 바람과 능력은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처럼 그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한, 소통적 행위의 실천 그 자체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당함은 협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중요한 요구를 넘어서는 어떤 유별난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하지 않(ID, 57)는다.

정리하면 포용과 정치적 평등은 심의의 과정이 갖추어야 할 규범으로, 합당성과 공공성은 심의의 참여자들이 논의에 있어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의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인 논의에서 영은 ‘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용과 정치적 평등을 함께 의미하거나 ‘합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합당성과 공공성의 규범을 함께 지칭하곤 한다.³⁵⁾ 특히 ‘합당성’에 대한 영의 종합적 이해를 정리하자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타인을 경청하고 타인이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개방적이며, 타인의 동의나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ID, 57-8). 종합적으로, 심의 모델은 공통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의사결정 절차의 평등한 조건 아래 포함되어 열린 자세로 말하고 듣고자 하는 이상을 그린다. 이러한 네 규범적 이상이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 결과의 규범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심의 모델

영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 옹호자들과 비판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가정과 해석이 있다(ID, 55)고 말한다.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공통된 경향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이상적인 심의의 모습은 ‘기존 심의 모델’이라는 말로 지시된다. 영의 비판적 논의를 탐구하기 위해 우선 그 비판 과녁으로서 ‘기존 심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³⁶⁾ 본 절에서는 롤스(J. Rawls)와 하

35) 대표적인 예로 다음의 지점들이 있다. “토론에서의 합당함은 타인을 경청하며, 타인이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개방적이며, 타인의 동의나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ID, 57).” “시민이 합당하다는 것은 본인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주장의 정당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ID, 70).”

36) 영은 ‘기존 심의 모델’이라는 범주에 롤스와 하버마스를 비롯해 왈쩌(Michael Walzer), 밀러(David Miller), 맨스브리지(Jane Mansbridge), 바버(Benjamin Barber) 등 다양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인용한다. 논자 역량 상 모든 이론들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언급이 가장 잦은 두 이론가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버마스(J. Habermas) 두 대표적 이론가들의 심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심의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은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이론적 근원으로 자주 소개된다(장동진, 2012, p. 16).³⁷⁾ 롤스의 논의는 심의를 통한 결정이 타당성을 얻게 되는 근거로서 시민들의 공적 이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버마스의 경우 유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실제 심의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 및 제도화하여야 심의를 통한 규범적 결정이 타당해지는지에 대해 논한다. 영³⁸⁾과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³⁹⁾도 기존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논

37) 장동진(2012)은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두 이론적 근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장동진, 2012, p. 16). 한 가지 이론적 근원으로서 자유주의자 롤스-유사한 진영에서 심의를 이론화하는 이들로 것맨과 톰슨 등-는 기본적으로 공적 결정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과 그것이 향유되는 개인적 영역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기본권 보호가 명시된 헌법의 구성과 작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롤스는 그러한 헌법의 구성과, 해석 및 실행이 시민들의 공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롤스는 주로 헌법적 구성,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정부 제도 내 공론에 주목한다. 다른 한 가지 이론적 근원으로서 비판이론가 하버마스-유사한 진영으로 보면, 드라이젠, 프레이저 등-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구조 속에서 지배 또는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에 관심이 있다. 하버마스는 이를 위해 기존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그를 기반으로 한 공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주로 비제도적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심의에 주목한다. 더해, 심의 상황 자체의 왜곡이 야기하는 지배 및 억압에도 주목하며 그것이 부재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상황을 구축하고자 한다.

38) 앞선 장에서 논하였듯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 입론에 주된 과녁이 된 것은 롤스의 이론이었다. 정의에 대한 두 이론가들의 논의에서 역시 공적 심의의 장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영이 염두에 둔 ‘기존 심의 모델’과 롤스의 심의 모델은 많은 부분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영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기존 심의 모델’이 주로 하버마스의 심의 모델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언급했듯 영은 기존 심의 모델에 대해 논할 때 다양한 학자들을 두루 인용하지만, 하버마스의 모델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컨대 인명 색인을 참고했을 때 하버마스가 유의하게 언급된 지점은 총 11회로, 다른 어떤 심의 이론가들에 대한 언급보다 많다. 영은 실제 의사소통의 절차에서 결정의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하버마스의 기본 아이디어에 동의하면서도 그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동질성에의 가정과 합리주의를 비판한다.

39) 2015 교육과정 시기에 발행된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사회 정의와 공적 심의에 대해 논할 때 롤스와 하버마스를 각각 대표적인 사상가로 예시한다. 예컨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 2. 사회 정의와 윤리 단원에서 롤스의 이론은 노직과 함께 절차적 공정성에 근거한 분배 정의 이론가의 사례로 등장한다(정창우 외, 2017a, p. 92). 6. 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단원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할 때 두 학자를 주로 언급한다. 따라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심의 모델에 대한 영의 비판은 크게 기존 심의 모델이 일체성을 심의의 전제 또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심의의 주된 방법이 오직 논리 주장에 제한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심의 모델은 공중이 개별 특수한 입장을 초월해 보편적인 입장을 채택해 합리적 추론에 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공론의 목표는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만장일치의 합의로 제시된다. 이에 이르기 위해 시민들은 타당한 논증 교환의 형식을 주된 소통의 방식으로 채택한다. 공론과 공중의 상, 그것이 상정하는 공론의 목표로서 공동선에 기반한 합의, 소통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의 순서로 기존 심의 모델을 정리한다.

1) 공론의 개념과 공중의 상(像)

롤스가 밝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 철학 및 도덕적 신념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 간에 안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Rawls, 1993/2016, p. 23)? 롤스는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 근거한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합의되는 정치적 정의원칙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역의 안정성과 포괄적 영역에 있어서의 관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안정적인 기본 구조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심 아래 롤스는 공론을 공적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정치적 대표자들의 논의로 특정한다. 먼저, 롤스에서 공적 논의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의관은 무엇인가?’ 다.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은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가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의 윤리를 소개하는 데 중심적인 이론적 자료가 된다 (같은 책, p. 190).

문제⁴⁰⁾와 관련된 것이다.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의 수립과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해석 및 실행이 공론의 주제가 된다.⁴¹⁾ 이러한 롤스의 공론에서 그 외의 주제, 예컨대 도덕, 종교에 대한 포괄적 신념이나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들⁴²⁾은 제외된다.

더해, 롤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론은 공적 포럼에서 정치적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논의다. 기본적으로 판결 중 판사들의 담론, 정부 공직자들의 담론, 그리고 공직 후보자와 이들의 선거운동 관리자 등의 담론이(Rawls, 1993/2016, p. 633) 대표적인 공적 논의다. 롤스는 이러한 공적 포럼의 공적 정치 문화를 포괄적 신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배경적 문화와 분명히 구분한다. 공론의 참여자는 공직자들로 한정되며,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역할은 분명히 제한된다.⁴³⁾

-
- 40) 헌법적 본질(costitutional essentials)이란 헌법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구조와 정치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원칙들 -예컨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들 그리고 다수결의 범위-과 존중해야 하는 시민의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들 -예컨대 투표권과 참정권 등-(Rawls, 1993/2016, p. 365)이다. 기본적 정의의 문제(matters of basic justice)는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에 대한 것이다. 기본 구조란 사회의 주요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제도들은 물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대 간에 걸친 하나의 통일된 사회적 협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양태(Rawls, 1993/2016, p. 92)를 의미한다. 공론의 주제가 되는 근본적 질문들은, 예컨대, 누가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지, 어떤 종교들이 용인되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 41) 장동진(2012)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논의에서 공적 이성의 행사가 다음의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추상화된 정치적 인간들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추상적 합의에 의한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 수립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적 정치 대표자들의 실제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정치적 정의관이 해석되고 실행되는 단계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의 제정과 정치권력의 구체적 행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42) 롤스는 먼저, 포괄적 신념에 대한 정치적 정의관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어떤 포괄적인 종교, 철학적 교리에 근거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더해, 롤스는 구체적인 정치적 질문들 역시 공적 이성의 직접적 주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많은 구체적인 정치적 질문들, 예컨대 조세입법과 소유물 규제와 관련된 많은 법률들, 환경 보존 관련 법률, 예술 기금 조성 같은 것들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들에, 넓게는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Rawls, 1993/2016, p. 348).
- 43) 물론, 롤스는 공적 이성이 정치적 지위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역할은 스스로를 이상적 입법가인 것처럼 간주하며 합당한 입장에서-이러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롤스의 작은 공론장은 동질적 공중의 상을 함축한다. 앞선 장에서 어떤 입장이 동질적 공중의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공중을 각각의 개별 특수한 입장을 소거해 모두가 취할 법한 동질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이들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롤스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 모두가 -따라서 공직자들이 대신- 불편부당한 관점에서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롤스는 공론 참여자들이 개별 특수한 입장을 소거, 보편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다.

앞서 살핀 롤스의 작은 공론장은 넓어진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신념과 행위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실상 공적인,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롤스에게 법원이나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 외의 문제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논의는 단지 사적 논의에 불과하다. 롤스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 공동체의 규범 형성에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한편, 하버마스에서 공론은 여타의 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포함한다.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는 법이라는 국가의 실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장면에 주목한다. 그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어떤 규범적 주장은 그것이 이상적 담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실제로 합의되는 한 타당하다. 법의 경우 정당하게 갖춰진 입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법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입법절차는 시민사회의 비공식적 공론장과 의회의 공식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절차에 의한 공론, 그리고 두 공론장 사이의 적절한 매개를 핵심으로 한다.

공적 의사소통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공론장⁴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견되고 관련된 여론이 형성되면

서는 뒤이어 논하겠지만- 지지할만한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의 수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공적 논의를 통해 그러한 공적 이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정치적 대표자들로 제한된다.

44) 주로는 쟁점을 부각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공적 영향력의 행사를 주 목적으로 삼는 의견 형성적 결사체들이 공론장의 시민사회적 하부구조, 의사소통 흐름의 비공식적 주변부에 속한다(Habermas, 1992/2018, p. 473).

의회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선택해 관련된 법적 해법을 정당화한다. 즉, 공론을 바탕으로 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논의는 문제화의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화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의식해 그것을 공적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만들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의회의 공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그 해결을 추진하는 창발성’이 있다고(Habermas, 1992/2018, p. 476) 말한다.

하버마스에는 적절한 공론의 절차를 거쳐 논의되기만 한다면 모든 주제를 공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즉, 그가 논의에 앞서 선협적으로 규정하는 공적인 주제는 없다(장동진, 2012, p. 121).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적 영역과 공론장을 가로지르는 문턱은 고정된 주제나 관계들의 집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의사소통의 조건에 의해 표시된다(Habermas, 1992/2018, p. 485)”.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적 이익에 근거한 위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타당한 논증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의 근거를 이성의 독백적 추론에서 담론 상의 실제적 합의로 옮겨오고자 하는 하버마스는 롤스에 비해 공중을 이질적 존재들로 보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일부 관료나 모든 시민이 택할 법한 보편적인 관점을 대신 채택해 결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롤스의 가정을 버린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어떤 규범의 정당성도 실제적 논의와 합의 없이 취득될 수 없다. 특히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규범은 구체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실제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 오직 이질적인 개별 입장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논의된 이후 얻어지는 일반적인 합의만이 사회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독백적·선협적으로 정치 규범에 대한 보편적 동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 롤스와 달리 하버마스는 대화적·후협적으로 정치 규범에 대한 보편적 동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장동진, 2012, p. 93). 하버마스에서 보편적 동의가 시공간을 초월한 전 인류의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한 정치 공동체의 것이라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합의된 헌법 규범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 바라보는 롤스

와는 달리 합의된 바 역시 언제든 오류가 발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정 가능하다고 본다(Habermas, 1992/2018, p. 508).

그러나 하버마스 역시 공중의 이질성을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지는 않다. 하버마스는 한 정치 공동체 내 시민들이 합리적 논증 교환을 통해 일반화 가능한 이익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버마스의 이러한 동질성 지향을 비판한 국내 학자들⁴⁵⁾ 가운데 대표적으로 정호근(2001)은 하버마스의 논의를 동일성의 논리로 규정하며 그것이 모든 차이와 갈등을 동일성에 근거해 동일화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비판을 요컨대, 하버마스는 성공적인 공적 논의를 이성의 보편적인 작동 형식, 즉 합리적인 논증 구성과 그에 대한 상호 타당성 검증에 기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시도는 공적 판단 및 논의와 불가분한 개별 특수한 구체적 체험, 감정적 요소들이 실제의 공론장에서 수행하는, 그리고 이상적 공론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요 기능을 간과한다.

2) 공론의 목표 : 공동선 기반 보편적 합의

심익 민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론의 목표가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있다고 말한다. 이때 공동선과 합의의 개념은 각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 앞선 논의에 이어, 롤스에게 공론의 주제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의 문제와 관련된 공공선(the public good)(Rawls, 1997/2016, p. 632)이다. 즉, 롤스에게 공동선은 개인들의 좋은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적 협력 조건의 마련이다.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롤스에게는 기본적인 사회 협력 조건의 구축이 공론의 유일한 주제가 된다. 따라서 공론 참여자들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롤스는 공정한 사회적 협력 조건에 대한 공론에서 참여자들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한 가지 대안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45) 박인철(2006), 이강형과 김상호(2014), 김영필(2013) 등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고 말한다. 롤스는 종교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정의관, 부분적으로 포괄적인 정의관 등으로 이루어진 각 시민의 관점들이 거칠게나마 같은 정치적 판단에 도달하며 정치관에 대해 서로 중첩한다(Rawls, 1993/2016, p. 262-3)고 논하며 시민들이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에 있어서는 보편적 합의⁴⁶⁾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롤스는 모종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시민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논한다.⁴⁷⁾ 시민들은 사회의 주요 제도들과 전반적인 기본 체계에 대해 논할 때, 그렇게 합의된 정의관에 입각해 동일한 방식의 평가, 그리고 관련된 문제의 해결 모색에 임할 수 있다(Rawls, 1993/2016, p.90).

롤스는 이러한 중첩적 합의가 결코 일시적인 잠정적 타협이 아니라고 밝힌다. 중첩적 합의는 기본 구조라는 공유된 주제에 대해, 모든 시민이 참여해 공적 관점으로 임한 보편적 합의라는 점에서 보편·불변적 측면을 갖는다. 이는 분명히 단지 개별 특수한 사안에 대해 사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적인 타협과 구분되며, 잠정적 타협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롤스는 정치관에 대한 합의를 이해관계의 단순 절충과 그것에 대한 일시적 순응으로 이해할 경우, 정치의 안정성은 그러한 합의가 파괴되지 않는 일종의 행운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고 논한다. 그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중첩적 합의는, 이와는 달리, 어떤 다른 입장이 우연적 권위를 득세한다고 하더라도 위반될 수 없는 정당한 합의(Rawls, 1993/2016, 656-7)이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일반화 가능한 이익에 근거한 보편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하버마

46) 정치적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적 포럼에서의 정의관의 적용 및 실행에 대해서도 롤스는 공적 이성애 근거한 중첩적 합의의 기본 이상을 버리지 않는다. 한편, 롤스는 시민들이 어떤 -특히 정의관의 적용 및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롤스는 -이미 기본 구조 합의 단계에서 합의된- 다수결 투표 제도 등으로 공적 이성애 근거한 원활한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47) 롤스는 합당한 포괄적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기본적 권리, 그것의 특별한 우선성, 자유의 효과적 행사를 위한 전목적적(all-purpose means) 수단의 적절한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관(Rawls, 1993/2016, p. 644)과, 이러한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입헌 민주정체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는 의사소통 행위를 개인적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행위와 구분하며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사회적 행위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의사소통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서 상호 이해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자들이 어떤 발언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주된 관심은 공동의 행위 계획에 대한 합의를 성취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김원식, 2015, p. 158)에 있다.

어떤 타당성 주장은 그것이 이상적인 담론 상황⁴⁸⁾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실제로 합의될 때 타당하다는 하버마스의 기본 입장⁴⁹⁾은 정치 공동체가 법 규범을 세우는 장면에도 적용된다. 즉, 하버마스에 따르면, 적절한 입법 과정 아래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 규범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Habermas, 1992/2018, p. 165). 이때 모든 시민들의 동의한다는 것은 심의 및 담론을 포괄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에 열려 있으며, 법적으로 제도화된 권리 체계에 부합하는 공식적 의사결정기구가 해당 규범을 창출했다는 의미(Finlayson, 2005/2022, pp. 184-5)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에는 적절한 입법 논의의 절차⁵⁰⁾만 갖추어진다면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동일한 법 규범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⁵¹⁾

48) 이상적 담론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은 의사소통이 외적인 영향과 강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a) 모든 담화 참여자는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계속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b) 모든 담화 참여자는 주장, 추천, 설명을 개진하고 정당화를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c) 모든 참여자는 행위자로서 자신의 원의, 감정, 의도를 표현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d) 발화자만이 규제하는 언어 행위, 즉 명령하고 반항하며, 허용하고 금지하며, 약속하고 약속시키며, 설명하고 설명을 요구할 동등한 기회를 가진 행위자로서 담화에 허용된다(Habermas, 1984, p. 177; Reese-Schafer, 1991/1998, p. 33에서 재인용).”

49) 하버마스는 다음의 담론 윤리 원칙을 통과한 규범이 정당한 행위 조정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만 타당하다(Habermas, 1992/2018, p. 161).”

50) 적절하게 구성된 입법절차는 위의 각주에서 논한 이상적인 담론 절차와 유관하다. 박효중(2017)은 적절하게 구성된 입법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한다. “그 입법 행위에 의하여 영향 받게 될 모든 관련자들을 온전히 포함시키고, 자유롭고 용이한 상호작용, 주제와 주제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야 하며,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기를 요구한다(박효중, 2017, p. 702)”

51) 다시 말해, 이상적 의사소통상황의 절차적 제약 조건들이 준수될 경우 담론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관점들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버마스

더해,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합의한 결론은 법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이익과 부합한다. 하버마스는 일반화 가능한 이익, 즉 모든 규범 당사자의 공통된 욕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규범만이 보편 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권수현, 2014, p. 230)고 본다.⁵²⁾ 공론을 통한 법 규범의 형성 역시 일반화 가능한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정당한 법 역시도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덕 규범이 보편화 가능한 이익을 담고 있으므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반면, 법 규범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좋다는 점이 다르다(Finlayson, 2005/2022, p. 186).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영은 하버마스의 일반화 가능한 이익 개념을 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로, 그것은 결국 모두가 공유하는, 따라서 모두가 존중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이익이다. 벤하비브에 의해 제안되었고 영 역시 동의하는 둘째의 대안적 해석은, 개별적 입장에 기반해 이루어지지만, 결국 다른 이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이익이다. 영은 하버마스 자신은 개별 특수적인 시각들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규범 이성의 맥락에서 그것이 지향하는 ‘일반화 가능한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해석을 포기하지 않고자 한다고 해석한다(JPD, 239).

3) 공론의 방식 : 합리적 논증 교환

(박효종, 2017, p. 704)의 생각이다. 물론,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상적 담론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있으리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걸림돌은 단순히 경험적인 걸림돌이 불과하다.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자아와 일치하기 위해 개인의 모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태라는 것이다.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은 규제적 이념으로 제시될 뿐이다(같은 책, p. 705).

52) 도덕 규범의 형성에 있어 참여자들은 모두가 공유하는 따라서 모두가 존중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이익에 도달하고자 한다. 권수현(2014)은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 규범을 따름으로 해서 모든 개개인의 이해의 충족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규범의 모든 해당자들이 강제 없이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보편화 기본 명제의 핵심 내용이 모든 규범 당사자의 공통된 욕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규범만이 보편 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롤스의 공론장에서 주로 채택되는 정치적 소통의 형식은 합리적 논증 구성이다. 롤스는 공론 참여에 요구되는 시민의 능력을 이성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롤스에 따르면,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적 논의는 시민들의 공적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포괄적 신념을 세우는 문제와 달리, 근본적 정치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납득할 만한 것을 고려한다.

논문 「공적 이성의 재조명」에서 롤스는 공적 이성이 앞서 이야기한 그 소유 및 실행 주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이라는 점, 그것이 다루는 주제가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 문제라는 점과 더불어 다음의 측면에서 공적이라고 설명한다. 공적 이성은 그 본질과 내용이 상호성의 기준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일련의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한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을 통해 표현된다(Rawls, 1993/2016, p. 633). 이는 공적 이성의 이상적인 추론은 완결성을 갖춘 정의관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이해 및 납득 가능하도록 표현된다는 의미다. 즉, 공적 이성을 바탕으로 제안되는 주장은 우선 유효한 추론이어야 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표명되어 이해 및 납득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롤스가 상호성의 기준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은 공적 이성의 핵심적 의미를 구성한다. 결국, 공론을 이끄는 시민들의 역량은 유효하며, 나아가 상호 표명되어 이해 및 납득될 수 있는 논증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 정리된다.⁵³⁾ 달리 말해, 롤스는 합리적 추론 형식의 주장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 이해 및 납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적 이성의 또 다른 본질적 특징은 공적 이성의 정치관이 완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정치관이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이성적 사고의 기준으

53) 한편, 롤스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종 공적 이성과 합당성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의 부합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설명된다. 그러나 롤스가 애초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어떻게 중첩적 합의의 지지를 받아 공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지 명확히 해명한 바가 없다는 점은, 공적 이성과 합당성이 부적절하게 고정된 내용을 갖는다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장동진(2012)은 이러한 지점에서 공적 이성이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을 구성한다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정의관이 공적 이성의 내용을 구성하는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장동진, 2012, p. 63)고 지적한다.

로서] 탐문의 지침과 함께 원칙, 기준 및 이상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치관이 규정하는 가치들이 적절한 순서로 배열되거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awls, 1993/2016, p. 649).

상호성의 기준에 근거한 정치적 정당성의 개념은 우리의 정치 권력 행사는, 우리의 정치적 행동과 관련해 스스로 제시하는 근거들이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을 때, 또한 우리가 다른 시민들도 역시 합당하게 그러한 이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역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절하다(Rawls, 1993/2016, p.638).

이러한 이해 하에 롤스에서는 구체적인 심의의 맥락에서 채택되는 공적 표현의 형식 역시 합리적 논증으로 제한된다. 롤스의 논의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롤스의 공론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의 추론 및 소통 방식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리 주장이다. 먼저, 롤스는 실제의 공론에서도 참여자들이 원초적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논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원초적 입장 아래 공적 이성은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그 자신과 그가 대표하는 이들의 타고난 능력, 심리적 성향이나 포괄적 신념⁵⁴⁾,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는 것으로, 즉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장동진, 2012, p. 40). 이는 공정한 협동 조건에 대한 합의에 있어 누군가 이러한 특수한 요소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장의 정당화 작업 역시 논증의 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원초적 입장의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채택할 때 그러한 규범을

54) 롤스에 따르면,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을 토론함에 있어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인 철학적 및 도덕적 견해들은 공공생활에서는 양보됨이 바람직하다(Rawls, 1993/2016, p. 91). 롤스는 분명 합당한 포괄적 신념들이 언제나 공적인 정치적 토론에 도입될 수 있고, 그것들이 때때로 정치적 가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포괄적 신념들이 공적 논의에 진입할 수 있는데 분명한 제한으로서의 단서 조항을 둔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 신념들은 그것이 정치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을 적절한 절차와 정치적 이유들을 통해(장동진, 2012, p. 51) 제시해야 한다. 포괄적 신념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공적 정당화의 본질과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롤스에서 참여자들의 포괄적 신념은 그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간주되는 정치적 정의관 논의를 정당화하는 부수적인 역할로서만, 제한적인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한 공적 이성의 활용 지침도 채택한다. 이러한 지침을 참고했을 때 롤스의 공론에서 시민들이 행하는 정치적 정당화 작업은 이미 널리 수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로부터 출발해 과학적, 이성적 추론을 통해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Rawls, 1993/2016, p. 663). 이러한 이해 아래, 롤스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연역에 임하는 판사의 추론 방식을 공적 이성이 작동하는 이상적 사례로 이해한다.

논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위와 같은 롤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공론장의 모습을 그렸을 때, 상호성을 염두에 두며 독백적으로 추론에 임하는 시민들이 그려지지, 입장의 실제 상호 교환 및 조정에 임하는 시민들이 그려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더해, 롤스의 공론장에서는 어떤 공적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 및 납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원초적 입장에서 세워진 합리적 논증의 형식이어야 한다. 롤스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의관 수립에 한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당한 추론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결론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공론에서 역시 주된 의사소통의 방식은 합리적 논증의 교환이다. 앞서, 그가 공론의 전형 삼고 있는 담론(discourse)이란 참여자가 제기한 주장의 타당성이 논증적으로 정당화되어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규명하려는 성찰적 대화(이은주, 2009, p. 116)다. 즉, 규범 형성적 대화의 핵심은 타당한 논증의 교환이다. 공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역시 이성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공론은 시민들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의사소통 합리성이란 기본적으로 적절한 절차로 구성된 이상적 담론 상황에서 논증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규범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인간 이성의 능력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의 질적 수준은 제안들이 그 형식상 얼마나 합리적으로 가공되어 공중의 일반적인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하에 달렸다고 말한다(Habermas, 1992/2018, p. 481). 하버마스는 엘스터(John Elster)의 논의를 빌려 합리적인 정치적 의지 형성에는 협상과 논증의 두 방식이

있다고 논한다. 그에 따르면, 위협과 약속을 포함한 협상은 전략적 합리성에 따른 것인 한편, 논증만이 의사소통 합리성에 따른 것이다. 하버마스는 협상과 구분되는 논증의 특징이 정파들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동일한 근거에 의해 하나의 대안에 대한 합의에 이른다는 점이라고 정리한다. 논의의 많은 부분에서 하버마스는 그가 그리는 이상적 공론장에서는 후자의 소통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힌다. 공론에 있어서 역시 바람직한 사람들 간의 행위 조정 및 사회 통합은 의사소통 합리성에 따른 논증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의회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공론의 이상적인 소통 형식 역시 기본적으로는 논증 대화라고 말한다(Finlayson, 2005/2022, p. 173).

유사한 맥락에서 영은 하버마스의 합리적 논증 지향에 대한 보만 (James Bohman)의 분석을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보만은 하버마스가 그의 담론 윤리 이론에서 의사소통적 기능의 합리적 논증 중심의 발화를 전략적 기능의 레토릭적 요소와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ID, 101). 보만은 레토릭으로부터 합리적 논리 주장을 정제화하려는 언어 이론의 최신 버전이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가장 적실한 이론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에 나타난다고 정리하며, 하버마스의 모델에서 청자에게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려는 레토릭적 목표는 이러한 도구적 요구를 주입함으로써 소통적 상호작용을 왜곡한다(ID, 105). 즉, 보만 역시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의 주된 방식을 논함에 있어 발화의 수사적 요소 등을 비롯한 합리적 논증 외의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한다고 분석한다.

박효종(2017)의 다음과 같은 정리로 논의를 종합한다. 롤스와 하버마스에서 정치적 심의는 기본적으로 불편부당성의 원리에 의해 주도되는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논증 교환을 통한 합의(박효종, 2017, p. 703)다. 이들은 첫째로, 심의 공중이 취할 수 있는 관점, 택할 수 있는 추론 및 표현의 방식, 결국 이를 수 있는 결론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둘째로, 이들의 논의에서 공동선은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익으로, 합의는 그를 바탕으로 한 -적어도 한 시점, 한 범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합의로 이해된

다. 마지막으로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상적 공론장에서 상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의 규범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역량은 이성이며, 시민들에 의해 주로 채택되는 정치적 소통의 형식은 합리적 논증 교환이다.

3. 기존 심의 모델 비판

앞서 밝혔듯 영은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이상적인 정의 원칙을 구안하려고 하기보다 부정의한 현실의 상황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이 그리는 심의의 장면은 부정의한 현실 상황에서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심의의 장면이다. 영에 따르면, 바람직한 심의 이론은 이와 같은 심의 장면을 더 잘 설명하고,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영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심의 모델의 다음과 같은 두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공론의 전제 및 목표로서 일체성 지향

영에 따르면, 기존 심의 모델에서는 일체성(unity) 또는 공동성(commonness)에의 지향이 드러난다.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동향에서, 공중의 일체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다. 첫째는 일체성을 성공적 심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성공적 심의를 위해 참여자들은 공동의 이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체성을 추구해야 할 심의의 목표로 보는 것이다. 이에, 심의는 결국 공동의 이익에 근거한 의견 일치로 목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두 접근에 대한 영의 비판을 차례로 살핀다.

먼저, 심의 모델에 대한 몇몇 기존의 접근은 참여자들이 가진 공동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성공적 심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⁵⁵⁾

55) 앞서 정리한바,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왈찌는 정체의 구성원들은 반성적인 사회 비판과 행위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갱신되고 소환될 수 있는 공유된 가치와 전통의 어떤 핵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보다 강한 입장에서, 밀러는 민족 정체성이 제

심의를 참여자들이 이미 생활경험과 이익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을 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참여자들이 문화나 민족의 공동성을 갖고 있을 때 성공적 심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모종의 공동 의식은 참여자들을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심의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촉진한다. 나아가 이는 심의가 공유된 생활 경험에 기반한 공유된 전제, 그리고 공유된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유된 목표를 갖추고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접근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영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정치 단위는 지역과 같은 작은 수준이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갖는 여러 사회 집단으로 구성되며, 다른 사회 집단에의 소속은 사람들의 생활 경험과 이익을 유의하게 구분시킨다. 기존 심의 모델의 이러한 상정은 비현실적이다. 나아가, 일체성 및 공동성에의 추구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부 사람들을 심의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심의 모델의 이러한 지향은 결정 결과의 영향권 내에 있어 반드시 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을, 공동의 이해를 갖지 않는 외부인들로 규정해 배제할 위험이 있다.

또, 이러한 상정은 참여자들의 관점이 심의를 위해, 그리고 심의의 과정을 통해 자기 위주적 관점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논의의 전제와 목표가 이미 공유된 공동의 것이라는 가정 아래, 누구도 타인의 경험과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위주의 관점을 탈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심의의 우선 조건으로 일체성 및 공동성을 상정하는 기존 심의 모델은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를 바탕으로 포용이라는 규범을 권장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을 바탕으로 한 더 섬세한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워지는 것 역

공하는 공동 의식만이 심의를 개시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나 민족 공동성에 대한 호소가 아니더라도, 제인 맨스브리지는 토론에 의존하는 참여적인 민주적 공론장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목표, 이익, 전제와 많은 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맥락에서만 적용된다고 제시한다(모두 ID, 60).

시 물론이다.

몇몇 이론들은 일체성을 심의의 목표 지점 삼는다. 심의의 출발점은 차이나는 다양한 입장들의 장일지라도, 결국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거나 만드는 것(ID, 61)이 바람직한 심의의 목표로 제시된다. 참여자들 각각은 심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이익은 접어두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한다. 결국, 참여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견 일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입장의 구성 및 제시 과정 그리고 심의의 마무리로서의 집단 의사결정에서 개별 입장의 차이는 초월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기존 심의 모델의 이러한 지향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로, 구체적인 개별 문제 사안에 대한 심의의 맥락에서 참여자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선이 있다는 가정은 의심스럽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심의의 주제는 많은 경우 특정한 구조적 부정의 문제다. 단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때 피억압 집단이 호소하는 보상 또는 이익이 특권 집단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공유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공유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주 넓은 차원에서 정의에 대한 가치지향 정도 뿐이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이들 각각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공동선에의 추구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심의의 장에서 일부 사람들의 입장 또는 일부 논의 주제를 심의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경제, 정치적 불평등의 현실 속에서 ‘공동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흔히 특권 집단의 관점과 이익을 대변한다. 공동선의 지향은 먼저, 이렇듯 기울어진 공론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더해, 개별 특수한 입장을 초월한 공동 이익에의 추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서 몇몇 집단 및 개인의 참여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먼저,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며, 관련해 결국 만장일치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논의 주제가 회피된다. 더해, 입장의 표현과 교환의 과정에서 피억압 집단 또는 개인이 억압과 관련해 ‘개별 특수한’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그들 집단 또는 개인에게 보상 내지는

이익을 보장해달라 호소하는 것 역시 어렵게 된다. 결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으며, ‘공동의 이익’이라는 말로는 지배 집단의 이익이 대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심의를 이상 삼는 것은 지속되던 배제를 공고히 할 뿐이다.

셋째로, 공동선예의 추구는 협력적 심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부적절하다. 영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경험이나 이익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동선을 지향하는 체 하는 것은 오히려 유의미한 토론이 성사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자연스러운 과정인 이익과 갈등을 무리하게 제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체념과 침묵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불일치와 갈등의 현실 속에서는 차이에 열려 있는 심의의 장면을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자들이 불일치와 갈등의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차이나는 입장을 설득 및 경청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그들은 오히려 협력적 심의를 지속하며 잠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2) 소통의 방법으로 논리 주장 우대

다음으로, 영은 기존 심의 모델이 정치적 소통의 주요한 형식으로 논리 주장(argument)을 다른 형식들보다 우대한다는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논리 주장이란, 전제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연결된 타당한 추론적 고리의 구성(ID, 55)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의 제시로도 정리된다. 영에 따르면, 기존 심의 모델 아래 토론자들은 주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규범, 그러한 개념, 규범을 바탕으로 주제를 논의하는 틀 등을 공유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으로 공유된 전제와 틀을 기반으로 논리 주장을 펼친다. 유사하나 보다 넓은 맥락에서 기존 심의 모델은 이러한 논리정연함(articulateness)과 더불어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이지 않음(dispassionate, disembodied) 역시 말하기의 암묵적 규범 삼는다.

영은 논리 주장의 입장 표현 형식을 우대하는 기존 심의 모델의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논리 주장 우대의 경향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첫째

로, 논리 주장의 표현 방식을 우대하는 입장은 공유된 전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논리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었는가로 더 나은 입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각 논리 주장들이 이미 전제는 공유하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논리 주장은 참여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전제와 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원주의 현실에서 정치적 심의의 참여자들이 어떤 전제와 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유된 담론적 틀과 전제에 따라 논리 주장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틀과 전제로는 표현될 수 없는 특정한 필요, 이익, 부정의로 인한 고통의 표출을 배제한다(ID, 55).

둘째로,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이지 않으면서 논리정연한 말하기 규범은 문화적으로 특수하다. 전제와 결론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리 주장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정형화된 표현 방식(ID, 57)이다. 다시 말해, 논리정연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에게만 익숙하다. 더해,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이지 않게 말해야 한다는 규범 역시 사회경제적 특권 집단의 말하기 문화를 우대한다. 한편,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 혹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말하기 문화는 흔히 더 감정적이고 체화된 경향이 있다(ID, 58). 결국, 이는 심의의장에서 소수자의 말하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영에 의하면, 논리 주장 외의 말하기 형식들 -예컨대 스토리 텔링이나 수사적 표현들, 그리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를 동반한 표현들- 역시 합당한 표현의 형식이다.⁵⁶⁾ 이러한 형식의 확장은 무엇보다, 피억압 집단 또는 개인이 부정의에 대한 고통을 고발하고 다수자의 임의적인 권력에 소명 책임을 부여하는 데 유용하다. 더해, 문제의 제기 이후, 주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전제와 틀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과 논리 주장 우대의 경향은 이러한

5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수의 학자가 “합리적 의사소통과 더불어 하버마스가 [본문의 논의에 따른다면 기존 심의 모델 전반이]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부토대를 이루는 비(선)언어적 의사소통 내지 비합리적인 정서적 요인들이(박인철, 2006, p.21)” 라고 지적한다(박인철, 2006; 최재식, 1999; 조주현, 2018). 이들은 예컨대 애국심, 애향심, 문화·친족적 동질감, 사랑 등의 정서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적 합의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표현 형식을 자체로 평가 절하할 위험이 있다.

덧붙여, 유사한 맥락에서 영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 질서 있음이라는 기존 심의 장면의 암묵적인 표현 규범 역시 지적한다. 이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경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정치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규범이다. 영에 따르면, 심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합리적 참여자들 사이에서 차별하게 전달되는 준비된 발언 이외의 정치적 소통의 무질서해보이는 방식을 제어하고자 한다(ID, 68). 영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공중의 시위가 단지 무질서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의미한 공적 표현이 아니라고 치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공중의 시위 또한 청중에게 이해 및 납득을 호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표현의 방식이다. 오히려 공중의 시위는 공중이 종래의 결정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표명하고, 특권 집단의 시민들에게 소명 책임을 묻는 유효한 방식이다.⁵⁷⁾

종합하면, 일체성과 논리 주장의 형식을 우대하는 기존 심의 모델의 설명은 비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실제 가능한 심의의 장면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나아가, 이로 인해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포함되는 바람직한 심의의 장면을 적절히 제시 및 촉진할 수도 없다. 앞서 언급한 심의 모델의 규범적 이상들에 비추어 재서술하자면, 먼저, 살펴본 기존 심의 모델들의 측면들은 심의 과정을 배제적이고 불평등하게 만든다. 더해, 합당한 듣기와 말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논의는 참여자들에게 상이한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상호 주목과 경청을 촉구할 수 없다. 영은 특히 위와 같은 경향이, 소수자의 개별 특수한 체험에 대한 책임 있는 경청의 태도가 요청되는 구조적 부정의 속의 공론장에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이에, 영은 소통 방식의 확장과 심의의 전제 및 목표 등에 대

57)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영의 기존 심의 모델 비판은 논리 주장 우대하기, 일체성 우대하기, 면대면 토론을 전제하기, 질서 있음을 전제하기의 네 측면에서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화를 위해 앞의 두 측면에 집중해 논했다. 논의되지 않은 면대면 토론을 전제하기 측면의 비판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심의 모델은 심의가 참여자들이 서로를 직접 대면하는 공론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전제하(ID, 65)나, 현대의 현상을 더 잘 설명하며 나아가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은 심의를 시공간적으로 탈중심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재규명이 심의 과정이 그것의 규범적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공론의 모델 아래 종래 배제되어 있던 참여자들의 말하기가 시작되고, 나아가 이질성이 원활히 교류할 수 있다.

제 3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

상론했듯 영은 포용의 규범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본다(ID, 85). 영은 특히 의사결정 과정상의 내적 배제와 포용에 주목하고 있다. 영은 외적 배제와 내적 배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외적 배제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 개인과 집단이 토론과 의사결정의 포럼에서 빠지는 방식(ID, 88)”이다. 즉, 이는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의 접근 불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과정의 바깥에 남게 된다는 의미에서 외적 배제다.⁵⁸⁾

한편 내적 배제란 “사람들이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방식(ID, 91)”이다. 예컨대, 공론장 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몇몇 구성원들은 그들이 전제하는 그들의 경험과 가치관, 그에 기반해 제안하는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이 주로 택하는 표현 방식 등이 다른 지배적인 것들과 동일한 정도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영은 공적 심의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내적 배제 현상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에 주목하고자 한다.⁵⁹⁾ 영은 이를 통해 기존 심의 모델을 포용의 측면에서 더 정교화⁶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집단 의사소통의 이론적 모델이 공론의 개념과 공중의 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공론의 목표로서 합의의 양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 및 태도는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모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공론에서 내적 포용의 중요한 변인이다. 본 장에서는 각 지점에 대한 영의 아이디어에 대해 차례로 탐구한다.

58)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형식적 접근 가능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외적 배제에 관심을 두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둔다.

59) 영은 자신도 사람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민주적 과정에서 배제되는 외적 배제가 공론장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배제보다 정치적 평등의 가치를 더 크게 저해함을 인식하며 그녀 자신이 결코 내적 배제가 외적 배제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60) 영 역시 밝히고 있듯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은 기존 심의 모델에 대한 전면적 반박과 대체라기보다 아니라 확장과 정교화다(ID, 41).

제 1 절 공론의 상과 의사소통의 목표

1. 공론의 상(像)

고대의 공적 영역으로서 폴리스에서 사람들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오이코스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분리된, 인간다움에 근거한 윤리적 실천에 대해 함께 소통한다.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공적인 활동은 그 자체 인간다움, 자유의 실천으로서 단지 생존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적 활동보다 가치로운 것이었다. 근대에는 자의적 국가 권력에 자발적으로 결집해 대항하며 등장한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공적 영역의 핵심으로 기능한다. 시민사회에서 권리 담지자로서의 개인들은 권리의 수호를 위해 국가의 자의적 권력에 반발한다. 이들은 그 대신 그들 자신의 이성적 담론에 근거해 생성되는 공동 규범으로서의 법에 지배받고자 한다. 근대인들에게 공적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세운 인생 계획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의 수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종합하면, 공적 영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아래 소통하고 결정하는 영역으로, 이러한 공론장에는 원칙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받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법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론장의 의미는 법 공동체의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 규범으로서의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영역으로 구체화한다.

한편, 앞서 살폈듯 롤스는 공론장의 개념을 그 논의 주제, 주체와 공간을 통해 특정한다. 이는 공적 영역을 최대한 좁혀 공적 활동의 제한으로부터 각각의 합당한 포괄적 신념 아래 자유롭게 개인적 삶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행할 수 있는 개인들의 사적 활동을 보호하고자 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동 규범의 구성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논의 주제, 주체와 공간을 부당히 배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하버마스는 특정 논의의 주제, 주체와 공간을 통해 공론장을 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어떤 주제보다는 공적인 담론의 절차가 공론장을 규정한다. 하버마스의 논의는 여론이 형성되는 시민사회의 공

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공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모든 시민을,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시민사회와 의회를 포섭한다.

공론장을 이해하는 영의 기본 아이디어는 하버마스과 유사하다. 영은 공론장의 개념이 특정한 논의 주제, 주체, 공간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서 정리한 공론장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상기한다. 영은 공공성의 세 측면을 제시하며 공공성의 기본적인 의미를 구체화한다. 첫 번째 의미의 공공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토론장을 결정(ID, 273)한다. 즉, 구성원들은 공유된 관심을 갖고 공론장에서 만나며, 그러한 관심을 공유하고 따라서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 누구든 그곳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해,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결정에 있어 동등한 조건 아래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전제된다.

둘째로, 공공성은 이러한 공적 무대에서 시민 간의 관계성을 말한다(ID, 272). 공중은 복수적이며, 그들 중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공적 표현과 행위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른다(ID, 274). 시민들은 이러한 타자성, 통제 불가능성의 관계 아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관심사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즉, 개방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적 공간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즉 그 사회적 관점과 경험과 소속감이 우리 것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할(JPD, 264) 수 있다.

공공성의 세 번째 측면은 이 때 사람들이 취하는 공적 표현 또는 공적 행위의 형식을 말한다(ID, 274).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개별적 입장을 보다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을 빌려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알아듣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타인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타인의 권리와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모종의 비(非)사적인 이익을 지향하며⁶¹⁾ 그들의 입장을 표현한다.

61) 이는 다음과 같은 킴리카의 설명과도 밀접하다. 이에 따르면, 공사의 구분은 두 개의 물리적 영역의 구분이라기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과 책임 사이의 구분이다. 사적으로 행동할 때와 달리, 공적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국, 영의 논의에서 공론장의 개념은 모든 당사자가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 규범을 구성하는 영역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자는 공론장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며, 공론에 있어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다. 공론과 사론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특정한 주제, 주체나 공간이 아니라 상호 이해 및 납득 가능하게 말하며 결국 모종의 합의를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논의의 형식이다. 영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관련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동도, 인간 삶의 그 어떤 측면도, 그 어떤 사회 제도나 사회적 실천도 비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라고 인식되며 공적인 논의와 표현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라고 선형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JPD, 265). 어떤 사안에 있어 공사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는 그 자체부터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어지는 공론장에 대한 영의 추가 논의는 공론의 주된 주제, 공론장의 주체와 공간,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구체화한다. 공론은 기본적인 국가 구성 원칙의 설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의 개선을 주된 주제로 이루어진다. 영은 공론을 의회와 시민 사회의 전역에 걸쳐 상시 일어나는 것으로 바라보며 특히 부정의의 문제화에 대한 시민사회 공론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상이한 입장을 직접적 소통의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

앞서 잠깐 논했듯 영이 주목하는 공론장은 공동의 규범과 제도의 재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공론의 주된 주제로 삼는다. 영은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이 정의 원칙이나 헌법을 구성하는 국가 구성적 결정보다 훨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임을 밝힌다. 결국 “정치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결과는 사실상 어떤 정의의 어떤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집합체가 채택해야 하는 행위와 정책에 관한 특정하고 구체적인 판단(ID, 41)”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공론의 모델은 근본 규범적 사안에 대한 논의에 관해 주로 논하는 기존 심의 모델과는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정

권리와 모순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로 논의- 하며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도 한다(Kymlicka, 2002/2018; pp. 609-10).

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상이한 지위와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이 주목하는 공적 논의의 장은 시민사회와 의회다. 먼저, 영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이 공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자발적 결사로 파악한다. 영은 공론에 있어 이러한 시민사회가 집단의 자기조직과 공적 소통을 돕는다고 본다. 시민사회에서는 먼저, 주변화된 사람들이 친연적 자기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배적 정치 담론에서 전달될 수 없는 경험과 인식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어를 발전시킨다(ID, 254). 더해, 시민사회의 공적 소통 기능은 “국가나 각종 법인의 정책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개선하고자 목표(같은 곳)” 하는 것이다. 영은 이렇듯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시민사회를 포섭하는 것이 첫째로는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닌 시공간적으로 분산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공적 논의를 이해함을, 둘째로는 보다 중요하게 민주적 소통의 형식을 확장적으로 이해함을 함의한다고 덧붙인다.

공적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구조적 부정을 당면하고 있는 이질적 시민됨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도 논했듯, 시민들이 구조적 부정의 속에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제도적 관계 속에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은 자기 발전 및 자기 결정에 있어 특권을 갖는 한편, 다른 집단 또는 개인은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구조적 부정의 아래 있다는 사실은 먼저 참여자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장 안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린다. 공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부정적하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공론장 안팎에서 사회경제적 부정의 아래 있다는 사실과 공론장 내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권력상의 부정의 아래 있다는 상호 연결된 두 사실을 함께 의미한다. 특히, 공론장의 일상적인 규범과 제도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된 집단은 말할 수 있는 심리, 기대어 말할 수 있는 담론,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 영에 따르면

심의 모델은 이러한 내적 배제의 현상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질적 공중의 상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했으므로 간략히 정리한다. 시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집단에 친연성을 갖는지에 따라 상이한 경험과 이해⁶²⁾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집단들이 구조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아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질성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는 그들이 겪는 경험과 그들의 자기 결정 및 자기 발전 권한을 조건화한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소거할 수 없다. 영에게 참여자들의 개별 특수한 입장은 공적 논의에 있어 소거되어야 할 방해물이 아니라, 소거할 수 없이 응답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혜를 증대하는 자원이다. 결국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공중은 상이한 입장을 지닌 이들로 파악되며, 각각의 상이한 입장을 적절히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사소통의 목표

많은 심의 민주주의자들에게 공적 토론의 주제는 모종의 공동선(common good)이다(ID, 59). 이때 공동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국한된 관심사나 이익을 한 단계 넘어선(박효중, 2017, p.692)” 것이라는 의미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기존 심의 모델과 영 모두 기본적으로는 공동선을 “개인적 선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의 총체(the ensemble of conditions for individual goods)(Honohan, 2002, p. 151, 조일수, 2011, p. 307에서 재인용)⁶³⁾”의 의미로 이해한다고 볼 수

62) 본고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상이한 경험, 권력, 이해관계 등을 ‘입장’으로 종합했다.

63) 호노한(I. Honohan)의 구분을 참고했다. 호노한은 공동선(the common good)의 의미가 크게 네 갈래로 이해되어 왔다고 정리한다(Honohan, 2002, p. 151, 조일수, 2011, p. 307에서 재인용). 첫째, 개인적 선들의 총합(the aggregate of individual goods)이다. 둘째로, 공동선을 한 사회 집단의 집합적 선(the corporate good of a social gro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공동선은 개인적 선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의 총체(the ensemble of conditions for individual goods)로 이해 가능하다. 넷째로, 공동선은 사회 또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각 개인에게 좋은 것(what is good for each persons as a member of a society or group)으로 이해된다.

있다. 이들 모두에서 공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선들이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의 정의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적인 공론의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바탕으로 논의에 임(해야)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있어 기존 심의 모델과 영의 모델은 차이를 보인다. 개별적 공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선에 대해, 기존 심의 모델의 경우 모두가 공유하는, 따라서 모두가 존중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이해하는 한편, 영은 개별적 입장에 기반한 입장 표명으로 접근되지만, 결국 다른 이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이해한다(JPD, 239).

두 모델의 이러한 차이는 각 모델이 이해하고 있는 공론의 개념과 공중의 상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이미 살펴보았듯 기존 심의 모델이 주목하고 있는 공론장은 동질적 공중이 정의의 원칙 또는 헌법과 같은 국가 구성의 기본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장이다. 다른 한편, 영이 주목하고 있는 공론장은 이질적 공중이 구체적인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장이다.⁶⁴⁾

기존 심의 모델에서와 달리 영의 공론장에서는 논의 주제의 제기도, 주제에 대한 개별 입장의 발화도, 논의의 결론 도출도 결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에 근거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구체적인 억압의 사례에 대한 법률 또는 제도의 재구성을 목적하는 공론을 가정하자. 단적으로 해당 공론에서 피억압 집단의 경험과 그들이 옹호하는 이익은 억압 집단의 경험 그리고 이익과 공유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억압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억압 집단을 비롯한 각 당사자들의 개별 특수한 경험과 이익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영의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은

64) 혹자는 영이 기존 심의 모델에 대해, 그것이 국가 구성의 기본 원칙 수립을 위한 공론장에서는 적합하지만 ‘구체적인 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장’에 한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이질성에 대한 영의 논지를 일관되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설령 ‘국가 구성의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공론장’ 안에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발견할 수는 없다.

개별 특수한 입장을 초월해 말하기보다 그에 기반하여 말한다. 공론의 말미에 기대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과정 역시, 공동 추론을 바탕으로 한 공동선예의 도달이라기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양한 이익들의 조정으로 이해된다. 결국, 공론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개별 특수한 입장을 초월해 발견하는 하나의 공동 이익이라기보다 참여자들이 개별 특수한 입장을 민주적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문제의 잠정적 해결이다.

영의 공론장에서는 개별 공론의 마무리로 논의되는 합의의 의미 역시 기존 심의 모델에서와 달라진다. 기존 심의 모델에서 공론의 마무리는 공동 이익에 근거한 만장일치의 합의(consensus)로 묘사되는 한편, 영에게는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로 파악된다. 개별 구체적인 문제 사안에 있어 이들이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이 설령 모종의 의견 수렴에 이른다고 해도 채택된 대안이 앞으로의 상황 변화와 재개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⁶⁵⁾

마지막으로 영이 공동선과 의견 일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핀다. 첫째로, 영은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선을 인정하지 않고도 구성원들은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성원들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그들이 공동 이익에 도달한다는 의식 없이도 정치적 과정에 참여해 협력적으로 구조적 부정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은 공동 이익을 포기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결코 정치적 과정을 사적 이익 간의 배타적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영이 심의의 과정을 상이한 입장의 교환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인 협력(ID, 176)으로 묘사한다. 정치적 협력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65) 킴리카는 심의 민주주의 담론 전반에서 의견 일치(consensus)가 심의의 실질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루어진 논쟁을 요약한다. 먼저, 하버마스에게 영향을 받은 일부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참여자들이 심의를 의견 일치로 이끌 수 있으며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적 심의를 통해 일반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가장 탁월한 논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과 프레이저와 같은 다른 이론가들은 의견 일치를 옹호하는 진영의 생각보다 심의 참여자들의 불일치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의견 일치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한다. 킴리카는 최근 대부분의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의견 일치의 가능성과 그를 이상적으로 목표하는 것의 정당성에 있어 회의적이라고 정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것맨과 톰슨(1996)은 수렴된 대안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고 타협하는 것과 관련된 시민 덕성을 배양할 필요 역시 있다고 본다(Kymlica, 2002/2018, pp. 463-4).

그들이 같은 지리적,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행위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영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의식과 구조적 부정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식 등과 결합해 정치적 협력에 필요한 연대 의식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공론에 참여하고, 그러한 연대 의식은 다시 적절한 공론의 과정을 통해 강화한다.

둘째로, 영의 논의는 궁극적인 의견의 일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도 응답하고 있다. 먼저, 결국 의견의 완전한 일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심의의 과정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논했듯 심의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분명 공적인 측면으로의 관점 전환, 논의 주제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극복, 시민적 연대의 강화와 같은 열매를 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의를 통한 의견 일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단순한 낙관 역시 부적절하다. 앞선 영의 논의에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한 만장일치의 합의 추구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부정을 낳는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의견 일치라는 허울을 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은 당장 조금은 덜 안정적이더라도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유의하게 반영하는 정의로운 정치적 과정을 이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제 2 절 의사소통의 방법과 태도

1.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

포용은 사회적 차별성과 괴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다르게 위치지어진 집단들에게 합당함과 공공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 이익, 사회적 퍼스펙티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더 두터운 [내적] 포용의 의미는 민주적 토론에서 소통의 다양한 양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ID, 189).

영은 공적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적 이해가 심의의 장면을 더 잘 설명하고, 그것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규

범적 측면에서, 영은 폭넓은 방식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첫째로, 특정 표현 형식만을 우대하는 공론장이 배제하는 참여자들의 발화를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 합리적 논리 주장만을 우대하는 공론장의 풍토는 그에 능하지 않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말하기를 위축시킨다. 이에, 여러 표현 형식의 허용은 기존보다 많은 목소리를 공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로, 확장적인 공적 논의는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 입장 표명의 전제 자체가 상이한 구성원은 논리 주장의 형식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러티브와 같은 표현 양식은 입장표명의 상이한 전제를 상호 설명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은 참여자 간 존중과 신뢰 관계 형성을 돕는다. 공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공중으로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료로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다. 적절한 인사와 말하기 형식에 대한 확장적인 고려는 참여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의사결정 결과의 수용과 그에 기반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영에 의하면 입장표명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이성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 및 육체적 측면에 주목하려는 시도는 참여자들이 공론의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영이 논리 주장과 함께 중요한 공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호감 인사(greeting), 레토릭(rhetoric), 내러티브(narrative) 각각의 개념과 구체적인 정치적 기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호감 인사와 레토릭

(1) 호감 인사, 즉 공적 인정의 표현

영은 호감 인사가 참여자들의 명시적인 상호 인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적 소통 과정에서의 실질적 포용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호감 인사는 기본적으로 공적 소통의 시작과 마무리를 비롯한 과정 전반에서 “어떤 주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ID,

87)”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평등한 정치적 결정권과 특수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따라서 서로에게 경청과 설명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인정(acknowledgement)의 명시적인 표현으로서 호감 인사는 기본적인 인사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호의와 존중의 표현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호감 인사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영의 아이디어는 레비나스의 이론과 일상생활에서 호감 인사가 갖는 규범적 함의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에서 레비나스는 주체와 주체의 인정 과정으로서 소통의 한 측면을 말함(saying)으로, 주체 간의 내용을 표현하는 또 다른 측면의 소통을 말해진 것(the said)로 구분한다(ID, 94). 이때, 말함은 구체적인 두 주체의 존재와 둘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삿말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체는 구체적인 타자의 나타남, 그리고 타자의 요구를 떠맡을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한다. 레비나스에게 말함은 두 존재가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내용의 대화를 교류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일상의 맥락에서 역시 폭넓은 형태의 호감 인사는 대개 인사를 나누는 서로의 존재와 그 특정성(particularity), 서로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관계에 맞는 책임 이행의 필요성의 인정을 포함한다.

영은 이와 같은 윤리 이론, 일상 맥락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공론에서 호감 인사의 정치적 기능에 대해 논한다. 공적인 맥락에서 호감 인사는 공적 연설 속 연사와 주최 측의 인사, 공적 토론에서 입론 전 상대 집단에 대한 호의 표시, 외교의 장면에서 상대국에 대한 예우 표시 등 의례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영에 따르면, 호감 인사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정치적 과정에 포함된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함을 표현한다. 특히 이는 “모든 합당한 인격체에 대한 일반적 호소”의 형태가 아닌 구체적인 상대의 특정성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한다(ID, 98). 나아가, 따라서 호감 인사를 통해 참여자들은 상대 입장에 대한 경청과 설명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적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 관계를 정립 및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적 인정은 모든 참여자가 공적 논의에 유의하게 포함되어 논의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 영에 따르면, 적절한 호감 인사의 활용은 바람직하게 정착된 논의의 규범, 충분한 참여자들의 시민 역량 등과 함께 공론장에서의 공적 인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영은 호감 인사의 활용을 암묵적이고 느슨하게라도 규범화하는 것이,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공적 인정과 그를 바탕으로 한 존중 및 신뢰 관계를 정립 및 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2) 레토릭의 건설적 사용

레토릭이란 “말하기의 내용과 구분되는 말하기의 방식으로, 담론의 내용에 색을 입히고 조건화하는 다양한 방식(ID, 103)”이다. 대표적으로, 레토릭은 첫째, 감정적 어조(tone)를 포함한다. 모든 말하기는 모종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자주 어조로 드러난다. 영은 흔히 ‘감정적이지 않다’고 묘사되는 말하기마저 실상 차분하고 냉담한 감정적 어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ID, 103) 부연한다. 둘째, 레토릭은 다양한 표현법을 포함한다. 다양한 형태의 비유, 강조, 농담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레토릭은 말하기 외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포함한다. 영은 시각 영상, 팻말과 현수막, 거리 시위, 거리 공연 등을 예시한다. 영의 논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지역 언어나 방언의 사용도 이러한 레토릭의 측면들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레토릭은 정서적·육체적·개별 특수한 방식과 같은 입장표명의 형식적 측면을 의미한다.

먼저 영은 공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레토릭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레토릭이 모든 공적 입장표명의 분명한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영은 레토릭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입장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한다. 심지어, 종종 입장표명의 의미는 표현의 방식에 의해 달리 구성되기도 한다. 입장표명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 설령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같더라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 이래로 서구 철학의 한 계통은, 레토릭이라는 불순물이 정제된 합리적 담론의 방식을 이론화해왔다(ID, 104)”고 지적한다. 영에 의하면, 레토릭을 활용한 전략적 설득에 대한

거부가 레토릭을 배제한 합리적 입장표명의 방식에 대한 옹호로 나타난다. 예컨대 보만과 영은 발화효과행위에 주목하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하버마스의 경계가 발화효과행위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토릭에 대한 그의 거부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를 비롯해 기존 심의 이론가들은 발화의 정서, 육체, 개별 특수한 측면인 레토릭의 요소를 배제한 중립적 말하기를 이상적인 공적 표현의 방식으로 우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영은 이러한 접근을 거부한다. 첫째, 이러한 접근은 모든 발화 행위가 레토릭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종의 발화효과행위를 목적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단적으로, 기존 심의 이론에서 옹호되는 담담하고 표준적인 어조의 논증 위주 말하기 역시 특정한 레토릭과 발화 목적을 포함한 말하기다. 결국, 기존 접근의 ‘레토릭을 정제한 중립적 말하기’의 이상은 허황된 것이다. 둘째, 지적인 접근은 ‘합리적 말하기’와 다른 형식을 갖는 말하기를 부당하게 배제한다. 어떤 발화가 단지 그것이 이성적이고 표준적인 형식이라고 해서 우대되는 한편, 다른 어떤 발화는 단지 그것이 과도하게 정서적이거나 비표준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묵살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은 포용적인 의사소통의 상은 레토릭이 표현의 중요한 한 측면임을 염두에 두고 그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레토릭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레토릭을 통해 말하기 형식에 근거한 기존의 부당한 배제가 고발되고 나아가 더 다양한 말하기 형식에 대한 정당한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영은 레토릭이 수행하는 고유한 정치적 기능이 있음을 밝히며 보다 적극적으로 레토릭의 건설적 활용을 제안한다. 영에 따르면 레토릭이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은 크게 다음의 셋이다. 첫째, “레토릭적 감동은 심의 의제를 이슈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ID, 106)”. 포용적인 정치적 과정은 구성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공적 논의의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한편, 많은 공론의 의제가 기득권 집단의 관심만을 치우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레토릭의 활용은 부당하게 주변화된 공적 관심 사안을 이슈화 및 의제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⁶⁶⁾ 특히, 감정

66) 혐오 표현에 맞대항함으로써 혐오를 무력화 및 고립시키고자 하는 ‘대항 표

적 어조나 풍자 및 비유와 같은 표현법 등의 활용은 만약 그것이 고상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었다면 결코 들리지 않았을 중요한 소수자들의 관심과 입장을 수면 위로 떠올린다. 둘째, “레토릭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공중에게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요구와 논리 주장을 표현한다(ID, 107)”. 앞서 공공성이라는 심의의 기본 규범에서도 살핀 바 있듯, 공적 발화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현실의 개별 공론은 그 주제와 주요 참여자들에 있어 특수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맥락의 공적 발화는 레토릭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특정한 청자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화자는 그가 마주하고 있는 청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영, 그들에게 친밀한 형식으로 그의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청중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농담, 비유, 그들에게 친숙한 어투와 관용구(ID, 108)”가 활용될 수 있다. 셋째로, “레토릭은 이성(reason)에서 판단(judgement)으로의 움직임에 동기를 부여한다(ID, 109)”. 다른 정치적 기능과 비교해 ‘포용’의 규범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는 레토릭이 수행하는 분명한 기능이다. 영은 공적 논의가 단지 좋은 논증의 집합 마련이 아닌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판단과 실천을 목표함을 상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토릭은 입장표명의

현’의 맥락에서 한국 여성들의 여성 혐오 ‘미러링’을 해석한 홍성수(2018)의 논의는 이와 유관하다. 기존의 여성 혐오 표현을 따라 남성들을 지칭하는 몇몇 미러링 표현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왜 여성들은 공정한 논의와 토론이 아닌 혐오와 공격으로 여성 혐오에 맞서야만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논의와 토론은 해당 논의 주제가 공론장에 떠오른 후에야, 각 논의 주체가 동등한 지위와 발언권을 가진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책에서 홍성수는 혐오와 차별의 표적으로서의 한국 여성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결코 남성과 동등한 힘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누군가 자신을 혐오 표현으로 비하하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유로 폭력 및 살해가 자행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는 어떤 공정하고 유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혐오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대항 전략이 미러링 밖엔 없었다고는 분명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로서 여성들의 선택지는 매우 좁았으며, 그곳에 공정한 협상과 논의, 토론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러링은 논의와 토론에 대한 가능성 확보를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이곳에 여성 혐오라는 논의의 주제가 있음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공정한 협상과 논의 이전에 주체로서 서야 했다는 것이다(홍성수, 2018, 2장).

내용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다시 말해, 맥락을 반영하고 정서적이며 효과적인 표현법을 활용한 발화는 공론의 참여자들을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논의, 결정 결과에 대한 수용과 실천으로 이끈다.

2) 내러티브와 논리주장

(1) 내러티브의 활용

내러티브는 개인 자신 또는 내집단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가치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야기하기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단, 정치적 내러티브는 정치 토론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영은 공적 논의에서 이러한 내러티브의 활용이 입장 표명에 있어 서로 이질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다고 말한다. 영에 따르면, 공중이 어떤 문제에 대해 논리 주장만을 통해 논의에 임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은 논의에 앞서 전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추론의 전제는 논의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입장 표명과 추론의 양식, 무엇이 마땅한가에 대한 규범의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ID, 112). 그러나 현실의 공중은 이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영은 참여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고유한 경험과 가치관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상이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내러티브 고유의 정치적 기능은 영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내러티브는 공론장의 지배적 담론 아래 표현될 수 없는 입장의 표현을 돕는다. 구조적 부정의로 인한 어떤 고통은 기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담론 속에서는 적절히 표현될 수 없다.⁶⁷⁾ 영에 따르면,

67) 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필요, 이익, 부정의에 대한 고통은 작동되는 전제와 틀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리오타르의 쟁론(differend) 개념을 인용한다(ID, 55). 리오타르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겪는 부당함이 다른 한쪽 당사자의 관용구 체계 속에서 표출되지 않을 때 둘 사이에 쟁론이 발생한다(ID, 56). 스피박 역시 쟁론의 개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논한다. 김애령(2020)이 정리한 바, 식민지 인도 여성의 과부 희생(sati) 관련 말하기 아래 그들의 의사는 기존 담론 체계에 의해 구속된다. 공적 말하기가 시민 일반이 이해하도록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를 위해 발화자는 이해 및 납득될 수 있는 발화를 위해 기존의 담론 체

구조적 부정의 아래 발생하는 부당한 고통은 많은 경우 이야기됨으로써 비로소 공적인 문제로 명명되고 숙고되기 시작한다. 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공적 문제로 명명 및 인식된 것이 여성들이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예시한다. 여성들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더 많은 공중에 건넌으로써 성적 괴롭힘은 공적 문제로서 이름을 얻고 공론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에 기대어 성적 괴롭힘을 부정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법적 담론 역시 발전했다(ID, 114).

둘째, 내러티브는 사회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친연성과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먼저, 이야기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확인하며 친연성을 다지는 기반을 제공한다. 더해, 구성원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겪은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어떤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ID, 114).

셋째, 영은 많은 경우 스토리 텔링이 특별한 위치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종래의 제도적 관계가 몇몇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을 부당하게 저해한다는 사실은 해당 측면에서 제도적 관계가 재구성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됨을 통해서 비로소 또는 효과적으로 공론장에 밝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동권을 적절히 보장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더해, 유사한 맥락에서 영은 내러티브가 공중이 그들 간의 이질성을 인식하고 상호

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과부희생을 둘러싼 담론 체계는 다음의 둘이었다. 첫째로 영국 제국 주의자들에 의해 옹호된 피해자 주의에 근거한 과부희생 폐지의 정당성 주장, 둘째로 인도 토착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옹호된 영웅주의에 근거한 여성의 선택권 옹호 주장. 이와 같이 이미 조성된 담론의 큰 틀 아래 당사자들의 언어는 특정한 맥락과 의미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들 중 어떤 담론 체계를 선택해 말하건 여성 당사자 개인의 경험과 의사는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 두 담론 체계는 기본적으로 양 측의 지배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애령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을 포획하고 이 여성들을 ‘순결한 민족의 딸들’로 호명했던 가부장적 민족주의 담론, 성판매 여성들의 경험을 포획했던 ‘피해자 대 자발적 성노동자’ 프레임 등과도 유사(김애령, 2020, p. 144)하다고 논한다.

이질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도 말한다. 스토리 텔링의 사건은 공중이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이해를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내러티브는 특정 집단이 그들 주장의 의미와 가치가 근거하는 원천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어떤 집단의 문화적 관행, 그 아래 어떤 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그들이 제기하는 공적 주장의 중요한 전제 또는 근거다. 이 때, 집단은 예컨대 고유한 신화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들 주장의 문화적 원천을 공중에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영은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통해 그들에게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토지의 개발을 반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은 이러한 설명은 보편화 가능한 논리 주장이 아니라, “차이 나는 사회 집단들이 가질 수 있는 상이한 규범적인 출발점(ID, 117)”을 이야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다섯째, 내러티브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사회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내러티브의 적절한 사용이 촉진되는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은 공론의 주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에서 구체적 경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제도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이야기한다. 영은 이렇듯 상이한 시점에서 나온 내러티브의 종합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지혜를 생성한다고 말한다.⁶⁸⁾ 종합은 이야기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한 잘못된 이해의 교정, 보다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검토하려는 관점 이동 등을 포함함으로써 공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 지식을 더욱 향상한다.

(2) 논리 주장

합리적 논리 주장은 기존 심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의 공론장에서 역시 공적 논의의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영이 제시하는 다양한 공적 표현의 양식들이 기존 심의 모델에서 옹호되던 합리적 논증을 ‘대

68) 영은 경찰의 가학행위 남용에 대한 피츠버그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 이야기하기가 관련된 시민 심사 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시민 요구의 형성 과정에 중요하게 기여(ID, 119)한 사실을 예로 든다.

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ID, 92; ID, 122). 영은 논리 주장을 통한 주장의 타당성 주장과 검토가 공론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인정한다. 동시에 그녀는 호감 인사, 레토릭, 내러티브의 요소를 함께 인정하는 심의 이론이 논리 주장만을 공적 표현의 형식으로 인정하는 심의 이론을 기술적·규범적으로 ‘보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호감 인사의 표현 요소는 논리 주장에 선행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인식 및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논리 주장에 귀 기울이게 한다. 표현의 형식적 요소로서 레토릭은 논리 주장과 동반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경청될 수 있도록 한다. 내러티브의 경우, 논리 주장과 병행되며 “논리 주장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공유된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차이를 가로지르는 이해를 가능하게(ID, 122)” 하거나 자체로 입장표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한다.

2. 참여자의 태도

이상에 따르면,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는 이질적 공중의 상 아래 포용적 의사소통의 목표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민주적 수용, 포용적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양한 확장적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영은 이러한 규범과 절차로 꾸려진 의사소통의 장 아래 우리는 종래 배제되었던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될 것을, 결국 각각의 상이한 입장들이 상호 만나며 보다 포용적이고 지혜로운 협력적 결정에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참여자들이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을 갖고 보다 섬세하게 말하고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포용적 의사소통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참여자들이 포용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⁶⁹⁾를 갖고 있지 않다면 포용적 의사소통의 기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

69) 본고에서는 어떤 가치에의 지향, 그리고 행위의 지속적인 산출로서의 태도를 아울러 태도라고 논했다. 논의되는 ‘태도’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두 기본적으로 특정 가치에의 지향 아래 지니는 지속적인 행위 산출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영의 이론에서 지향되는 공론 참여자들의 태도를, 구조적 부정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가치를 지향하며 공적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섬세하게 말하고 듣고자 함으로 정리하였다.

다. 한편,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영의 논의는 분명 그 초점을 위와 같은 의사소통의 절차 및 규범 디자인에 두고 있다. 즉,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의 질문에 대해 영은 충분히 주목하거나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분명하게 응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포용과 민주주의』 중 심의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으로서 공공성과 합당성에 대한 논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중 공론에 임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책임 논의에서 질문에 대한 영의 아이디어가 분명히 드러난다. 본 절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용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참여자 태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영이 이야기하는 공적 능력과 그것이 잘 발휘되는 상태로서 합당성의 자세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책임 지향의 태도에 대해 차례로 살핀다.

1) 합당성(reasonableness)

합당성에 대한 영의 이해를 살핀 후, 기존 심의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영의 모델에서 합당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논한다. 앞서 간단히 살폈듯 영은 합당함을 일차적으로 토론의 참여자들이 지닌 마음 자세(disposition)로 이해한다. 합당한 마음 자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왜 우리의 생각이 틀렸는지 혹은 부적절한지를 설명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듣고자 하는 그들의 용의(willingness)다(ID, 38).” 나아가, 그를 통해 우리의 의견 또는 선호를 변화시킬 용의다. 이를 위해 합당한 마음 자세는 “어떤 규범이나 신념, 자신의 이익 등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대를 경청할 수 있고, 상대를 존중하며, 질문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대를 즉각 판단하려 하지 않는 마음가짐(ID, 39)” 을 포함한다. 더해, “합당한 사람들은 의견 일치(agreement)를 지향하며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에 임한다(ID, 38)”. 모종의 의견 일치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신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상호 설득하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우선 합당성은 개인적 입장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자 하며 의견 일치를 지향하는 용의다.

한편, 책의 다른 부분에서 영은 합당성이라는 말로 그녀가 본래 공공

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마음 자세를 함께 가리킨다.⁷⁰⁾ 역시 공론 참여자들에게 요청되는 마음 자세로서 공공성(publicity)이란, “자신만의 특별한 배경의 경험, 이익 혹은 제안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ID, 39)”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보여(같은 곳)” 주고자 하는 자세다. 정리하자면, 공공성은 자신의 입장을 이질적인 타인들 일반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는 용의다. 종합하면, 공공성의 의미를 포함한 합당성은 상대방의 입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를 목적으로 하며 표현하려는 자세다.

롤스에서도 합당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에서와 유사하게 설명된다. 롤스는 정치적 인간의 두 도덕적 능력으로 합리성과 합당성을 제시한다. 스스로의 가치관의 수립 및 실현과 관련된 합리적 사고 능력인 합리성과 달리 합당성은 공적이다. 즉, 우리가 동등한 자로서 타인들과 함께 공적 세계에 진입해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마련할 때 합당성이 발휘된다(장동진, 2012, p. 37). 합당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로, 합당한 사람들은 평등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협동을 위한 공정한 조건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 조건을 준수한다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들 역시 준수한다. 둘째로, 합당한 사람들은 판단의 부담⁷¹⁾을 인식하고, 공적 이성 사용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Rawls, 1993/2016, p. 637).

두 이론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은 비(非)사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다

70) 예컨대 다음의 부분에서다. “토론에서의 합당함은 타인을 경청하며, 타인이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개방적이며, 타인의 동의나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ID, 57).” “시민이 합당하다는 것은 본인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주장의 정당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ID, 70).”

71) 판단의 부담이란 이렇듯 합당한 개인들 사이 불일치의 원천들을 일컫는다. 예컨대 경험적인 증거 평가의 어려움, 적실성의 비중에 따른 판단의 상이함, 개념의 불확정성, 시민들 각자의 경험의 차이 등이 있다.

른 시민들과 공유된 관심사에 대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당한 절차의 상호 논의를 통해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능력을 -공적 이성 또는- 공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태도로써 합당성이란 개별 시민이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 상태다. 거칠게 종합하면, 시민들의 능력으로서 합당성은 기본적으로 공적 능력을 바탕으로 입장의 상호 제안, 이해, 수용을 통해 타당한 공동의 규범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존 심의 모델⁷²⁾에서 공론에 임하는 시민들의 능력으로서 합당성은 결국 불편 부당한 관점에서 타당한 논증 교환을 통해 공동 이익에 근거한 보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합당성은 기본적으로 유효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이해 및 납득될 수 있는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이 제시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편, 영의 모델에서, 합당성의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 특수한 관점을 바탕으로, 타인들이 이해 및 납득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이질성을 헤아리려는 섬세한 수용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민주적인 수용에 이를 수 있는 복합적 역량으로 이해된다. 앞선 논의를 정리해보았을 때, 영에게 공적 능력은 시민들이 함께 맞닥뜨리는 -주로 구조적 부정의- 구체적인 문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적 논의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이는 결코 이성의 능력-을 포함하지만-에 국한하지 않는다. 영에게 합당한 시민들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상호 알아듣고 납득하도록 말하고, 열린 자세 아래 그를 경청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안된 입장들은 적절한 논의와 의사결정의 절차를 통해 한 지점으로 수용된다. 합당성에 대한 영의 이해에서 기존 모델과 구분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이 공적인 말하기보다는 섬세한 듣기의

72) 영은 그녀 자신과 기존 심의 모델의 합당성 이해를 -그 구분 기준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한다. 서장에서 기존 심의 모델의 한계를 그들이 “정치적 의사소통 논의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합당함이라는 의미를 편협하거나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ID, 10)” 고 정리한다.

측면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합당성이 이성의 능력으로 협소하게 설명된다기보다 그를 포함해 발휘되는 복합적인 역량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따라서 그리고 나아가 합당한 말하기와 듣기는 이성적 논증 교환보다 폭넓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2) 소명과 경청에 대한 정치적 책임

왜 참여자들은 공론장에서 이질적인 타인들을 경청하고 또 나의 입장을 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영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공론장이 단지 공정한 협력의 기본 구조를 모색하는 공론장이 아니라, 고발된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해당 질문에는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모종의 협력 체계로서 정의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들은 왜 구조적 부정의 문제에 대한 공론에 참여해 앞서 제시된 포용적인 공론을 도모해야 하는가? 의 질문이 영의 논의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다.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에서 드러난 응답을 살펴보기에 앞서, 왜 우리는 연대하여 정치적 협력에 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영의 기본적인 생각을 살핀다. 이는 포용적인 정치적 공론장에 대한 영의 고민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은 공론장의 시민들이 모종의 차별화된 연대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모종의 상호적 동일성과 친연성의 감각을 전제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영은 이와 같은 일체성 기반의 연대 이해를 거부한다. 앞서 잠시 살폈듯, 영은 연대를 우리가 현재 더불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영은 이것이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넘어, 상호 잠재적인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는 말임을 밝힌다. “사람들의 일상활동은 어떤 사람들의 행위와 그 결과가 많은 다른 사람들 -이들이 알지 못하고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인과적으로 이들을 관련짓는 제도적 관계의 조밀한 관계망을 전제한다(ID, 354)”. 특히 그들 지역의 법과 제도는 그들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전 지구적 수준의 복합적인 인과적 연결 아래 우리는 매우 넓은 정의의 의무 범위⁷³⁾를 갖는다는 사실을 논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과적 관계 아래의 개인들은 부정의를 약화하고 정의의 관계를 이끌기 위해 바람직한 제도를 구성하고자 해야 한다. 종합하면, 영의 연대는 동일한 제도적 과정 속에서 부정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입장을 함께하기로 한 이질적인 시민들 사이의 관계다.

인과적·제도적 연결성, 그리고 그 아래 갖는 정의로운 사회 제도 구성의 의무에 대한 영의 아이디어는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에서 보다 구체화한다.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책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의 질문이 책의 논의를 관통한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이 책임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종래의 법적 책임 모델에 의해 설명되기에는 개념적, 실용적 측면의 한계가 있다고 논한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⁷⁴⁾ 정치적 책임

73) 영은 “사람들이 타인의 구체적인 행위능력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전제로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정의의 의무를 갖는다(ID, 355)” 는 오닐(O. O’Neill)의 주장을 인용한다.

74) 영이 구조적 부정의의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 모델에 근거한 이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영은 분명히 자신이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법적 책임 모델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법적 책임 모델이 모든 맥락에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J, 183)고 밝힌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은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서도 법적 책임 모델 아래 죄를 묻는 관행이 적절할 수 있음(RJ, 204)을 인정한다. 예컨대, 특정 정부 관료의 특정한 의도나 심사숙고 없음이 인과적으로 구조적 부정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모델에 근거한 비난은 적절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제와 관행에 따라, 부정의를 의도하지 않고, 행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산 및 재생산되는(RJ, 182) 구조적 부정의의 본질 상 이러한 접근은 그에 대한 해명에 있어 불충분하다. 영은 자신의 행위가 구조적 부정의를 야기하리라는 데 무지하고, 구조적 부정의의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구조적 부정의를 야기하는 데 기여한 수많은 행위자들에게, 집단적 협력을 통해 구조적 과정을 개선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에 대한 사회적 연결 모델 아래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고 또 실용적이라고 말한다.

책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로서 법적 책임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1) 행위자들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실제 해악을 야기했는지, (2)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3)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행위했는지를 통해 해악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RJ, 179). (4) 더해, 이때의 해악은 주로 정상적인 구조하의 개인적 일탈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은 이러한 모델은 구조적 부정의라는 해악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고 비실용적이다. 법적 책임 모델에 근거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해는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념화이며, 그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촉구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법적 책임 모델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는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영에 따르면 부정의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제와 관행에 따라 행위하는 수많은 사람에 의해 생산 및 재생산된다(RJ, 182). 다시 말해, 구조적 부정의는 (1) 선형의 분명한 인과적 해명이 불가하며 (2) 행위 결과에 대해 비자발적이고 (3) 무지한 수많은 행위자들이 -간접적으로, 잠재적으로- 기여한 (4) 구조적 과정의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사태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법적 책임 모델에 기반해 응답하려는 시도는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자들의 책임을 적절히 해명해 낼 수 없다.

더해, 법적 책임 모델에 근거한 정치적 책임의 해명은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은 그에 기여한 수많은 행위자들이 집단적 협력을 통해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해명과 비난의 시도는 구조적 부정의의 책임자를 특정해 죄를 씌울 것을 요구한다. 영은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구조에 대한 협력적 성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방어와 책임 전가⁷⁵⁾에 주력하게 된다고 본다. 설령 누군가 책

75)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영의 구체적 언급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물화로, “부정이가 생산되는 과정을 마치 자연적인 힘처럼 불가피하고 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RJ, 23)” 이다. 두 번

임을 전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 모델은 개인의 일탈에 주목하므로, 그로 하여금, 구조적 과정에 대한 집단적 성찰이 아닌 개인의 성품, 행동에의 성찰에 대한 개인적 성찰에 그치도록 한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를 바라볼 때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이 적절하고 또 실용적이라고 말한다.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일부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이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RJ, 177)” 고 말한다. 따라서 “구조적 부정의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위 결과를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조적 과정을 변형시킬 의무를 갖는다(같은 곳)” 는 의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존적 협력 체계로서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성하고 참여한 사회의 지속적인 작동 아래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작동을 보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선할 책임이 있다.

영은 법적 책임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연결 모델의 세 특징을 설명하며 논의를 부연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 모델은 법적 책임 모델과 달리 첫째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낙인찍어 격리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사람들과 분리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연결 모델은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에 기여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⁷⁶⁾ 둘째로, 사회적 연결 모델은 사회의 배경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찰한

째 사고방식인 연결의 부정은 -특히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고방식은 직접성의 요구로, 연결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조적 부정의의 과정 개선을 위해 내어놓을 자원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네 번째 사고방식은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와 유관하다. 다시 말해, 자신은 분명 그릇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영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방식들-특히 두 번째, 네 번째-의 중요한 기반은 법적 책임 모델 하에 죄에 기반한 책임만을 책임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76)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다르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책임의 구체적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과정에서 행위자가 갖는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클수록, 구조적 과정 속에서 행위자가 받게 되는 결과적 특권이 많을수록, 구조적 과정이 행위자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이 구조적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많을수록 행위자는 구조를 변화시킬 더 많은 책임이 있다.

다. 셋째로, 사회적 연결 모델 아래 책임을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과거 피해에 대한 범인의 보상이 아니라 부정의한 결과의 생산 과정에 일조한 모든 이들이 부정의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데 힘을 합하는 것(RJ, 195)”에 있다. 영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 책임이 다른 이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설 때에만 면제될 수(RJ, 198) 있다”며 사회적 연결 모델의 마지막 특징을 정리한다. 구조적 과정의 변화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성찰적으로 그 개선을 꾀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연결 모델에 기반한 책임 이해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나아가 책임의 이행과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 사회적 연결 모델은 앞서 논한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이 모델은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자들에게 법적 죄에 근거한 책임은 없으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해, 사회적 연결 모델은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 모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앞서 논한 법적 책임 모델 아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 간의 분열과 책임의 전가, 내면적 성찰로의 함몰이라는 부작용을 피한다.

결국, 사회적 연결 모델 아래 “구조적 부정의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구조를 바꾸는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협력한다는 것이다(RJ, 199)” 영은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조직하고 행동을 더 정당하게 조율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공적인 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같은 곳)”며 정치적 책임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적 소통에의 참여를 제시한다. 구조적 부정의의 사태,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야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면밀한 상호 소통을 통해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 즉 구조적 부정의의 해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아이디어는 섬세한 말하기와 듣기를 통한 내적 배제의 교정에 대한 책임 역시 설명한다. 종래의 공론장에서 작동하는 몇 가지 이상이 몇몇 참여자들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책임 있는 구성원이 주목해야 할 무엇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부정의 문제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는 의사소통 상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계하며 의사소통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배제된 목소리를 섬세하게 들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말하려는 태도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

제 4 장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영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영이 그리는 공론을 통해서만으로는 어떤 대안에 대한 정당한 공식적 합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제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Benhbib, 1996; p. 83). 특히 의지가 형성되는 의회의 공식적 공론의 맥락에서 영의 확장적 모델은 결국 집단적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 제도로 합의되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벤하비브(1996)는 이러한 맥락에서 영의 호감 인사, 수사적 표현, 스토리 텔링이 제도와 입법의 공식적 언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같은 곳). 유사한 맥락에서, 그렇듯 확장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잠정적 합의가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의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

둘째로, 영은 소통 방식 확장에 따른 배제 심화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 소통 방식의 확장이 오히려 공적 소통을 전략적 기만이나 힘에 의한 지배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영은 스스로가 소통 방식의 확장이 논리 주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전히 합당성의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더해, 영은 논리 주장 중심의 기존 담론에서도 공적 소통이 전략적 기만이나 힘에 의한 지배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확장적 소통 방식 아래 이러한 전략적 기만 또는 힘에 의한 지배 역시 원활히 노출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ID, 123).

두 지점은 영 이론의 분명한 한계로,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실천에 있어 영의 이론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이 적절히 마련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논의 외에도 영이 제안하는 확장적 소통이, 특히 집단적 의사 ‘결정’의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의 지배를 꾸준히 경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화 탐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측면에서 여전히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은 충분한 교육 실천상 함의를 지닌다. 먼저, 영 이론 바탕의 교육은 분명 시민사회에서의 의견 형성 과정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의견 형성 과정이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은 비공식적 공론장에서의 의견 형성에서 더 많은 목소리가 교차할 수 있기를 목표해야 한다. 교실 의사소통의 목적이 단지 모종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자주 포용적 의사소통 그 자체에 있다는 점 역시 공식적 결정 측면에서 영 이론이 갖는 한계를 축소한다. 영의 이론은 학생들에게 이질성에의 적절한 인식과 더 자유로운 소통을 안내함으로써 그들이 교실을 포함한 시민사회 곳곳에서 더 잘 말하고, 섬세하게 들으며 의견을 형성해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시민 교육을 위해 통제된 상황으로서 교실 의사소통에서는 학교 밖 공론장들과 비교해 힘의 지배에 대한 경계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실 의사소통에는 공론의 절차 전반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가 동반한다. 이는 이론에 대한 비판적 탐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육적 디자인을 통해, 확장된 소통이 갖는 불확실성과 왜곡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영 이론의 유용성에 좀 더 주목하여, 본 장에서는 그것의 도덕교육적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육 목표에의 함의

1.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

주지하듯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구성원의 시민적 자질은 중요하다(Kymlica, 2002/2018 p. 452).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는 시민적 자질을 교육하고자 하는 관심 역시 꾸준히 있어왔다. 시민성(citizenship)의 의미는 좁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 권리를 중심으로, 넓게는 공동선을 위한 시민적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역량 전

반으로 이해된다. 시민교육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 모두를 포함한다(정창우, 2019, p. 95).

이러한 시민성의 두 차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시민성 개념을 법적 시민성(legal citizenship)과 윤리적 시민성(ethical citizenship)으로 대별해 이해한다(Cooper, 1991; 정창우, 2019, p. 95에서 재인용; Bubeck, 1995; 이해진, 2021에서 재인용). 대표적으로 Cooper(1991)에 따르면, 법적 시민성이란 “공식적인 규칙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지위와 역할(정창우, 2019, p. 95에서 재인용)”이다. 윤리적 시민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법적 시민성을 재정의하는 역량(정창우, 2019, p. 95에서 재인용)”이다. 정창우(2019)는 이를 확장해 윤리적 시민성을 “실정법 너머에 있는 이성법이나 자연법 등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차원, 또한 보편적 가치와 원리,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현실의 규칙과 법률 등을 한 수준 높게 향상할 수 있는 차원,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시민적 성품을 갖는 차원(정창우, 2019, pp. 102-3)”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윤리적 시민성⁷⁷⁾은 도덕과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정창우(2020)는 도덕과의 21세기 핵심 교육 영역으로 인성 교육과 윤리적 시민교육을 제시한다(정창우, 2020, p. 457). 그에 따르면, 도덕과에서는 “윤리적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적 품위와 양심을 갖고, 사적 이익을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윤리적 시민성(정창우, 2020, p. 461)”을 길러주어야 한다. 앞서 짚었듯, 윤리적 시민성은 공동선에 실제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역량(competence)으로 파악된다. 윤리적 시민성은 가치지향 및 태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공동선을 위한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함께 포괄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윤리적 시민성이란 다른 시민과 협력해 공동선에 기여하

77) 인성과 시민성은 시민적 인성 또는 윤리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첩된다.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인성의 시민적 요소를 이해하는 시민적 인성 개념에 대한 다음의 논의는 윤리적 시민성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민적 인성이란 다른 시민과 협력해 공동선에 기여하려는 책임 있고 참여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 자질이다. 특히 그 가운데 시민적 태도와 기능이 중심이 된다(Boston, 2005; Shields, 2011; Berkowitz et al., 2008),

려는 책임 있고 참여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 역량이다.

다른 시민들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역량은 윤리적 시민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장동진(2012)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갈등적 상황에서 공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되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 시민 덕성 이론, 공화주의 이론 모두 이성적 토론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정치 참여 능력 강화를 중시한다(장동진, 2012, pp. 93-94).⁷⁸⁾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018)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태도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이 민주시민의 주요 역량(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p. 8)”임을 강조했다.⁷⁹⁾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심의에의 참여가 민주 시민성에 적합한 능력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치 능력을 더욱 제고한다(Valades, 2001. p. 6, 최윤정·추병완, 2020, p. 131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심의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⁸⁰⁾

다수의 도덕 교육 연구자들도 의사소통 역량이 윤리적 시민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최윤정·추병완(2020)은 현대 민주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많은 경우 정치 담론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도덕과는 효과적 심의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힌다(최윤

78) 킴리카(Kymlica)는 갈스틴(Galston)의 책임 있는 시민권 논의를 비롯해 최근의 시민 덕성 논의는 정치적 권위에 문제를 제기할 능력과 의지는 물론, 공공 정책의 문제들에 관한 공적 담론에 참여할 능력과 의지를 포함한다고 정리한다(Kymlica, 장동진 외 역, 2002/2018, p. 458). 킴리카는 특히 공적 담론 참여 능력에의 강조가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심의적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공적 담론에 참여하려는 덕성은 단지 정치 참여의 의지나 자신의 관점을 알리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해 잘 듣고, 말하며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인 덕성이다. 킴리카에 따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이론마다 상이하지만 심의 이론가들에 의해 공적 합당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러한 덕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Kymlica, 장동진 외 역, 2002/2018, p. 459).

79) 더해, 의사소통 역량은 더해 다른 윤리적 시민성 요소들을 적절히 발휘, 나아가 그를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다른 동료 시민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하게 반응하는 대리적인 인지·정서적 반응(Hoffman, 1984)으로서 공감은 동료 시민의 상황을 헤아리려는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구현된다. 동료 시민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과정을 통해 대리적인 반응은 보다 동료 시민의 상황에 적합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80) 사람들이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시민들을 연결하는 확실한 끈을 제공하고 상호 이해와 감정의 공유를 장려할 것이며, 이것은 상호 존중 혹은 실질적인 시민적 우애의 표식이다(Kymlica, 2002/2018, p. 463).

정·추병완, 2020, p. 146). 린트(G. Lind)는 “폭력이나 속임수 대신 숙고와 토론을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pp. 18-9)⁸¹⁾”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나딩스(N. Noddings)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능력은 우리의 학교에서 길러져야 한다(Noddings, 정창우·김윤경 역, 2019, p. 28)” 고 논하며 수업 상황에서 공적 주제에 대한 논쟁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한다. 정창우(2019)는 관용, 협력 등 윤리적 시민성의 핵심 가치, 덕목들이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대표적인 예로 의사소통 역량을 제시한다(정창우, 2019, p. 94). 이혜진(2019) 역시 윤리적 시민성의 핵심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역량이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 전제조건이자 윤리적 시민성 전반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트리거(trigger)라고 말한다(이혜진, 2019, pp. 123-9).

집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두가 의사결정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포용(inclusion)’은 의사소통 절차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으로 제시되어왔다. 시민들이 자율적 행위자로 존중받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그들 행위를 구속할 규범의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역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서 어느 누구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아야(정창우 외, 2017a, p. 190)” 함이 강조된다. 이에 따르면, 규범에 영향받을 모두가 참여해 형성된 규범만이 그들을 구속할 정당성을 갖는다.

사회의 공론장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이 구현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포용적 의사소통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그 자체 포용적 의사소통이 구현되어

81) 린트는 도덕적 역량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의사소통적 측면이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린트, 2016/2017, p. 48).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개인의 숙고 차원에서는 도덕적 역량의 개인적 측면이, 타인과 함께 토론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도덕적 역량의 사회-의사소통적 측면이 발휘된다. 린트는 사회-의사소통적 측면을 논할 때 ‘민주적 역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 개념 모두 위에 밝힌 ‘도덕적 역량’의 기본 의미를 갖는다(같은 곳).

야 하는 하나의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사회의 공론장 전반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연습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구성원 간 이질성과 불평등이 증대하는 맥락에서 의사소통 상의 포용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꾸준히 증대하는 맥락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 및 소양(교육부, 2021, p. 12)”으로서의 포용성이 미래 교육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핵심 가치로 설정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또 다른 지점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면적 강조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교육부, 2021, p. 15)”을 전 교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점들에 따르면, 미래 교육은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며 동료 시민들과 상호 연대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적 시민을 길러내고자 한다. 서로의 다양성을 마주하고 수용하며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포용적 의사소통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영의 이론적 논의는 위와 같이 논의되는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전제하는 의사소통의 현실이 현대 한국의 사회 및 교육 현실과 부합한다. 상론했듯, 영은 공론장에 입장한 참여자들의 입장이 서로 매우 상이하다는 현실, 이에 더해 종래의 공론 과정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목소리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에 주

목한다. 이는 앞서 살핀 이질성과 불평등이 증대하는 현대 한국 사회와 학교의 모습을 적절히 설명하고, 나아가 배제의 현실을 상기하며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⁸²⁾

둘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은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한다. 영에 따르면, 포용적인 공적 의사소통의 장면은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일면이자, 구성원들의 결정이 더 존중받고 그들이 덜 억압받는 정의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이러한 영의 주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응당 포용적인 의사소통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내포한다.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기획이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에의 관심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셋째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체계는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 실천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영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구현을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며 각각의 요건들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영의 이론 체계는 영의 의사소통 모델은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이 단지 교수자나 학생 상호 간의 온정적 태도와 같은 단일의 요소 변화로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영의 모델을 참고했을 때,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수 있다. 교육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실천이 공론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 아래 수행되는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충분히 전제하고 있는지, 교실 의사소통의 목표로서 공동선과 합의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참여자들에게 권장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지는 않은지,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장면에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등이다.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은 각각에 대한 영의 논의

82) 영의 논의에 근거하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의사소통에 대한 규범적 가정들에서 내적 배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이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해야 하고, 공동의 이익에 근거한 보편적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며, 합리적 논증의 교환을 주된 소통 방식 삼아야 한다는 종래의 암묵적 규범이 참여자들 실질적 포함을 방해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질성과 불평등이 증대하는 작금의 맥락에서 몇몇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아가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적 주목을 촉구한다.

를 참고해 설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영의 아이디어가 그것이 갖는 몇 가지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실천을 기획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원활한 교육적 의사소통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두 바퀴는 참여자의 의사소통 역량과 잘 갖추어진 의사소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영의 아이디어가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을 이해하고, 교육 방법으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핀다.

2.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

본 절에서는 영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의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도덕과에서 관심 두어 온 공적 의사소통 역량이란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를 바탕으로 이론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1)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

도덕과가 기르고자 하는 공적 의사소통 역량이란 무엇인가?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와 하위요소에 대해 살핀 후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와 하위요소를 밝혀보고자 한다. 앞서 정리했듯 의사소통 역량은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교육부, 2015a, p. 39)” 역량으로 정의된다. 국내·외 의사소통 역량 관련 연구 및 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종합해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인화(2019)의 연구에 따르면, 범교과 교육 목표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은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도구·맥락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의미 생산과 표현·점검과 조정의 기능,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참여에의 적극성·참여에의 책임감의 태도로 이루어진다(이인화, 2019, p. 13)⁸³).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⁸⁴⁾과 관련 연구⁸⁵⁾를 참고했을 때, 도덕과는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지식’ 과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 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지식’

83) 연구는 역량을 어떤 바람직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정창우, 2019, p. 53) 지식, 기능, 태도로 이해한다.

84) 이인화(2019)의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의 각 하위 요소들과 관련한 개별 교과(국어, 사회과)의 성취기준을 대응하며 의사소통 역량 교육에 있어 개별 교과 교육의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 개별 교과의 주된 관심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러한 탐구의 큰 틀을 빌려, 2015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과의 성취기준이 주목하고 있는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를 표시하였다. 참고한 성취기준 상의 내용들, 그리고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영역을 순서와 함께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도덕> [4도02-02]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② 친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무엇이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식-2, 기능-1, 3) [4도 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식-2, 기능-1, 2, 태도-1) [6도 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지식-2,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 태도-1, 2) 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감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지식-2, 태도-1) [4도 03-03]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지식-2,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 태도-1)

<중학교 도덕> [9도02-01] ③ 세대 간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할까?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도덕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지식, 태도-1) [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9도03-02] ③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식-2,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 태도-1)

85) 교육부의 의사소통 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관련 연구들의 의사소통 역량 개념을 종합해 도덕과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 탐구한 이해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역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정리된다. 첫째,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것, 둘째,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것, 셋째, 상호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시 협상 및 조정해 협력을 이루는 것(이혜진, 2019, p. 130). 유사하게, 이해진의 최근 연구는 윤리적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 및 문제 해결 상황에서 의사소통 절차에 따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혜진, 2021, p.108)” 이라고 정리한다.

외 의사소통 역량의 전반적 하위요소에 그 교육적 관심을 두고 있다. 도덕과는 이렇듯 ‘의사소통 도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한편, 이인화(2019)의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버마스를 비롯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학자에 의해, 적절한 의사소통의 절차와 방법은 그를 통한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도덕과 시민교육의 중요 목표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제시한 이혜진(2020) 또한 아래와 같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사소통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설정했다. 도덕과 교육이 주목하고 있는 의사소통 역량 요소들을 종합하면,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의사소통 역량은 의사소통의 맥락·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의미 생산과 표현·점검과 조정의 기능,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참여에의 적극성·참여에 있어 책임감의 태도로 파악된다.

〈표 4-1〉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 (이혜진, 2021, p. 110 [그림 3-8]에서 발췌)

범주	영역
지식	의사소통 절차 알기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지적 공감 방법 알기
기능	자신의 생각과 감정 전달 및 표현하기
	갈등 조정하기
가치, 태도	협력, 열린 태도, 공감, 겸허, 경청, 자기조절, 존중

그렇다면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공적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간단히 살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드러난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공적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이다. 즉, 공적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 간에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에서의 정치적 공론이 가장 대표적인 공적 의사소통의 사례이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가운데에서는 강의, 토론 등의 수업이나 학급 및 학교 자치 회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앞서 살핀 도덕과가 관심을 두는 의사소통 역량의 영역과 이후 살펴본 도덕과 교육 연구 및 실천에서 드러나는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를 종합했을 때, 결국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적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하위 요소는 앞과 같이 공적 의사소통의 맥락·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의미 생산과 표현·점검과 조정의 기능,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참여에의 적극성·참여에 있어 책임감의 태도로 파악된다.

<표 4-2>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영역

범주	영역	하위 요소
지식	의사소통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절차와 방법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절차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이해
기능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평가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의도, 목적, 내용 추론하기
		비판적, 성찰적 수용하기
		감상적 수용하기
	의사소통에서 의미 생산과 표현	설득과 문제 해결하기
		정보 전달과 공유하기
		관계 지향적 소통하기
		정서 표현하기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태도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경청, 공감
		배려, 예절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의사소통 윤리
		의사소통 결과의 수용과 실천 의지

한편, 2015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볼 때,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 실천 및 연구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역량 함양이 꾸준히 지향된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가운데 공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한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9도 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위 단원에 따르면, 정보 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습관에 대해 검토하며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할 때 인간 존중과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예절 갖춘 의사소통⁸⁶⁾에 임해야 한다.

[9도 02-06]⁸⁷⁾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해당 단원은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화의 당사자들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자세, 역지사지와 관용의 자세,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단원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교육과정은 사회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해 소통과 담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을 위한 윤리적 자세를 제시한다.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

86) 악성 댓글 달지 않기, 나쁜 소문 퍼트리지 않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불쾌한 표현 사용하지 않기 등(정창우 외, 2017b, p. 28의 일반적인 예절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

87) 타인과의 구체적 관계 영역에 주된 초점이 있는 2단원의 성취 기준들이 공적 의사소통 역량과 연관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5단원의 경우,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한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교육과정의 주된 초점이지만, 정보화 시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공적 의사소통과도 관련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다. 6단원 내용의 경우 역시 사회적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의사소통 교육과 연관하다고 보았다.

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서 어느 누구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정창우 외, 2017a, p. 190)” 이와 더불어 둘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셋째, 진실한 대화⁸⁸⁾, 넷째, 오류 가능성의 인정, 다섯째,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가 제시된다(같은 곳).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IV. 사회 사상. 4. 민주주의 단원에서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 소개된다. 교과서에 따르면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토의와 심사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정창우 외, 2018, p. 195)” 다. 내용은 특히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결여된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같은 곳)”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 가운데, 중학교 도덕 [9도 02-06] 갈등 해결 단원 교과서 내용 중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에 있어 역지사지와 관용의 자세, 양보와 타협의 자세와 함께 합리적 의사소통의 자세가 강조되는 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심의 민주주의 관련 단원에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술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도덕과 시민 심의 기술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최윤정과 추병완(2020)의 연구에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즉, 시민 심의를 성립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적 진행, 모든 사람의 동등 참여, 입장 간 차이의 정당한 인정, 주체로서 공적 논쟁 이슈, 공동선 바탕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최윤정·추병완, 2020, p. 140)이다. 또한, 이 연구는 심의가 이성적 작업임을 강조하며 합리적 논증을 통한 정당화가 심의 과정의 핵심임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는 심의의 핵심적 특징이 강압이 아닌 더 나은 논거의 힘으로 이끌어지며, 주장의 논거는 이성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으로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의미와 하위 요소에 대해

88) 더해, 교과서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으로 발화의 이해 가능성, 정당성, 진실성, 진리성을 추가로 소개한다.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 역량이 합리적 의사소통 역량만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했다. 전자의 내용은 이후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점을 명료화한다. 본고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각 하위 요소에 따라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한편, 후자의 내용은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 역량 이해에 대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비판적 적용 방향에 대해 암시한다. 영의 이론은 공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존 심의 모델에 의거,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종래의 도덕과 교육 실천 및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살폈듯 영은 기존 심의 모델의 합리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공중의 이질성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고, 나아가 종종 일부 개인 또는 집단이 실제 공론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영은 이러한 기존 심의 모델의 배제적 함의가 공론의 개념과 공중의 모습, 의사소통의 목표·방법·태도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포용적 의사소통의 구현을 위한 교육 목표로서 의사소통 역량은 영의 이론을 참고하여 기존보다 폭넓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적 의사소통 역량 중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의미 표현의 기능, 의사소통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합리적 측면 외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기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논의한다.

2)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

도덕과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에 따른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탐구한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의 특징을 간단히 압축해 기존 심의 모델의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기존 심의 모델과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

	기존 심의 모델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
1. 공론의 상	동질적 공중의 국가 운영 원칙 모색	이질적 공중의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2. 공론의 목표	공동 이익에 기반한 보편적 합의	구체적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
3. 공론의 방법	논리 주장	논리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4. 시민의 태도	정의 지향 이성의 능력으로서 합당성	부정의 해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 복합적 능력으로서 합당성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결정에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다.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논하는 공론의 상, 목표, 방법, 참여자 역량 각각은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지식, 기능, 태도 규명에 주로 다음의 <표 4-4>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공론의 상과 목표에 대한 이론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지식 측면, 공론의 방법에 대한 이론의 내용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능 측면에서, 참여자 태도에 대한 이론의 내용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 측면에서 각각의 주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표 4-4〉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의 내용에 따른 적용 지점

	포용적 의사소통 모델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 상 적용 지점
1. 공론의 상	이질적 공중의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지식
2. 공론의 목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	
3. 공론의 방법	논리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의사소통에서 의미 수용과 의미 표현 기능
4. 시민의 태도	부정의 해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 복합적 능력으로서 합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존중, 적극성의 태도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표 4-4〉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 상 적용 지점’ 열의 각 행인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지식, 지능, 태도 측면에서 이론이 갖는 함의를 차례로 논한다. 논의의 각 부분은 먼저 표를 통해 각 범주의 하위 영역 및 내용을 요약적으로 나타낸 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1) 지식

〈표 4-5〉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지식 영역

범주	영역	하위 요소
지식	1. 의사소통 맥락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목적으로서 정의에 대한 이해
	2.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 및 방법	포용적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이해
포용적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이해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다음의 지식을 포함한다. 첫째로, 학생들은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구조적 부정의의 사실에 대해 이해한다. 이인화(2019)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사소통이 주제 삼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로 파악된다. 영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은 구조적으로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적 제도와 규범의 체계 아래 특정 집단은 종종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 가치의 구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상황과 의사소통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구조적 부정의는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배적인 의사소통의 규범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의사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상의 내적 배제의 가능성, 즉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장에서 어떤 참여자 집단 또는 개인이 배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내적 배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포용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중요한 바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주제가 되는 사안을 구조적 부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은 부당한 사태의 원인이 단지 악하거나 미숙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 및 규범 체계와 관련한 문제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을 지닌 학생들은 주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때 주제 사안과 관련한 사회 제도 및 규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한 제도적 맥락 아래 부당하게 지배 또는 억압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

둘째로,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질성에 대해 이해한다. 이인화(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로서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관계 및 참여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로 이루어진다. 영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포용적 의사

소통 역량은 이질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관계 및 각각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포용적 지식을 갖춘 학생들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입장이 서로 판이하며, 따라서 소통의 이전에는 상호 입장에 대해 파악할 수 없음을 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각각이 친연성을 갖는 사회 집단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관심을 두는 공적인 주제, 입장표명 시 채택하는 구체적 관점, 그들이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얻기를 지향하는 구체적 이익, 입장의 표현과 공동 추론에 있어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낳는다는 사실 역시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공론의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 불가능한 절대적 타자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영의 이론을 참고한 교육 기획과 실천은 구성원 간의 이질성과 타자성의 강조가 그들 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과 소통 가능성에의 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구조적 부정의의 교정이라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눔으로써 공동의 규범과 제도를 구성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소통에 임해 섬세하게 파악해 낸, 참여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지식 역시 갖고 있다.

셋째로, 학생들은 의사소통 목적으로서 정의와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잠정적 합의에 관해 적절히 이해한다. 범교과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설득, 정보 전달, 관계 형성, 정서 표현, 문제 해결, 갈등 해소 등)에 대한 이해(이인화, 2019, p. 13)” 다. 바람직한 공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 따라서 우리가 제도 구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해야 할 기본적 목적으로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론은 어떤 양상의 합의를 구체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과 주로 연관된다.

먼저, 학생들은 공적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관심으로서 사회 정의의 개

념에 대해 적절히 이해한다. 정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도덕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지점이다. 한편, 현행 교육 과정을 통해 안내된 정의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 분배 패러다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⁸⁹⁾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영의 비판과,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 정의에 대한 영의 확장적 이해는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해당 지점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영의 설명은 의사결정 과정에의 포함과 그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구조의 자율적 재구성이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문제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임을 이해한다. 시민사회 공론장과 교실 공론장 모두에서 공적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주제는 주로 구체적인 구조적 부정의 문제이며, 그 목적은 문제의 잠정적 해결이다.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근거한 만장일치로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또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어떤 학생들의 구체적인 관심도, 호소하는 이익도 단지 공동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영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할 때, 학생들이 이해하는 공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민주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의 마련이며, 도달한 결론은 언제든지 바람직한 절차의 논의를 통해 재갱신될 수 있다⁹⁰⁾.

89)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된 교과서 내용에 의하면 사회 정의는 크게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분배적 정의와 법의 적절한 집행을 통한 위법 행위의 교정과 관련된 교정적 정의로 이루어진다(정창우 외, 2017a, p. 90).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이 소개된다. 2장에서 다루었듯, 영은 정의에 대한 분배 중심적인 이해가, 실상 정의의 중요한 일면인 규범과 제도 구성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90) 민주적 수용과 보편적 합의의 최종 의사결정 절차는 일면 유사할 수 있다. 예컨대 두 경우 모두 최종 단계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근거한 투표로 학생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영이 주목하는 바는 그 이전에 참여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가,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과 재구성이 가능한가다. 지속적으로 살폈듯 ‘민주적 절차에 의한 수용’을 목적하는 의사소통은 ‘공동 이익에 근거한 보편적 합의’를 목적하는 의사소통보다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과 결정에 대한 향후의 지속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첫째로, 학생들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가 어떠한지 이해한다.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에 대한 지식은 절차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규범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규범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모델의 순서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기본 규범에 대한 지식 측면과 관련된 영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는 의사소통 결과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평등한 조건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는 공론의 개념과 의사소통의 목표, 권장되는 추론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몇몇 참여자들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절차가 자의적 권력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의 힘으로 전개됨을 이해한다. 논의는 참여자들에게 발화의 동등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그들이 서로의 입장을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으로 검토하며 합의에 다다르며 진행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포용적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이혜진(2019)의 연구에서는 해당 지식의 대표적 예시가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인지적인 공감 방법에 대한 이해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심리학적 지식과 더불어, 영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호감 인사, 그리고 수사 및 내러티브, 합리적 논증의 합당한 활용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해당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영은 표현 방법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목소리가 의사소통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러한 표현에 대한 섬세한 경청의 방법이 종래보다 적극적으로 안내될 필요가 있다.

(2) 기능

<표 4-6>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기능 영역

범주	영역	하위 요소
기능	1. 포용적 의미 수용과 평가	의도, 목적, 내용 추론 및 파악하기
		비판적, 성찰적 수용하기
		감상적 수용하기
	2. 적극적 의미 생산과 표현	정보 전달과 공유하기
		정서 표현하기
		관계 지향적 소통하기
		설득과 문제 해결하기
	3.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의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기능을 해명하는 데 있어 영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로, 영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공적 의사소통 맥락에서 역시 ‘정서의 표현’ 과 ‘감상적 수용’ 을 중심으로 한 ‘관계 지향적 소통’ 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영은 공적 의사소통에서 정서, 육체적 요소가 소거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나아가, 그녀에 따르면 공적 의사소통에서 정서, 육체적 요소의 적절한 활용은 합당한 설득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더해, 호감 인사 또는 공적 인정, 차이에 근거한 연대에 대한 영의 논의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상호 논의를 통해 공유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호감 인사를 통한 구성원 권리의 명시적 인정과 같은 동료 시민 간의 비(非)적대적 관계 유지가 포용적인 공적 소통의 성립과 원활한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기존 심의 모델에 근거한 교육이라면 많은 경우 배제하였을 의사소통의 정서 및 육체적 측면

의 활용, 시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의사소통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 기능으로 포섭한다.

둘째로, 공적 의사소통에서 수용과 표현의 기능은 단지 논리 주장뿐 아니라 더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실행된다. 영에 따르면 이질적 공중 사이의 의미 표현과 수용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은 이러한 섬세한 표현과 수용을 위해 논리 주장 외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공론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예컨대 공적 의사소통의 기능은 호감 인사로 서로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 합당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사적 표현을 활용하고 또 상대의 표현법에 주목하는 것, 논리 주장에 앞서 상호 공유된 전제를 형성하기 위해, 또는 논리 주장과 더불어 모종의 입장표명을 위해 각자의 이질적 입장에 대해 스토리 텔링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영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누군가의 입장이 공중 일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표명된다면, 그것이 어떤 표현의 전략을 택하건 그것이 공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형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셋째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절차를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의사소통 내용의 적절성은 그것이 단지 공동 이익을 반영한 타당한 논리적 주장인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어떤 입장이 적절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구체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모종의 절차를 통해 결국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국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등이 폭넓게 검토됨으로써 집단 의사소통은 결정에 이를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내용은 그 논리적 타당성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수용 가능성에 의해 점검 및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해, 집단 의사소통의 합의가 고정불변하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구체적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에 대한 잠정적 합의라는 사실은 의사소통 내용과 절차의 점검 및 조정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함의한다. 특히,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앞서 정리한 포용적인 의사소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임하고 있는 의사소통 과정 자

체를 꾸준히 점검하며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영의 모델에 따르면,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특히 의미 수용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영은 지속적으로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적으로, 『포용과 민주주의』의 한 지면에서 영은 다양한 소통의 양상으로 공적 인정, 내러티브, 레토릭과 함께 이에 대해 주목하는 경청을 포함한다. 그녀가 강조하고자 했던 소통의 중요한 측면으로서의 경청은 “관용구, 말투, 상징적 이미지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함을 포함(ID, 189)” 한다. 김애령(2020)을 비롯한 다수 연구자(박승관, 2000; 임철성, 2016; 정은기, 2018)는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지 종래에 이루어졌던 접근과 같이 소수자에게 단지 ‘더 말하라’고 촉구하기보다 그들을 더 듣고자 하는 섬세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영 또한, 배제된 이들에게 다양한 표현 수단을 허용하는 것만큼 배제하던 이들의 귀 기울임을 촉구하는 것이 포용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질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책임 이행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의미 수용의 기능은 포용적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관심 아래, 다음 [그림 4-1]의 Listening Quality Index는 보다 섬세한 의미 수용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될 수 있다. Mary F. Scudder(2021)은 상론한 바와 유사한 관심을 바탕으로 민주적 심의를 위한 시민의 역량 가운데 듣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듣기의 수행 상태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안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여섯 항목의 만족 여하에 따라 듣기의 여섯 수준이 구분된다. 청자가 화자를 듣고 있다고 보고함, 청자가 화자를 침묵시키지 않음, 청자가 화자의 기여에 대해 상기함, 청자가 화자에게 반응함, 청자가 실질적인 응답을 제공함, 화자가 청자에게 경청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고함이다.

더불어, 도덕 교육은 학생 간 적절한 발문 전략을 지도할 수 있다. 위의 수행 상태와 더불어, 적절한 질문은 경청의 중요한 요소이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창우 등(2020)이 학생들의 인지적 성찰 능력 함양을 위해 제시한 에포케 기반 발문 및 수업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이 외부 대상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는 미명 그리고 “생활 세계적 혹은 관습적 의미 구

성이 갖는 편견과 선입견(정창우 등, 2020, p. 260)”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발문의 방향과 구체적 전략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숙지될 필요가 있다. 그로써 공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상호 발문을 통해 서로가 공론 주제,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며 신중하고 포용적인 대화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Listening quality index (LQI) (Mary F. Scudder, 2021, p. 7)

0. No listening	Listener reports not listening to speaker					
1. Failed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silences speaker with interruption				
2. Passive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does not silence speaker	Listener does not recall speaker's contributions			
3. Attentive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does not silence speaker	Listener recalls speaker's contributions	Listener does not respond to speaker		
4. Active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does not silence speaker	Listener recalls speaker's contributions	Listener responds to speaker	Listener does not give a substantive response	
5. Responsive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does not silence speaker	Listener recalls speaker's contributions	Listener responds to speaker	Listener gives a substantive response	Speaker reports not feeling heard by listener
6. Performative Listening	Listener reports listening to the speaker	Listener does not silence speaker	Listener recalls speaker's contributions	Listener responds to speaker	Listener gives substantive response	Speaker reports feeling heard by listener

(3) 태도

〈표 4-7〉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태도 영역

범주	영역	하위요소
태도	1.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경청, 공감
		배려, 예절
		다양성에 대한 인정
	2.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
	3.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의사소통 윤리
		의사소통 결과의 수용과 실천 의지

포용적인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인화(2019)의 연구는 의사소통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배려하며 입장 표명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준수하고 자신의 입장 표명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며 합리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의사소통 결과를 수용 및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이인화, 2019, p. 13). 이에 더해 영의 이론이 제시할 수 있는 응답은 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이질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합당성의 자세, 즉 섬세한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의견 일치에 이르려는 자세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영에 따르면, 정체의 성숙한 구성원들은 정체가 마주하는 구조적 부정의 문제를 개선할 책임을 지고자 한다. 앞서 살핀 바 정치적 책임은 부정을 낳는 구조에 참여하고 기여한 구성원들이 지는 책임으로, 이를 떠맡아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피하려는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로 나타나며, 의사결정 내부에서는 내적 배제에 대한 경계로 나타난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구체적 해결책으로서 의사소통의 결과를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영은 참여자들의 이질성에 대한 인정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질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질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집단 의사결정의 귀중한 자원임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먼저 참여자들은 상이한 입장 위에 있으며, 그들이 상호 소통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더해, 참여자들은 이질성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의 자원임을 인정한다. 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맥락에서 상호 입장에 대한 보다 섬세한 수용과 표현의 자세로 이어진다. 결국,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태도적 측면은 구조적 부정의 발생과 그 교정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가치지향과 이질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공적 의사소통에 참여, 더 섬세한 말하기와 듣기에 임하고자 함으로 파악된다.

제 2 절 교육 방법에서의 함의

교실 내 의사소통을 포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교실 역시 이미 일종의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더해, 포용적 의사소통 환경에의 지속적인 노출은 학생들의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교실 내 의사소통이 포용의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리하고, 이러한 규칙을 구체적인 수업 모형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용의 과정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1.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 규칙

구성원 모두에게 포용적인 교실 의사소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과 교수학습의 중요 원칙으로 강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나바에츠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그들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민

주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때 민주적 환경은 학생들이 상호 동등한 가운데 공동의 관심에 대한 의사소통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이다(Dewey, 1916/2018, 정창우 외, 2020, p.208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실 환경은 수업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가운데 적절히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배려적 환경 역시 요구된다(Nodding, 2002/2018, 같은 곳에서 재인용).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의 개념에서 공동의 생활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포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핵심적이다.⁹¹⁾ 상론했듯 정창우(2019)는 또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의사소통 환경의 구축이 시민적 인성 교육의 중요 원칙이기도 함을 (정창우, 2019, pp. 123-6)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의사소통 환경의 구축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항에서는 도덕과에서 포용적인 공적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할지 탐구한다.

(1) 이질성 인식

교사와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그들이 갖는 이질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서로 상이한 경험 아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의 인식은 그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 함께 공유할 규범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교실 의사소통 장면인 학급 회의를 예컨대, 구성원들은 회의에 앞서 그들 각각의 관심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어떤 공동의 관심

91) 정창우와 동료들은 민주적 공동체 형성 전략과 배려적 공동체 형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정창우 외, 2020, pp. 209-230). 민주적 공동체 형성 전략은 배려하는 민주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소속감, 자율성, 역량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왓슨과 벤슨(같은 책, 210)의 입장을 받아들여 각각의 욕구를 단계별로 충족하기 위한 수업 전략을 제시한다. 소속감의 경우 모둠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칭찬 및 격려, 사회 정서적 기술 교수 전략이 소개된다. 자율성의 경우 자율적, 협동적 탐구를 주입으로 한 교수 전략, 역량감의 경우 의미 있고 도전적인 과제 해결과 자기 평가를 통해 다룰 것을 권유한다. 배려 공동체 형성 전략으로는 모델링, 대화, 실천, 확인이라는 나딩스의 도덕교육 네 요소의 적절한 활용이 제시된다.

사도 앞서 전제되지 않으므로, 어떤 관심사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지 배제되지 않는다. 더해, 구성원들은 논의의 주제에 대해 그들 각각이 처한 입장과 선호하는 대안을 확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다. 상호 다른 입장에 처해 있고, 선호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름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의 전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말하기와 적극적인 듣기를 허용한다. 우리가 대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은, 우리의 논의의 목적이 어떤 대안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일 수 없음을 알도록 한다. 대신, 구성원들은 입장의 다양한 교류를 바탕으로 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시인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규범 수용

영의 이론을 참고했을 때, 교실 내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기본적인 세 규범은 포용, 합당성, 성찰성이다. 첫째, 포용은 의사소통 절차에 교실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있어 그들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사결정 상의 평등을 함께 요구한다. 교실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포용의 규범을 상기하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둘째, 합당성은 상대가 이해 및 납득, 수용할 수 있기를 목적하며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표명되는 상대의 이야기를 열린 자세로 듣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다. 영의 이론에서 이러한 합당성은 의사소통 내적 포용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바탕으로 배제되었던 소극적 발화자의 입장표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셋째, 성찰성은 교실 의사소통이 그것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규범과 절차 자체를 지속적으로 다시 논의 주제 삼아 비판적으로 성찰 및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교실 의사소통의 구체적인 구조 자체가 포용과 합당성의 실현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지에 대해 계속해서 성찰하며 재정립해 나갈 수 있다.

(3) 다양한 표현의 허용과 책임 있는 경청

교실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상의 정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실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정치적 책임은 무엇보다 의사소통 내적 포용의 지속을 지향한다. 책임 있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교실 안팎의 부정의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상의 내적 배제는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의다. 따라서 이들은 내적 배제를 낳는 의사소통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종래의 배제된 목소리에 더 참여하게 귀 기울이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태도는 소극적 발화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청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청의 환경은 먼저, 충분한 듣기 시간의 확보로 마련될 수 있다. 예컨대 교실 의사소통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경청 및 상호 입장 확인의 단계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이후 평가 단계에서 학생들이 교실 의사소통이 상호 입장 확인의 절차를 잘 거쳤는지 살필 수 있다. 더해, 경청의 환경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의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논증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하기, 말하기에 있어 배려적 또는 전략적 수사의 활용, 피켓 또는 포스터, 익명 채팅 또는 글쓰기와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방법의 확장이 표상하는 ‘어떻게든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는 종래의 위축된 발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동시에 의사소통의 적극적 청자로서 이렇듯 다양한 표현의 방식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가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목해야 한다.

(4) 잠정적 합의와 지속적 성찰 지향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결과 -대표적으로 학급 회의 결과나 토론 수업에서 다다른 합의의 지점- 는 공동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합의임이 주지되어야 한다.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이질적 공중이 논의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그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익에 근거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아니라 그들이 해당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의 잠정적 합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공동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 가지 합당한 의견의 제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다. 더해, 해당 이해는 의사소통 결과에의 지속적인 성찰과 검증, 재구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교실 구성원들은 합의한 결과가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절히 기여하는지, 또 다른 부정의가 관련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며 언제든지 발화와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업 모형에의 적용과 교사의 역할

이 부분에서는 앞서 정리한 규칙들이 실제 수업 모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도덕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집단 의사소통 수업 모형을 개괄적으로 살핀 후,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에의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한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⁹²⁾ 제고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토론 수업 모형들이 공적 의사소통 교육의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⁹³⁾ 김항인(2017)은 대표적인 도덕과 토론 수업 모형으로 가치 갈등 해결, 합리적 의사결정, 가치 분석, 도덕적 토론 수업 모형을 든다.⁹⁴⁾ 김

92)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정당화 근거를 밝히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93) 예컨대 정창우 등(2020)은 콜버그 딜레마 토론 모형이 도덕과 수업에 활용됨으로써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해나가는 활동을 통해 타인 존중 및 참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94) 콜버그 딜레마 토론 모형은 아동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갈등을 가져온 후 토론을 통해 제안된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화 가능한 정당화 근거를 토대로 상위의 단계에서 평형화하고자 하는 교육적 시도(정창우 외, 2020, p. 73)” 다. 가치분석 모형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의 진위를 파악하는 사실 판단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가치 원리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 및 판단을 돕는다. 가치갈등 모형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논쟁적 문제들에 대한 개념의 명료한 정의(definition), 갈등하는 가치의 확인, 사실 관계의 확인을 통해 시민들의 도덕적, 합리적 판단 및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정창우 외, 2020, p. 122).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도덕적인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예상해 보게 함으로써 도덕적,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김항인, 2017, p. 4).

향인(2017)은 이들 네 가지 수업 모형이 모두 도덕적 갈등 사태에 대한 상호 토론과 그를 통한 입장 수정 등을 통해 도덕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향인, 2017, pp. 9-10). 공적 의사소통 교육의 맥락에서도, 이들 모형의 활용은 공적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도덕적, 합리적 판단력 증진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논의의 주제를 가상적인 도덕 딜레마로 삼고 있다는 점, 딜레마에 대한 보다 나은 형식의 도덕 판단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집단 의사소통의 궁극 목적이 집단 차원의 정의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입장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점 등에서 적용상의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과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구체적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논쟁 수업 모형들⁹⁵⁾을 검토해볼 수 있다. 도덕과 교육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존슨 형제(Johnson, D. W.&Johnson, R. T.)의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을 활용한 공적 의사소통 교육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토론 수업 모형이 학습자 개인의 합리적 추론 및 판단 능력의 신장에 주력했었던 것에서 나아가,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은 나아가 자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목한다(정창우 외, 2020, p. 141).

존슨 형제에 따르면, 건설적 논쟁은 사람들의 입장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 양립할 수 없는 논쟁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고자 임하는 논쟁이다(같은 곳). 참여자들 간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이러한 건설적 논쟁의 중요 조건이다. 최윤정·추병완(2020)은 민주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많은 경우 정치 담론을 수반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은 효과적 심의에 필요한 역량을 배울 필요가 있다(최윤정·추병완, 2020, p. 146)고 말하며 건설적 논쟁의 도덕과 시민교육적 활용에 주목한다. 건설

95) 국내 도덕교육, 시민교육 연구에서는 린트의 KMDD 수업 모형(이인태·박균열, 2019), 존슨 형제의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김하연, 2019; 추병완·최윤정, 2020; 최윤정, 2019), 탐구 공동체 수업 모형(조성민, 2005) 등을 활용한 공적 의사소통 교육이 고안되어 왔다.

적 논쟁 수업 모형은 논쟁 주제와 입장의 구분, 논쟁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수업 준비 단계, 소집단 내 미니 소집단을 이루어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구성하는 단계, 소집단끼리 모여 미니 소집단이 각각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발표하는 단계, 미니 소집단 간 토론 단계, 미니 소집단 간 입장을 교환하고 입장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소집단 별로 하나의 주장으로 종합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과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두 입장은 모두 논의 참여자들의 관계를 상호 이질성과 상호 의존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의 3장에서 검토했듯 영은 논의 참여자들이 주제 사안에 대해 서로 판이한 입장을 가지며 동시에 하나의 정치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제도적 맥락 아래 서로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존슨 형제 역시 주제 사안에 대한 논의 참여자들의 입장이 논쟁 이전에는 양립 불가하다는 사실에 주목함과 동시에 참여자들 간의 협력적인 상호 의존성을 논의의 중요 조건으로 삼는다.

둘째, 이러한 공중의 상 위에, 두 입장은 모두 공론의 목표를 일반적 동의에 기반한 합의로 설정한다. 영의 이론에서 개별 공론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일반적이지만 잠정적인 동의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존슨 형제가 논하는 건설적 논쟁의 목표 역시 협력적 합의의 모색으로 설정된다. 건설적 논쟁 연구들은 건설적 논쟁이 지배적인 입장에 대한 일방적 합의를 추구하는 동의-추구(concurrnece-seeking)와도, 상대 입장과의 경쟁이 중심이 되는 경쟁적 논쟁(competitive debate)와도 구분됨을 강조한다. 즉, 건설적 논쟁의 결론은 이익 간 경쟁과 공동선에 근거한 의견 일치 사이에 마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의 관점은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의 적절한 활용이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편,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은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의 보다 포용적인 구체적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로,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입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구체적 이질성은 논의에 앞서 또는 논의를 통해 소거되거나 극복될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영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것은 인정되어야 하는 논의의 현실적 조건이며 더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제 사안에 있어 관련된 제도적 맥락, 그 안에서 자신 또는 다른 구성원들이 개인 또는 집단을 기반으로 처하는 개별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둘째로, 미니 소집단의 주장 및 근거 발표 단계에서 학생들은 합리적 논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그들의 상호 이질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교환한다. 공적 인정으로 시작하는 논의는, 단지 질서 있는 논리 주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사를 활용한 합당한 표현들을 존중하고 경청한다. 내러티브가 논리 주장의 교환에 필요한 공동의 이해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어떤 주장의 근거 제시에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이 밖에도 글쓰기, 표어 피켓, 포스터, 공동행동 등의 표현 방법이 허용 및 촉진될 수 있다.

셋째로, 교사는 미니 소집단별 토론의 단계에서 상호 입장을 “상대방의 주장과 견해를 경청하며 수용하는” 과정을 별도 절차로 마련함으로써 정교한 입장 수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상호 주장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경청하고, 수용한 바가 적절한지 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마련은 수업 전반이 학생들의 이야기하기에 열려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넷째로, 소집단 의견의 합의점 도출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합의가 공동 이익에 근거한 단일 대안에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질적 입장을 종합해 이루어지는 공동 해결책의 잠정적 마련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해, 합의 과정에 역시 모든 의사결정권자의 이의제기 및 거부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는 영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때, 해당 단계에서 합의점 자체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도 배제를 경계할 수 있다.

다섯째로, 처음과 마지막 단계에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확인과 성찰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작 단계에 학생들은 해당 의사소통 절차 자체

와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그들이 건설적 논쟁 수업 모형의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질적 입장들의 적절한 교환과 종합적 합의 도출을 피하고자 함을 이해하고 그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실행 이후에도, 의사소통의 구체적 절차는 지속적인 성찰과 재구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이 적절히 실행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본 항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지점에 대해 간단히 논의한다.

(1) 의사소통 특권자의 책임 있는 듣기

포용적인 의사소통 교육 맥락에서 교사는 주로 말하는 이이기보다 듣는 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적 의사소통을 교육하고자 하는 이의 관심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할까보다 학생들의 입장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상의 권력 차이를 인정하는 영의 이론은 특히 의사소통 상에서 교사의 특권적 위치를 알리며 학생들의 입장에 귀 기울일 교사의 책임을 촉구한다. 이는 교실과 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보다 포괄적인 양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교육적 측면에서의 책임이다. 교실 내 논의를 시작 및 전개하고, 종결하고 합의 사항을 최종 승인 및 집행하는 권위자로서 교사의 존재는 교실 의사소통의 중요한 특수성 중 하나다. 교사의 적절한 역할 수행은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이야기 꺼낼 수 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영의 정치적 책임 논의를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 적용하면, 종래의 배제적인 교실 의사소통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은 교사에게 가장 막중하게 부과된다. 정치적 책임 논의에 따르면, 부정의를 교정할 정치적 책임은 부정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갖는 결정력이 클수록 엄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의 책임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발화에 대한 섬세한 귀 기울이기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지속적인 질문과 학생들에 대한 공적 인정, 다양한 표현 방법의 허용, 포용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마련은 이러한 귀 기울이기의 구체적인 방식이다.

덧붙여, 교사는 특히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특히 귀 기울여야 한다. 영은 의사소통 상황의 분명한 내적 배제 현상을 인정한다. 이는 교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역시 유사한 현상이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경우에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만약 교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또한 유사한 치우침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적절한 교육적 디자인⁹⁶⁾을 통해 적극적 발화자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 수용의 기능에, 소극적 발화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 표현의 기능에 중점적 목표를 둔 교육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다.

〈표 4-8〉 기존 발화 적극성 차이에 근거한 교육적 개입

	표현	수용
적극적 발화자		다양한 표현 방식에의 주목과 의미의 적극적 수용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소극적 발화자	다양한 표현 방식의 습득과 의미의 적극적 표현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2) 합당성으로의 안내자

영이 공론장에서 모든 표현을 무조건 허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는 것은 교육적 적용에 있어서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96) 이러한, 차이에 근거한 교육적 개입이 매우 까다로운 지점임은 논자 역시 인식하고 있다. ‘적절한 디자인’이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개입이 무성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부 학생들에게 ‘소극적 발화자’라는 부당한 낙인이 찍혀 오히려 그들의 발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절한 교육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장 논자의 역량으로 논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생략한다.

서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표현을 열어두되, 그들의 표현이 여전히 합당한 것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영에서 참여자들이 합당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로, 그들의 입장이 다른 이들에게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표현되고, 그들이 열린 자세로 다른 이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합당한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절차 속 상호 설득을 통해 도달한 일반적 합의를 적절히 받아들이며 실천을 통해 준수한다. 따라서, 교사는 다음의 기준 아래 학생들을 합당한 태도로 이끌 수 있다. 우선, 학생이 표현하는 바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학생들이 알아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의 결과를 수용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교사와 교실 전체는 합의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에 열려 있어야 한다. 한 시점에서 대안에 대해 이루어진 일반적 합의가, 이후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절히 기여하는지 또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는 추후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아이리스 매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갖는 특징과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했다. 정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목소리는 애초 해당 과정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묵살된다. 참여자들의 입장은 점차 다양화하는 한편, 정치 과정에서의 배제 현상은 꾸준히 심화하는 현대 우리 사회의 맥락은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을 시급히 요청한다. 시민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이 교실 또는 사회에서 포용적 의사소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아이리스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그 특징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이론이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혔다.

본고의 2장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토대를 살폈다.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은 비판적 정의관과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에 대한 옹호,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특정 경향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다. 영은 기존의 분배 중심적 정의관을 비판하며 사회 정의를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 아래 포용적인 심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은 자기 결정의 측면에서 사회 정의의 중요한 일면이자 그를 통해 자기 결정 및 자기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 조건이다. 한편, 영에 따르면 기존 심의 민주주의 이론들을 통해 그려지는 공론의 상은 그것이 첫째, 공론의 전제 또는 목표로 모종의 일체성을 둔다는 점에서, 둘째, 입장표명의 바람직한 방식으로 합리적 논리 주장만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을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히 배제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시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의 특징을 종합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이론이 논하는 공론의 상, 의사소통의 목표, 의사소통의 방법, 의사소통 참여자의 태도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먼저, 영은 공론을 모든 당사자가 합당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규범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의미로 이해한다. 그녀는 특히 현실의 공론장

이 구체적인 구조적 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공론에 임하는 공중이 의사소통 상의 지위와 주제와 관련된 입장의 측면 모두에서 이질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론에서 의사소통의 목표는 결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 이익에 근거한 고정적 합의로 설정될 수 없다. 영은 의사소통의 목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에의 잠정적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결국, 영은 합리적 논증 교환으로 제한되었던 공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논의의 참여자들을 동등한 공중으로 인정하는 호감 인사, 정숙한 논리 주장보다 다양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설명과 설득에 유의하게 기능하는 수사, 상이한 입장의 전제를 이해하기 위한 내러티브가 적절한 공적 의사 표명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내적 배제를 비롯한 구조적 부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책임, 그를 바탕으로 섬세한 의사 표명과 경청을 통해 보다 포용적 의사소통에 임하고자 하는 합당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논한다.

본고의 4장에서는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도덕과 교육 목표로서 공적 의사소통 역량의 지식·기능·태도의 측면에서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했다. 논의를 요컨대, 기본적으로 이질적 공중의 구체적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적절한 지식,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의미 표현과 내적 배제에 귀 기울이는 섬세한 의미 수용의 기능, 정치적 책임 지향을 바탕으로 한 합당성의 태도가 포용적 의사소통 역량의 주된 하위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덕과 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의 함의를 탐색했다. 해당 부분에서는 먼저 이질성 인식, 의사소통의 규범 수용, 다양한 표현의 허용과 책임 있는 경청, 잠정적 합의와 지속적 성찰 지향과 같은 교실 내 포용적 의사소통의 규칙을 제시했다. 이후, 이러한 규칙이 기존의 논쟁 수업 모형의 구체적 실행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 전반에 있어 교사의 책임 있는 듣기와 합당성으로의 적절한 안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본 연구는 아이리스 매리온 영의 포용적 의사소통 이론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그를 자원 삼아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및 방법 측면에서의 실행 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이를 통해 연구는, 첫째로 사회와 교실 공론장에서 발견되는 의사소통 과정상의 배제 문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했다. 본고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내·외적 배제에 대한 영의 논의를 탐색하고, 이를 개념적 틀 삼아 우리 앞의 공론장을 포용과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교실의 공론장 역시 배제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음을 예측하며 관련된 교육적 관심을 환기했다. 둘째로, 본 연구는 포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 활동에서 공론의 개념, 목표, 방법과 바람직한 시민의 역량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가 포용적 의사소통의 구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중요 요소다. 셋째로, 본 연구는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용하여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덕과 포용적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상 배제의 문제는 개인의 각성이 아닌 의사소통 절차에 대한 공동의 성찰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때, 공동의 성찰은 종래 배제되었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특히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표현에 열려 있고, 배제의 교정에 대한 책임이 공유된 의사소통의 장은 이러한 경청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자 역량의 한계로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영의 정치철학 이론 체계와 각 개념에 대한 심도 있고 비판적인 탐구, 도덕 교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본 이론과 도덕 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접점 규명, 포용적 의사소통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덕 교육 방안의 마련 등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논의들은 본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교육부.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교육부. (2015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김애령. (2020). 듣기의 윤리 :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김원식. (2015). 하버마스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박효종. (2017).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장동진. (2012). 심의민주주의 : 공적 이성과 공동선. 서울 : 박영사.

정창우 외. (2017a).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정창우 외. (2017b). 중학교 도덕 2. 서울: 미래엔.

정창우 외. (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미래엔.

정창우. (2019).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파주 : 교육과학사

정창우. (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파주 : 교육과학사.

정창우 외. (2020). 도덕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파주: 교육과학사.

조성민. (2005). 민주 시민 교육 연구 : 탐구공동체 수업사례집. 고양: 한국학술정보.

허균. (2010). 교육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 분석 실천적 접근. 고양 : 서현사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2) 논문

- 강수정. (2016).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기초한 다시점(多視點) 내러티브의 도덕교육적 의의. 도덕윤리과교육, 51, 29-57.
- 곽준혁.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11, 141-168.
- 권수현. (2014). 담론 윤리의 이론적 전략과 의의. 대동철학, 66, 227-245.
- 김나영. (2021).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실태. 교육통계서비스.
- 김영필. (2013).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상호문화주의적 함의: ‘한국적’ 다문화교육모형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 철학논총, 71, 3-27.
- 김태준 외. (2020).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방안 -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하연. (2019). 건설적 논쟁학습의 도덕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261-279.
- 김향인. (2017). 도덕과 토론수업 모형의 분석과 활용. 초등도덕교육, 56, 1-19.
- 김희강. (2010). 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4, 5-27.
- 나상원. (2021).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한국과 국제사회, 5, 69-96.
- 민영. (2019). 젠더와 정치참여 격차: 디지털 미디어의 동원 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8, 39-75.
- 박성춘. (2012). A study on social justice in multicultural education.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1, 1-26.
- 박승관. (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 162-194.
- 박인철. (2006). 생활세계와 의사소통: 후설과 하버마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31, 1-33.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Journal of Korean Politics), 14, 147-193.
- 서요련. (2021). 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심승환. (2020). 심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찰: 것맨과 톱슨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4, 93-117.
- 유병열. (1991). 도덕교육의 의사소통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J. Habermas 의 의사소통행위론과 담론의 윤리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2, 287-320.
- 이강형·김상호. (2014). 감정과 공론장: 비이성적 형식으로서의 감정에 대한 비판적 재고. 언론과 사회, 22, 79-113.
- 이은주. (2009). 합리적 의사소통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교육방안 연구. 교육연구, 46, 101-138.
- 이인태·박균열. (2019). 도덕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도구로서 KMDD와 MC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5, 1-33.
- 이인화. (2019).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3), 1-29.
- 이혜진. (2019).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2, 121-152.
- 이혜진. (2020). 협동적 의사소통 전략으로서의 도덕과 월드 카페 모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6, 163-196.
- 이혜진. (2021).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철성. (2016). 듣기의 본질과 듣기 교육의 방향. 화법연구, 34, 231-258.
- 정은기. (2018).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의 비판적 재구성. 사고와표현, 11, 7-31.
- 조기제. (2002). 다문화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심의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7, 95-108.
- 조일수. (2011).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아테네적 전통과 로마

적 전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80, 291-316.

조주현. (2007).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주현. (2013). 공화주의적 심의의 정당성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주현. (2018). 심의민주주의와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0, 215-244.

최용성. (2013). 교과내용학 : 해방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도덕교육의 실천. 윤리교육연구, 31, 349-380.

최윤정. (2019). 건설적 논쟁의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66, 1-30.

최윤정 · 추병완. (2020). 시민 심의를 위한 건설적 논쟁의 활용 방안. 초등도덕교육, 특집호, 129-162.

최은순. (2019). 문화다양성시대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 탐색: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1, 185-206.

한기철. (2014). 하버마스 사회이론과 교육: 교육적 의사소통의 기준으로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분석. 도덕교육연구, 26, 1-30.

허윤희. (2017). 담론윤리의 도덕과 교육에의 함의와 적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5, 51-77.

허윤희. (2021). 공화주의적 심의와 도덕과 교육에의 함의 - 선스타인과 페터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60, 69-101.

현남숙. (2020). 다문화시대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 셀라 벤하비브의 심의민주주의와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 · 사상 · 문화, 32, 122-138.

3) 기타

국립국어원. (2022. 5. 16). ‘공공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7359&searchKeywordTo=3.

2. 국외문헌

1) 단행본

Benhabib, S. (1996).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oper, P. J. (2010). *교실 의사소통 :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 방법* (이창덕 외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서출판 2007).

Ferguson, A. & Nagel, M. (2009).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Studies in feminist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inlayson, J. G. (2022). *하버마스 입문* (서요런 역). 서울: 필로소픽. (원서출판 2005).

Habermas, J. (2018). *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 국가 이론* (한상진 · 박영도 역). 파주 : 나눔. (원서 출판 1992).

Kymlicka, W. (201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 동명사. (원서출판 2002).

Lind, G. (2017). *도덕적 민주적 역량 : 어떻게 기를 것인가* (박균열 · 정창우 역). 서울: 양서각. (원서출판 2016).

Noddings. N. (2018).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정창우 · 김윤경 역). 서울: 풀빛. (원서출판. 2017)

Rawls, J. (2016).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서울: 동명사. (원서출판 1993).

Rawls, J. (2019). *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 이학사. (원서출판 1999).

Reese-Schäfer, W. (1998). *하버마스 : 철학과 사회이론* (선우현 역). (원서출판 1991).

Vieten, U. & Iris Marion Young Memorial Symposium. (2014). *Revisiting Iris Marion Young on Normalisation, Inclusion and Democracy*. London : Palgrave Macmillan UK : Imprint: Palgrave Pivot.

Viroli, M. (2006). 공화주의 (김경희 · 김동규 역). 고양 : 인간사랑. (원서출판 1999)

Young, I. M.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 · 조국 역). 서울: 모티브북. (원서출판 1990).

Young, I. M. (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 · 김양희 · 천수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원서출판 2011).

Young, I. M. (2020). 포용과 민주주의 (김희강 · 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원서출판 2000).

2) 논문

Berkowitz, M. W., Althof, W., & Jones, S. (2008). Educating for civic character. *The Sage 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399-409.

Beiner, R. (2006).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A critical response to Iris Marion Young.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25-37.

Bohman, J. F. (1988). Emancipation and rhetoric: The perlocutions and illocutions of the social critic. *Philosophy & rhetoric*, 21, 185-204.

Eisenberg, A. (2006). Education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ris Young and the politics of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7-23.

Enslin, P. (2006). Democracy, Social Justice and Education: Feminist strategies in a globalising worl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57-67.

Frazer, E. (2006). Iris Marion Young and political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39-55.

Fras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8, 56-80.

Fung, A. (2004). Deliberation's darker side: six questions for Iris Marion Young and Jane Mansbridge. *National Civic Review*, 93(4), 47-54.

Galea, S. (2006). Iris Marion Young's Imaginations of Gift Giving: Some implications for the teacher and the student.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83-92.

Gewirtz, S. (2006). Towards a Contextualized Analysis of Social Justice in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69-81.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103-131.

Kadlec, A. & Friedman, W. (2007).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power. *Journal of Deliberative Democracy*, 3(1), 1-26.

Mansbridge, J. (1993). Feminism and democratic community. *Democratic Community: Nomos XXXV*, 339-395.

Medina, J. (2014). Communicative Democracy and Solidarity Across Racial and Sexual Differences. In *Revisiting Iris Marion Young on Normalisation, Inclusion and Democracy* (pp. 33-48).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Melton, D. (2009). Making character disposition matter in Iris Young's deliberative democracy. In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Studies in feminist philosophy)* (pp. 173-1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iner, A. B. (2013). Democratic inclusive educators. 유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Utah State University.

Scudder, M. F. (2022). Measuring Democratic Listening: A Listening Quality Index.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5, 175-187.

Shields, D. L. (2011). Character as the aim of education. *Phi Delta Kappan*, 92, 48-53.

Weasel, L. (2017). From Deliberative Democracy to Communicative Democracy in the Classroom. A Response to "Education for Deliberative Democracy". *Democracy and Education*, 25, 1-6.

Young, I. M. (2006). Education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Injustice: A symposium respons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8, 93-103.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Iris Marion Young' s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Eunwon Kim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Iris Marion Young's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and its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It is evident that all members' voi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at forms common norm.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existing communication process does not include diverse voices, calls for a norm of inclusion, particular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ctive interest in exclusion and inclusion in the research and practice of moral education related to public communic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issues, this study gathered Young's discussions on inclusive communication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And then, this study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is theory for the goals and methods of inclusive communication education

in moral and civic education.

First, this study discussed the foundation of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The basis of the theory consists of the defense of the basic position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and criticism of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Young explains that inclusive deliberation is an important aspect of a just society. According to her, social justice is basically the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conditions support members to determine their conditions of action and develop their basic abilities. Under this concept of justice, engaging in political decision-making through inclusive deliberations is an important element of social justice and mean of achieving social justice. Young, on the other hand, criticizes the exclusionary aspects of the existing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Young points out that existing approach consider the goal of discussion as making universal agreements based on common interests and favor only rational argument exchange as a way of discussion. In this respect, the existing approach fails to adequately explain the heterogeneous public sphere in real world, and in practice, the voices of a minority can be unfairly excluded in the public communication process.

Next, this study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focusing on its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oncept of public communication that the theory presupposes, what the aim of the public communication is in the theory, what the theory presents as a method of public communication, and the participants' desirable attitude in communication. First, in the theory of inclusive communication, public communication is depicted as the attempt by the heterogeneous public to resolve structural injustice through reasonable communication. Second, in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the goal of public communication is to establish a tentative agreement on solutions to injustice problems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Third, in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the method of

expression is not limited to rational argument. The communication aspects that Young asks for attention include greeting, which recognizes participants as the equivalent public, rhetoric that can be adopted in a variety of ways to convince people, and narratives to understand each different assumptions. Fourth, the theory of inclusive communication requires participants in public sphere to pursue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engage in reasonable communica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inclusive communication theory, focusing on ethics and moral education. First of all, the main sub-factor of inclusive communication capability as a goal of inclusive communication education can be based on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delicate meaning acceptance function and reasonablenes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Next, heterogeneity recognition, acceptance of communication norms, tolerance of diverse expressions and responsible listening, orientation to provisional agreement and persistent reflection were proposed as rules of inclusive communication in classroom.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check the systematic context of the controversial subject and each members' situation, exchange each other's opinion through various way of expressions, prepare separate procedures for listening and accepting to other's saying, and continue to reflect on the communication process itself. At the same time, this paper ended the discussion by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responsible listening and appropriate guidance to the rationality of teachers in inclusive communication education as a whole.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sought to promote moral and civic educational interest in th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communication, and to examine one possible direction based on young's theory.

keywords : Iris Marion Young, Deliberative Democracy, Inclusive Communication, Inclusive Communication Education, Ethical-Civic

Edu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9-24212